연구보고서 2021-44

기업형태별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이철선
황경진·민동세·박광동·송태민·이수천·오영호·홍성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태민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특임교수
	이수천	바움세무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44

기업형태별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42-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44

발|간|사

2019년 한국의 15~24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9.8%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흔히 벤치마킹하는 이웃 국가인 일본은 3.9%이고 유럽에서 주요 선진국으로 거론되는 독일은 5.8%로 한국보다 약 4~5.9%p 낮은 상황이다. 물론 2021년 들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8.5%로 2019년에 비해 약 1.3%p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본이나 독일과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이를 보전해 주는 미스매치 해소 정책 추진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대폭적인 청년실업율 감소를 위해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일자리간 격차해소를 중심으로하는 기존 정책이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이철선 연구위원 책임하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황경진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회계법인 바롬의 이수천 회계사, 삼육대학교 통계학과의 송태민 연구교수,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의 민동세 이사장,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홍성운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벤처기업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들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준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제2장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 27

제1절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 29

제2절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검토 ····· 43

제3장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 ····· 51

제1절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 55

제2절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 84

제3절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 126

제4절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시장 진출 현황 분석 ····· 148

제5절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 175

제4장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 195

제1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 평가 조사 ····· 197

제2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 219

제5장 결론 ····· **239**

제1절 개관 ····· 241

제2절 연구 결과의 요약 ····· 243

제3절 정책적 제언 ····· 256

참고문헌 ····· **265**

부록 ····· **275**

[부록 1] 조사표 ····· 275

표 목차

〈표 1〉 일반 영리기업 대비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요약 ····· 4
〈표 2〉 한국과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관리정책 비교 ····· 5
〈표 3〉 기업형태별 창업절차와 주요 지원정책 ····· 6
〈표 4〉 일반 영리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의 경쟁력 분석 요약(2018년 기준) ····· 7
〈표 5〉 기업형태별 경영성과 분석 결과(2019년 기준) ····· 7
〈표 6〉 2019년 기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 현황 요약 ····· 8
〈표 7〉 2015~2019년 기업형태별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이력 결과 ····· 8
〈표 8〉 기업형태 및 법인형태별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요약 ····· 10
〈표 1-1〉 청년의 연령별 실업률 ····· 15
〈표 1-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 16
〈표 1-3〉 대표자 연령별 기업 생존율 ····· 17
〈표 1-4〉 기업유형별 청년창업에 관한 최근 연구 ····· 18
〈표 1-5〉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 21
〈표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2015~2019) ····· 21
〈표 1-7〉 연도별 법인형태별 법인세 신고 수 및 증가율 ····· 22
〈표 1-8〉 기업유형별 정의와 지원 근거 및 현황 ····· 24
〈표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29
〈표 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수 현황 ····· 31
〈표 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예산 ····· 32
〈표 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 수 현황 ····· 34
〈표 2-5〉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 예산 ····· 36
〈표 2-6〉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부처 과제 수 현황 ····· 38
〈표 2-7〉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정책예산 현황 ····· 39
〈표 2-8〉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부처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 40
〈표 2-9〉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 중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정책 주요 내용 ····· 41
〈표 2-10〉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 중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정책 주요 내용 ····· 42
〈표 2-11〉 청년창업 기업형태별 지원 내용 비교('20년 기준) ····· 44

〈표 2-12〉 청년창업 기업형태별 창업성공률 ····· 45
〈표 2-13〉 기업형태별 연평균 창업기업 증가율 ····· 46
〈표 2-14〉 기업형태별 기업 생존율 현황 ····· 47
〈표 2-15〉 기업형태별 창업기업의 평균 종사자 규모 ····· 48
〈표 2-16〉 일반 영리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생멸 현황 ····· 49
〈표 2-17〉 기업형태별 평균 매출액 규모 ····· 50
〈표 3-1〉 비영리법인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방법론 · 54
〈표 3-2〉 조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지원 규정 ····· 57
〈표 3-3〉 21대 국회 계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 59
〈표 3-4〉 21대 국회 계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개정안 ····· 62
〈표 3-5〉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분야별 예시 ····· 65
〈표 3-6〉 각 부처별 청년 일자리 관련 비영리법인 지원정책 ····· 66
〈표 3-7〉 독일「조세기본법」상 비영리의 목적별 정의 ····· 72
〈표 3-8〉 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별 종류와 특징 ····· 91
〈표 3-9〉 벤처기업 유형별 기준요건 ····· 98
〈표 3-10〉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 ····· 104
〈표 3-1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대상 수익사업 범위 ····· 106
〈표 3-12〉 2020년 구매실적 및 2021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 112
〈표 3-13〉 지방세 감면 조례 예시 ····· 112
〈표 3-14〉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내용 ····· 117
〈표 3-15〉 기업형태별 설립 절차에 대한 제도적 검토 ····· 123
〈표 3-16〉 기업형태별 지원정책에 대한 유형별 현황 ····· 125
〈표 3-17〉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가동법인 수 및 법인세 신고법인 수 ····· 126
〈표 3-18〉 법인세 신고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입액 ····· 127
〈표 3-19〉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연도별 현황 ····· 129
〈표 3-20〉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 130
〈표 3-21〉 조직형태별 평균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 131

〈표 3-22〉 조직 형태·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현황 ····· 132
〈표 3-23〉 2018년 기준 조직 형태별 매출액 현황 ····· 133
〈표 3-24〉 2016, 2018년 기준 비영리재단의 산업별 매출액 현황 ····· 134
〈표 3-25〉 경영성과 분석지표 설명 ····· 138
〈표 3-26〉 기업형태별 총자산 및 총자산증가율 현황(2015~2019) ····· 140
〈표 3-27〉 기업형태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현황(2015~2019) ····· 141
〈표 3-28〉 기업형태별 매출액영업이익률 현황(2015~2019) ····· 142
〈표 3-29〉 기업형태별 매출액순이익률 현황(2015~2019) ····· 143
〈표 3-30〉 기업형태별 부채비율 현황(2015~2019) ····· 144
〈표 3-31〉 기업형태별 유동비율 현황(2015~2019) ····· 145
〈표 3-32〉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0
〈표 3-33〉 지원분야별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1
〈표 3-34〉 부처별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2
〈표 3-35〉 벤처기업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3
〈표 3-36〉 벤처기업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3
〈표 3-37〉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4
〈표 3-38〉 지원분야별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5
〈표 3-39〉 부처별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5
〈표 3-40〉 사회적기업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6
〈표 3-41〉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7
〈표 3-42〉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8
〈표 3-43〉 지원분야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9
〈표 3-44〉 부처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59
〈표 3-45〉 협동조합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60
〈표 3-46〉 협동조합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60
〈표 3-47〉 비영리법인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61
〈표 3-48〉 지원분야별 비영리법인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62

〈표 3-49〉 기업형태별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 162
〈표 3-50〉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수(2015~2019) ····· 164
〈표 3-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유형별 현황(2015~2019) ····· 165
〈표 3-52〉 사회복지시설별 평균 종사자 수 현황(2015~2019) ····· 166
〈표 3-53〉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별 현황 수 ····· 167
〈표 3-54〉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별 현황 비중 ····· 168
〈표 3-55〉 2020년 기준 정부 보조금 수혜 사회복지시설 현황 ····· 170
〈표 3-56〉 2020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보조금액 및 시설당 보조금액 수혜 현황 171
〈표 3-57〉 2020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총액 및 시설당 후원금 현황 ····· 172
〈표 3-58〉 기존 창업 지원정책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지원정책 ····· 176
〈표 3-59〉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의 조세 특례 ····· 180
〈표 3-60〉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현황 ····· 182
〈표 3-61〉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현황 ····· 183
〈표 3-6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184
〈표 3-6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 대상 조세절감 지원제도 ····· 186
〈표 3-64〉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 188
〈표 3-65〉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정 ····· 190
〈표 4-1〉 주요 설문 내용 ····· 201
〈표 4-2〉 조직 유형별 최고경영자의 연령 분포 ····· 202
〈표 4-3〉 조직 유형별 최고경영자의 성별·학력 분포 ····· 203
〈표 4-4〉 조직 유형별 법인 유형·법인 성격·영리법인의 성격 ····· 204
〈표 4-5〉 조직 유형별 주요 사업 업종 ····· 205
〈표 4-6〉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매출액 비교 ····· 206
〈표 4-7〉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매출 주력 시장 비교 ····· 207
〈표 4-8〉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자본금 비교 ····· 209
〈표 4-9〉 조직 유형별 자본금 마련 방법 ····· 210
〈표 4-10〉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평균 종사 정규직 비율 ····· 211

〈표 4-11〉 조직 유형별 창업교육 참여 여부 및 지원 주체 ····· 212
〈표 4-12〉 조직 유형별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지원주체 ····· 213
〈표 4-13〉 조직 유형별 창업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지원주체 ····· 214
〈표 4-14〉 조직 유형별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 215
〈표 4-15〉 조직 유형별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명 ····· 216
〈표 4-16〉 조직 유형별 창업기업 세금감면 프로그램 이용 여부 ····· 217
〈표 4-17〉 조직 유형별 투자 우선순위(1순위) ····· 218
〈표 4-18〉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위한 변수의 구성 ····· 221
〈표 4-19〉 조절변수의 기술통계 ····· 222
〈표 4-20〉 잠재요인들의 기술통계 ····· 223
〈표 4-21〉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전체) ····· 224
〈표 4-22〉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벤처기업) ····· 225
〈표 4-23〉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적기업) ····· 226
〈표 4-24〉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적협동조합) ····· 227
〈표 4-25〉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복지법인) ····· 227
〈표 4-26〉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영리법인) ····· 228
〈표 4-27〉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비영리법인) ····· 229
〈표 4-28〉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정 ····· 230
〈표 4-29〉 다중집단 구조모형 전체 기업 분석 결과 ····· 231
〈표 4-30〉 기업유형별 집단 간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233
〈표 4-31〉 법인성격별 집단 간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235
〈표 4-32〉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요약 ····· 237
〈표 5-1〉 주요 연구내용별 방법 ····· 242
〈표 5-2〉 청년정책기본계획상의 청년창업지원 관련 과제수 및 예산 현황 ····· 243
〈표 5-3〉 일반 영리기업 대비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요약 ····· 244
〈표 5-4〉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관리정책 비교 ····· 246
〈표 5-5〉 기업형태별 창업절차와 주요 지원정책 ····· 249

〈표 5-6〉 일반 영리기업 대비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요약 ····· 250
〈표 5-7〉 4개 기업형태별 경영성과 분석결과 ····· 251
〈표 5-8〉 4개 기업형태별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이력 결과 ····· 252
〈표 5-9〉 2019년 기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 현황 요약 ····· 253
〈표 5-10〉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현황 ····· 254
〈표 5-11〉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지자체별 분야별 기본재산 기준 ····· 261
〈표 5-12〉 지자체별 비영리법인 허가 시, 재산규모 기준 ····· 262
〈표 5-13〉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 263

그림 목차

[그림 3-1]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설립신고 ····· 93
[그림 3-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 96
[그림 3-3] 벤처기업 확인 신청 절차안내 ····· 100
[그림 3-4]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103
[그림 3-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계별 업무내용(행정안전부) ····· 115
[그림 4-1]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 ····· 199
[그림 4-2] 분석모형 ····· 219
[그림 4-3]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224
[그림 4-4]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 230

Abstract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Youth Start-up Support Policies by Business Type

Project Head: Lee, Cheol-seon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youth start-up support policies to nonprofit corporations as an alternative of reduc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n socie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at, first,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exist for venture businesses,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but there is no support policy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s; second, the nonprofit corporations ha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employment effect and asset size compared to the general for-profit corporations and those depending on the start-up support policies; third, analysis of start-up success factors by business type revealed that government project participation was more important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s than for the for-profit corporations.

Keyword : nonprofit corporations,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youth employment effect

Co-Researchers: Hwang, Kyung-Jin·Min, Dong-Se·Park, Kwang-Dong· Song, Tae-Min·Lee, Soo-Cheon·Oh, Young-Ho·Hong, Sung-Woon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2020년 2월,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추진 중임

○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최근 6년 동안 9% 대로 고공행진 중

○ 비영리사업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의 공급이 과잉 상태

□ (연구 목적) 본연구에서는 청년실업률 감소와 청년들의 새로운 고용 창출 수단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

○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벤처기업 등 영리법인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고용 창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 (연구 내용) 현 청년정책 현황과 더불어 창업지원 정책대상으로서 비영리법인의 도입 가능성을 3대 관점에서 검토

○ (설립 용이성)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해외 주요국의 지원정책 차이와 기존 창업지원 대상기업 대비 창업 용이성을 비교

○ (경쟁력 비교) 영리기업과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력을 비교

○ (지속가능성) 비영리법인의 정부 지원시장 이력 분석과 조세감면,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세부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을 검토

□ (연구 방법) 현 정책 현황과 설립 용이성 등에서는 주로 법률정보 등 문헌조사를, 그리고 경쟁력 비교에서는 통계자료를 분석

○ (성공 요인 도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4개 기업형태의 경영자 4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공분산 구조방정식으로 분석

2. 주요 연구결과

가.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검토

□ (전체현황)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은 부재한 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고용 창출보다 청년 고용기업·기존 직장인에게 임금 등을 지원하는 유지정책에 초점

○ 2021년 기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분야에 총 167개 과제, 약 8조 1,961억 원의 예산을 배정

○ 그중 창업지원 정책과제 수는 42개로 일자리 과제의 25.1%, 예산은 1조 1,752억 원으로 약 14.3%를 차지

○ 창업지원 정책과제 중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창업 등 종합창업 보육사업은 총 9개이며, 예산액은 1,517억 원 정도

○ 9개 창업 보육사업은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영농법인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은 부재

□ (효과성) 정부의 창업보육 사업 대상기업들은 기업생존율과 평균 종사자 규모 등에서 일반 영리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

〈표 1〉 일반 영리기업 대비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요약

구분	중기부 지원 창업기업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	기재부 지원 협동조합	일반 영리기업
지원기업 수(개)	46,719	4,259	114	-
창업 성공률(%)	99.7	91.6	64.0	-
연평균 창업기업 증가율(%)	8.4	18.5	47.5	5.2
5년 기업생존율(%)	57.1	57.3	75.3	31.2
평균 종사자 규모(18년 기준, 명)	5.4	3.5	3.8	1.5
평균 매출액 규모(18년 기준, 억 원)	6.9	1.5	1.1	1.35

나. 비영리법인 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과 해외 주요국 비교

□ (전체 결과) 한국은 허가주의와 관리·감독의 일원화, 그리고, 포괄적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중앙 소관 부처의 권한이 강함

○ (설립조건) 해외국가들은 법에 규정된 요건에 의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따르나 한국은 중앙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로 설립

○ (관리·감독) 한국은 중앙 주무관청이 관리·감독을 모두 담당하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 감독은 주무관청, 관리는 민간기관이 담당

○ (지원정책) 해외국가들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 조세감면, 보조금, 행정 및 재정지원 등 포괄지원

〈표 2〉 한국과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관리정책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근거법	- 민법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연방세법 - 각 주법 등	- 민법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 공익사단 및 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 등	- 공익법인법 - 회사법 등	- 민법. - 각 주법 등
NPO 형태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법인격 없는 단체 - 공익신탁 등	- 공익법인 -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등	- 공익신탁단체 - 회사법상 법인 - 공익법인 등	- 사단 - 재단 - 유한책임회사
관리	- 각 주무관청 - 허가주의	- 각 주장관 - 세무서가 관리 - 민간단체인 BBB Wisegiving Alliance 가 비영리법인 인증 - 준칙주의	- 주무관청 - 비영리 조직 평가센터(JCNE)가 관리 - 관할청 인증 준칙주의	- 영국 공익위원회 - 준칙주의	- 세무서 - 독일중앙사회문제연구소(DZI) 관리 - 준칙주의
감독	-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연차보고서 작성 - 정보공개 의무	- 사업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 - 관할청 및 법인은 정보 의무공개	- 공익위원회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 및 정보 공개	- 주법에서 규정
지원 정책	- 조세감면 - 보조금 지원 - 기부금 세제혜택 - 행정·재정지원 등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다.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 (결과) 비영리법인은 벤처기업 등 기존 창업지원 대상기업 대비 창업 용이성은 낮으나 설립 후, 지속가능성은 큰 것으로 추정

○ (설립과정) 비영리법인은 설립조건 충족 후 인허가를, 기타 기업들은 법인·사업체 등록 신고 후 심의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

○ (충족요건) 비영리법인은 인허가 전, 특정 설립요건이 기존 청년창업 지원대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판단

○ (지원정책) 정부 지원시장에서의 수익 창출과 비용지출 시 세제지원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은 기타 기업 대비 경쟁력 확보가 가능

〈표 3〉 기업형태별 창업절차와 주요 지원정책

구분		설립방식	인증기관	설립조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인허가	중앙 주무관청	- 3인 이상 발기인 - 창립총회·정관 등 - 회비와 기부금 등 검토
	재단법인	인허가	중앙 주무관청	- 기본재산(소) - 출연자 - 출연재산 수입 등 검토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광역/기초지자체	- 기본재산(대) - 출연자
	사회적 협동조합	인허가	중앙 주무관청	- 5인 이상 발기인 - 창립총회·정관 등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중앙/광역지자체	- 회원 100인 이상 - 창립총회 - 최근 1년간 비영리 공익사업 활동 증빙서류 등 - 사무공간 증명서류
청년창업지원대상	벤처기업	신고제	벤처기업 확인기관	- 1명 이상 - 벤처투자유형 등 4개 유형 중 1개
	협동조합	신고제	기초 지자체	- 5인 이상 발기인 - 창립총회
	사회적 기업	신고제	주무관청 (인증제)	- 1명 이상 - 법인 자격 보유

라.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 (결과) 비영리법인은 일반기업 대비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과 업체당 평균 종사자 규모, 그리고 상용근로자 비율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

○ (경영성과) 기존 창업지원 기업 대비 총 자산규모와 매출액 순 이익률 및 부채비율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함

〈표 4〉 일반 영리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의 경쟁력 분석 요약(2018년 기준)

구분		전체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 단체
					비영리법인	기타법인	
사업체	수(개)	4,103,172	3,245,411	594,173	41,296	88,976	133,316
	3년 연평균 증가율	1.9	1.5	4.3	5.6	2.2	1.7
전체 종사자	수(명)	2,2234,776	8,272,436	9,934,168	1,072,951	2,293,705	661,516
	3년 연평균 증가율	2.1	1.7	1.9	3.4	2.5	6.8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명)	5.4	2.5	16.7	26.0	25.8	5.0
	3년 연평균 증가율	0.2	0.2	-2.2	-2.1	0.3	5.0
상용근로자 비율		64.6	32.7	82.6	83.4	90.0	76.1

자료: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표 5〉 기업형태별 경영성과 분석 결과(2019년 기준)

구분		벤처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비영리법인					
					전체	재단 법인	사단 법인	학교 법인	사회복 지법인	의료 법인
전체	기업 수	37,360	2,953	4,192	4,189	1336	864	831	184	914
성장성	총자산(평균)	34.0	7.9	2.1	280.3	11.3	211.3	4000.2	75.6	160.1
	총자산증가율	6.8	29.9	5.9	1.6	8.4	8.5	-7.6	12.3	3.9
	매출액(평균)	34.3	11.0	3.9	165.8	15.3	163.0	1898.5	83.0	117.9
	매출액 증가율	2.1	19.3	4.9	5.6	13.0	12.4	-3.4	-2.8	5.3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율	-4.0	-3.5	-21.8	-3.3	-12.0	-0.2	-5.0	-10.4	3.5
	매출액 순이익율	-0.9	2.3	-2.8	0.4	-0.7	1.1	0.8	0.5	1.0
안정성	부채비율	206.4	259.4	248.5	157.5	164.6	101.5	40.1	147.0	200.4
	유동비율	324.6	320.3	268.5	296.4	375.5	492.8	244.9	250.1	107.8

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이용하여 분석

마. 국내 비영리법인의 정부 지원시장 이력 현황 분석

□ (결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는 거의 부재하나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에는 일정부분 진출

○ (위탁 비중)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 중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비중은 10.7%에 불과하여, 개인사업체가 68.0%를 차지

○ (보조금 및 후원금)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은 총 5조 3,346억 원이며, 시설당 평균 3.5억 원으로 추정

○ (중소기업지원사업 이력) 소관 부처 및 홍보 부족으로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법인 지원실적은 거의 부재

〈표 6〉 2019년 기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 현황 요약

구분		전체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보건	노숙인	결핵·한센	지역 자활	사회 복지관	어린이 집
전체 시설 수(개)		59,122	11,346	5,363	3,744	427	148	6	249	468	37,371
종사자 수(명)		587,031	181,785	19,785	37,740	3,532	1,861	103	2,023	8,758	331,444
평균 종사자 수(명)		9.9	16.0	3.7	10.1	8.3	12.6	17.2	8.1	18.7	4.1
운영주체 %	지자체	11.9	1.8	0.6	1.1		0.1		0.4	0.6	7.3
	사회복지법인	10.7	3.9	1.1	2.8	0.3	0.1	0.0		0.2	2.3
	기타법인	8.3	2.0	1.2	1.7	0.2	0.1	0.0		0.0	3.1
	단체(법인 외)	1.1	0.2	0.5	0.1	0.1	0.0				0.3
	개인	68.0	58.5	62.2	10.9	23.7	14.2	0.0	0.0	0.0	79.4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7〉 2015~2019년 기업형태별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이력 결과

구분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전체 기업 수		37,360	2,953	4,192	4,189
중앙정부	지원기업 수(개)	32,368	1808	527	2
	지원건 수(개)	272,781	8,956	1,339	4
	지원액(백만 원)	54,679,514	770,574	48,524	45
	지원 비율(%)	86.6	61.2	12.6	0.05
	평균 지원 건수(개)	8.4	5.0	2.5	2.0
	평균지원 금액(백 만원)	1,689.3	426.2	92.1	22.3

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바.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 (결과) 비영리법인은 수입과 지출, 창업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에서 타 기업형태 대비 경쟁적 우위를 점함

□ (수입)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부 사업 중 수익사업의 이익금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적용 시 법인세가 면제

○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 (부가 수익사업)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활용 시, 법인세 및 소득세가 손금산입특례 적용으로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기타 사업) 이자소득, 자산 양도 등 고유목적 이외 사업에서 창출된 부가 소득에 대해서 면제(법인세법 제62조, 제62조의 2)

□ (지출 측면) 설비, 인력 등에 대한 비용지출 시, 비영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조세특례 혜택이 적용

○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인정) 비용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대비 형평성 문제가 존재

□ (창업 및 청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청산소득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법인세 과세 제외가 존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등)

○ (창업 과정) 동산·부동산·설비 등이 출연자에 의한 상속이나 공익신탁으로 출연된다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

○ (청산 과정) 타 비영리법인이나, 국가에 귀속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

사.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

□ (개관) 창업교육, 창업금융, 창업인프라, 정부위탁사업 참여, 세금면제정책이 기업형태 및 법인 성격에 따라 창업기업의 기업규모와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

□ (분석 결과) 비영리법인은 정부 위탁사업 참여가, 영리법인은 창업금융지원정책이 기업규모와 고용효과 상승에 정(+)의 영향을 미침

○ (기업형태) 기업규모 성장에서 벤처기업은 창업금융지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업인프라 지원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표 8〉 기업형태 및 법인형태별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요약

경로		유의한 경로관계	경로 방향	집단간 차이
기업형태	벤처기업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	無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	無
	사회적협동조합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인프라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교육지원 → 고용효과	-	無
	사회복지법인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법인형태	영리법인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영리법인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비영리법인

3. 시사점

□ (결론) 비영리법인은 일반 영리기업과 현 청년창업 지원대상 기업 대비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부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도입을 신중히 고려

□ (중장년 등 일반 창업 정책) 비영리법인 창업 활성화 기반마련에 중점

○ (설립과정) 비영리법인의 민간 창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허가주의의 현 설립제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 (통계정보) 현재 중앙부처 소속으로 산재한 비영리법인 현황에 대한 통계의 통합생성과 관리를 추진

○ (관리기관) 현재 비영리법인에 설립과 감독이 소관 중앙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표준화가 어려운바. 관리기관 통합을 검토

○ (시장 확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 개정을 추진

□ (청년창업 정책) 비영리법인에 특화된 창업프로그램과 홍보에 중점

○ (창업보육 프로그램) 비영리법인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 (설립 컨설팅)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규모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협동조합 등 타 비영리법인격 검토

○ (홍보 추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조건에 관한 오해 제거와 관련된 청년 대상의 홍보와 교육으로 정부 사업참여를 촉진

주요 용어 : 비영리법인, 고용효과, 청년창업 지원정책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6년 동안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 대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기업과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현금지원을, 청년 창업가에게는 창업자금 및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2011년 7.6%였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 9.8%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현재 9.0%로 약간 감소하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실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15~19세의 청년들이 취업보다 학업에 집중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첫 취업을 준비하는 20~29세 청년의 실업률이 여전히 9.0%라는 점은 문제해결의 실효성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표 1-1〉 청년의 연령별 실업률

(단위: %)

연령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15-19세	10.8	8.9	10.3	9.3	10.6	10.0	8.7	9.3	8.6	8.7
	20-29세	7.4	7.4	7.8	9.0	9.0	9.8	9.9	9.5	8.9	9.0
	30-39세	3.4	3.0	3.0	3.1	3.1	3.1	3.3	3.4	3.3	3.5
	15-29세	7.6	7.5	8.0	9.0	9.1	9.8	9.8	9.5	8.9	9.0

자료: 통계청(2011~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청년들을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인간으로서 청년들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청년기본법을 2020년 2월 제정하면서,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포함하였다.

〈표 1-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기본이념)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청년발전)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 · (청년지원)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날 등을 규정
제2장 청년정책 등 기본계획	- (기본계획)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 (시책)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의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마련

주: 청년기본법 전문 중 특정사항 만을 재인용
자료: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2020).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급감하지 않는 이유는 거시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과거 대비 많이 감소했다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벤처기업 등 영리법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실례로 2018년 작성된 기업생멸통계에 의하면 영리기업에 대한 청년 대상의 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타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영리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은 31.2%이지만 30대 미만 청년 기업의 동일 연도 생존율은 21.1%로 전체 대비 약 10.1%p 낮다. 그리고 전체기업 대비 30대 미만 기업 간의 동년도 생존율은 1차 년도에 6.9%p 격차가 존재하지만 3~4년 정도 경과가 지난 시점에서는 최대 11.1%p로 증가하다가 5년 때부터 약간 감소한 약 10%p 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인 30대 미만 청년 영리기업과 30대 이상의 영리기업간의 생존율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것이다.

〈표 1-3〉 대표자 연령별 기업 생존율

(단위: %)

대표자 연령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6년 생존율	7년 생존율
30대 미만	56.8	43.3	33.6	25.7	21.1	16.3	13.3
30대	64.1	51.7	42.8	35.1	30.0	25.2	21.7
40대	66.5	55.4	47.0	38.9	33.2	28.3	25.0
50대	64.6	54.7	46.9	39.2	33.5	28.3	25.3
60대 이상	59.9	50.9	44.6	35.8	30.1	24.4	21.6
전체	63.7	52.8	44.7	36.7	31.2	26.1	22.8
30대 미만 대비 전체	6.9	9.5	11.1	11.0	10.1	9.8	9.5

자료: 통계청(2018), 기업생멸행정통계, 신생기업생존율(2018년 기준)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왜 정부는 영리법인 외에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황정보 부재를 들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하

지만 복지부에서 허가한 사회복지법인과 행안부에 허가한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31개 중앙부처에서 허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소관 중앙부처별로 세부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상세한 통계 현황은 〈표 1-7〉과 같이 국세청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 외에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청년창업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례로 〈표 1-4〉와 같이 최근에 이루어진 청년창업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인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비영리법인에 대한 연구는 박준 외(2020),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표 1-4〉 기업유형별 청년창업에 관한 최근 연구

구분	주요 내용
벤처기업	- (자료) 안태욱·강태원(2016),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청년창업의 에로요인 극복을 위한 대안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애로사항에 대한 25개 평가요인 도출 후 AHP 기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
	- (자료) 이윤숙·문성욱(2016),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성장에 대한 고찰: 1994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시 사업체를 중심으로 - (연구목적) 창업과 고용성장간의 관계와 지역 간 차이 등을 파악 - (연구내용) 실업률과 생계형 창업과의 관계, 창업율과 생존기업의 고용증가율, 생계형 창업과 생존율과의 관계, 기업형태와 고용성장률과의 관계 등을 파악
	- (자료) 곽동철·주영혁·조봉현(2016), 창업기업 생존율 영향요인 고찰: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청년창업과 일반창업 간 생존율 영향요인 비교 분석 - (연구내용) 청년 창업의 위험요인을 성별, 고용 및 재무 특성, 자산, 부채 규모, 매출액, 순이익, 이자보상배율 등으로 분석 후, 주요인으로 납입자본, 매출액, 종사업종을 도출
	- (자료) 양영석·양수희·황보윤(2012), '질 좋은 청년 창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 육성정책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진단 후, 새로운 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 - (연구내용)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 현황 파악, 청년창업육성정책 이행 모형 제시
	- (자료) 임채윤·이윤준·이광호·김종호·배영임·김성진(2008), 벤처기업의 생존 영향요인 분석 - (연구목적) 벤처기업 관련 데이터 통합 후, 관련 벤처기업의 생명주기 및 영향요인을 파악 - (연구내용) 벤처기업 생존 영향요인과 벤처기업 생존율 등 핵심지표 도출, 특히 창업자 특성, 기업역량 등이 벤처기업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 기업	- (제목) 조윤숙(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협력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연구목적)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성공 요인으로써 지역 네트워크의 영향력 파악 - (연구내용)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 제도와 창업 성공요인 도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분석을 시도
	- (제목) 박희석(2018),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실태와 청년 일자리 - (연구목적) 청년실업율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서 비영리 스타트업 제시 - (연구내용) 비영리 스타트업의 태동 배경과 서울시의 비영리 스타트업의 주요 사례, 그리고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제언
	- (제목) 조영복·손진현·정기범·이나영(2018),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연구목적)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른 창업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연구내용)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역할을 증명
	- (제목) 한세억(2017),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친환경 사회적기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법으로 공동가치 창출 가능성 모색 - (연구 내용) 공동가치 창출의 사례로 영국과 한국의 4가지 사례를 분석
	- (제목) 조상미·정선희·김재신(2017), 사회적기업의 폐업 경험: 과정은 어떠하고 그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목적) 폐업한 사회적기업의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과정과 패업 요인도출 - (연구내용) 폐업 사회적기업 5개 사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폐업과정, 폐업의 요인인식, 폐업경험자의 교훈을 기반으로 한 시사점 제공
협동 조합	- (제목) 조상미·정선희·김재신(2017),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생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례에 대한 분석 - (연구목적) 사회적 경제조직의 초기 생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 - (연구내용) 질적연구방법으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분석
	- (제목) 장종익(2019),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연구목적)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조건의 규명과 정책적 함의 모색 - (연구내용)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실태분석를 통해 지속가능조건과 정책방안 제시
	- (제목) 신상화·정창호(2017), 청년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상설시장 재생방안 연구 - (연구목적) 소프트웨어적, 휴먼웨어작 측면이 지역 상설시장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연구내용) 도시재생의 현황, 진주시 지역 상설시간의 현황분석, 지역시장 활성화 방안 등
	- (제목) 이철선·김진희·이연희·김성기·조혜경·백필호(2017),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 연구 - (연구목적) 청년실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 협동조합의 육성 과제를 발굴 - (연구내용) 전반적인 청년창업 현황 검토, 청년 창업지원사업간 경쟁력과 지원정책의 문제점 파악, 해외사례를 통한 청년 협동조합 육성 방향 등

구분	주요 내용
비영리 법인	- (제목) 박준(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 (연구목적)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NGO, 비영리법인, 마을 공동체, 자원봉사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한국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구조분석과 실태, 해외 주요국의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기반으로 한국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자료: 안태욱·강태원(2016),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2호(통권 68호), pp.67~80., 이윤숙·문성욱(2016),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성장에 대한 고찰: 1994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시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연구, 제20권 제2호 pp.121~142.. 곽동철·주영혁·조봉현(2016), 창업기업 생존율 영향요인 고찰: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8권 제4호, pp.74~94., 양영석·양수희·황보윤(2012), '질 좋은 청년 창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3), pp.167-179. 임채윤·이윤준·이광호·김종호·배영임·김성진(2008), 벤처기업의 생존 영향요인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윤숙(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협력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연구, 14(1), pp.57~74., 박희석(2018),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실태와 청년 일자리,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pp.1~24., 조영복·손진현·정기범·이나영(2018),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pp.89~104.,한세억(2017),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친환경 사회적 기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pp.115~154., 조상미·정선희·김재신(2017), 사회적기업의 폐업 경험: 과정은 어떠하고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1), pp.29~61. 홍연민·강철희·이문석(2021),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생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례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 pp.305~339., 장종익(2019),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노동정책연구 19(1), pp29-58., 신상화·정창호(2017), 청년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상설시장 재생방안 연구, 주거환경 15(4), pp.137~150., 이철선·김진희·이연희·김성기·조혜경·백필호(2017),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 고용 창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준(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미도입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영리법인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복지사 수급 상황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1-5〉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는 전체 110만 명이고, 그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약 15.3만 명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8.8%로 고공행진 중이다. 하지만 동일 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58.7만 명으로 전체 자격증 소지자 중 약 53.0%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사 외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무직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사회복지시설 수용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시점에서 청년을 포함한 과잉 공급 상태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취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표 1-5〉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1급		2급		연평균 증가율		
		2015	2019	2015	2019	2015	2019	전체	1급	2급
전체		789,071	1,107,119	123,677	153,866	652,274	939,688	8.8	5.6	9.6
정규교육과정	소계	435931	542,573	64428	83,308	370992	458,749	5.6	6.6	5.5
	전문대학	228,562	280,405	5,163	7,679	223,109	272,492	5.2	10.4	5.1
	대학교	185,028	236,547	54,837	70,586	130,001	165,770	6.3	6.5	6.3
	대학원	22,015	25,237	4,349	5,001	17,637	20,207	3.5	3.6	3.5
	외국대학	326	384	79	102	245	280	4.2	6.6	3.4
학점은행	소계	241264	383,501	10327	16,491	230777	366,859	12.3	12.4	12.3
	전문대학	137,938	154,970	6,793	8,223	130,988	146,600	3.0	4.9	2.9
	대학교	19,232	29,607	1,657	2,209	17,574	27,397	11.4	7.5	11.7
	시간제	84,094	198,924	1,877	6,059	82,215	192,862	24.0	34.0	23.8
양성교육		4,176	5,173	161	206	2,004	2,573	5.5	6.4	6.4
기타		107,700	175,872	48,761	53,861	48,491	111,507	13.0	2.5	23.1

주: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분석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9).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표 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2015~2019)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Total	515,678	618,649	550,179	568,912	587,031	3.3

주: 각 연도별 취합 후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2015~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세 번째로, 과잉 공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들의 취업이나 창업 시, 어떤 기업형태를 고려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7〉에서처럼 최근 기업생존율과 관련된 법인세 신고 수에서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기준, 법인세 신고 비영리법인 수는 35,964개로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9.9%씩 증가하였다. 반면에 영리법인은 동일 기간 신고율이 7.3%로 비영리법인 대비 약 2.6%p 낮았다. 즉 최근 4년 동안 비영리법인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에 부 사업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1-7〉 연도별 법인형태별 법인세 신고 수 및 증가율

(단위: 개,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비영리법인 수	24,574	28,376	31,981	33,599	35,964	9.9
영리법인 수	567,120	626,685	663,464	706,616	751,474	7.3

자료: 국세청(2020년), 국세통계연보

하지만 새로운 청년고용 창출과 고용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성과나 종사자 규모 등 고용효과에 관한 분석은 부재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대비 청년고용 창출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이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관점 아래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형태별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청년 비영리법인의 고용창출력 등 경쟁력이 영리법인 등에 비해 우위에 있다면 청년 비영리법인에 특화된 청년창업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청년실업률 감소를 추진해 볼 만 하다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고에서는 기업형태별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업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본 고에서 설정한 기업형태는 영리법인인 벤처기업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포괄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4가지다. 이중 벤처기업은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 분야 육성 등의 관점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왔다. 따라서 기존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정책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증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사업 모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성격의 기업형태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영리적 사업으로 인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을 받아 온 기업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2011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법인이다.

〈표 1-8〉 기업유형별 정의와 지원 근거 및 현황

구분	정의	관련 근거법
벤처 기업	-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2조의 2)이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1998)의 제2조2항에 부합하는 기업 - (유형) 기술평가 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 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4가지로 분류 · 기술평가 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 기술평가실시 후, 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 ·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 기술평가실시 후, 담보 없이 총자산의 10% 이상, 최소 8천만 원 이상 보증하는 경우, ·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5~10%) 이상이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벤처투자기업: 벤처 캐피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사회적 기업	-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창의 혁신형 등 5가지로 분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사회적 협동 조합	- (정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가지로 분류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 복지 법인	-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유형)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법인 2가지로 분류	사회복지 사업법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104호(2021).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2012). 협동조합기본법, 법률 제17818호(202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8618호(2021).

둘째는 정부주도의 청년창업 지원정책 고려 대상으로서 비영리법인이 앞서 언급한 기존 청년창업 지원대상 기업 대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경쟁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은 부재한 상황에서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가 각각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4가지 기업형태 중 어느 기업형태에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통합적 자원배분 즉, 효율성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업형태별 경영성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17개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기업형태별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는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관점에서 세부 창업지원 정책 중 어떤 요인이 고용의 지속성을 강화시켜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무조정실이 파악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과 금융지원, 사무실 등 인프라 지원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4가지 기업 형태들은 관련 법제 하에서 설립되어 중앙정부가 계속 관리해 왔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창업 지원정책과 달리 세제 감면과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인건비 조달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주요 창업 지원정책과 관리정책상의 2가지 지원정책 등 총 5가지 지원정책이 기업 형태별 규모 성장과 고용 지속성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형태별로 고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창업지원 및 육성정책에 있어서도 기업형태별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본 고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 목적과 내용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우선, 1단계로 2020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파악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각 부처에서 취합한 청년창업 지원정책 성과 자료에 대해 통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비영리법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쟁력 분석에서는 설립과정과 운영형태를 나누어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립과정의 경우, 문헌 및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기업으로서 창업 용이성을 검토하였고 운영경쟁력의 경우에는 각 기업형태별 관련 통계치를 기반으로 경영성과 등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 KED 데이터와 중소기업 통합관리데이터(SIMS),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마이크로데이터와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데이터 등이 활용되었다.

셋째로, 기업형태별 세부 창업지원 정책요인들이 기업규모 성장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에서는 창업지원 정책상의 세부 유형인 창업 교육, 금융, 인프라 등 3개 요인과 정부가 기업의 유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세금감면 및 인건비 조달을 위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2가지 요인 등 5개 지원정책 요인이 종속변수인 기업규모 성장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기업형태와 법인성격에 따라 차별적일 것이라는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을 설정한 후, 4개 기업형태별로 각각 100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제1절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제2절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검토

제 2 장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제1절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앞서 연구 배경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방안으로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책으로 매 5년 주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였다.

〈표 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원칙		-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 (3대 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5대 정책방향 및 목표	일자리	- (방향) 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②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④ 공정 채용 기반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 (목표) 25년까지 128만 명 이상 청년 구직자 지원(코로나19 극복 55.5만 명 지원),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주거	- (방향) ① 청년 주택공급 확대 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 청년 집중지원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목표) 청년 주택 27만 3천호 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만 청년 가구 10% 감축, 43만 5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교육	- (방향) ① 고른 교육 기회 보장 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목표)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미래 신산업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 청년 친화 도심 융합 특구 조성(교육+일자리+주거)
	복지·문화	- (방향) 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② 청년건강 증진 ③ 청년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목표) 희망저축계좌 통합·신설 10만 명 자산형성 지원, 매달한번은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참여·권리	- (방향) 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②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확립 ③ 청년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④ 청년 권익 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목표)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등 청년참여, 청년 마당 전국 확대: 기초 지자체 226개, 온라인 청년 하나로 구축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따라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020년 12월 23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목표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3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기본법에서 설정한 청년 연령 인구 대비 정책 예산액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금 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5대 분야 총 366개 과제에 약 23.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대 분야별 정책과제 중 일자리 관련 과제가 167개 과제로 전체 과제 366개의 45.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육(89개, 24.3%), 복지·문화(51개, 13.9%), 참여·권리(34개, 9.3%), 주거(25개, 6.8%)의 순이다. 부처별 과제에서는 문체부가 45개(1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부(42개, 11.5%), 교육부(40개, 10.9%), 국토부(31개, 8.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배분에서는 과제 수 대비 상반된 현황이 파악된다. 5대 정책 분야 중 과제 수가 가장 적은 주거 분야의 경우, 총예산 23.8조 원의 36.6%를 차지하는 약 8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다음으로 일자리(약 8조 2천억 원, 34.4%), 교육(약 5조 7천억 원, 23.9%), 복지·문화(약 1,162억 원, 4.9%), 참여·권리(약 688억 원)의 순이었다. 그리고 부처별 예산에서도 국토부가 약 8조 4,800억 원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용부(6조 1,244억 원, 25.7%), 교육부(약 5조 원, 21.1%) 등의 순이었다.

〈표 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소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고용부	33	9.0		0.0	6	1.6		0.0	3	0.8	42	11.5
공정위		0.0		0.0		0.0		0.0	1	0.3	1	0.3
과기부	7	1.9		0.0	17	4.6		0.0		0.0	24	6.6
교육부	5	1.4	1	0.3	30	8.2	1	0.3	3	0.8	40	10.9
국방부	1	0.3		0.0	1	0.3	1	0.3		0.0	3	0.8
국조실		0.0		0.0		0.0		0.0	7	1.9	7	1.9
국토부	5	1.4	21	5.7	3	0.8	1	0.3	1	0.3	31	8.5
권익위	1	0.3		0.0		0.0		0.0	1	0.3	2	0.5
금융위	1	0.3	2	0.5		0.0	2	0.5	1	0.3	6	1.6
기재부	5	1.4		0.0		0.0		0.0		0.0	5	1.4
농식품부	14	3.8	1	0.3	4	1.1		0.0	1	0.3	20	5.5
농진청	2	0.5		0.0	2	0.5		0.0		0.0	4	1.1
문체부	13	3.6		0.0	3	0.8	28	7.7	1	0.3	45	12.3
문화재청	1	0.3		0.0		0.0		0.0	1	0.3	2	0.5
방사청	4	1.1		0.0		0.0		0.0		0.0	4	1.1
방통위		0.0		0.0	2	0.5		0.0		0.0	2	0.5
병무청	2	0.5		0.0	1	0.3	1	0.3		0.0	4	1.1
보훈처	8	2.2		0.0		0.0		0.0	2	0.5	10	2.7
복지부	3	0.8		0.0		0.0	11	3.0		0.0	14	3.8
부처합동	1	0.3		0.0		0.0		0.0		0.0	1	0.3
산림청	5	1.4		0.0	2	0.5		0.0		0.0	7	1.9
산업부	7	1.9		0.0	2	0.5		0.0		0.0	9	2.5
식약처		0.0		0.0	3	0.8		0.0		0.0	3	0.8
여가부	7	1.9		0.0	1	0.3	6	1.6	2	0.5	16	4.4
외교부		0.0		0.0		0.0		0.0	4	1.1	4	1.1
인사처	2	0.5		0.0		0.0		0.0		0.0	2	0.5
조달청	2	0.5		0.0		0.0		0.0		0.0	2	0.5
중기부	18	4.9		0.0	3	0.8		0.0	1	0.3	22	6.0
통일부	1	0.3		0.0		0.0		0.0	1	0.3	2	0.5
특허청	2	0.5		0.0	3	0.8		0.0		0.0	5	1.4
해수부	10	2.7		0.0	4	1.1		0.0		0.0	14	3.8
행안부	3	0.8		0.0		0.0		0.0	3	0.8	6	1.6
환경부	4	1.1		0.0	2	0.5		0.0	1	0.3	7	1.9
총합계	167	45.6	25	6.8	89	24.3	51	13.9	34	9.3	366	100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 과제 재분석

〈표 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소계
고용부	백만 원	5,732,913		387,102		4,393	6,124,408
	%	24.1		1.6		0.0	25.7
공정위	백만 원					14	14
	%					0.0	0.0
과기부	백만 원	126,588		343,945			470,533
	%	0.5		1.4			2.0
교육부	백만 원	135,772	249,629	4,629,581	2,297	11,829	5,029,108
	%	0.6	1.0	19.4	0.0	0.0	21.1
국방부	백만 원	5,813		34,190	-		40,003
	%	0.0		0.1			0.2
국조실	백만 원					1,313	1,313
	%					0.0	0.0
국토부	백만 원	24,576	8,448,586	2,580	6,743	-	8,482,485
	%	0.1	35.5	0.0	0.0		35.6
권익위	백만 원	110				58	168
	%	0.0				0.0	0.0
금융위	백만 원	-	-		35,000	-	35,000
	%				0.1		0.1
기재부	백만 원	1,625					1,625
	%	0.0					0.0
농식품부	백만 원	693,962	5,710	52,825		2,025	754,522
	%	2.9	0.0	0.2		0.0	3.2
농진청	백만 원	1,260		3,313			4,573
	%	0.0		0.0			0.0
문체부	백만 원	173,013		17,495	715,068	702	906,278
	%	0.7		0.1	3.0	0.0	3.8
문화재청	백만 원	2,310				150	2,460
	%	0.0				0.0	0.0
방사청	백만 원	1,748					1,748
	%	0.0					0.0
방통위	백만 원			330			330
	%			0.0			0.0
병무청	백만 원	2,469		73	66		2,608
	%	0.0		0.0	0.0		0.0
보훈처	백만 원	6,940				811	7,751
	%	0.0				0.0	0.0
복지부	백만 원	37,390			393,925		431,315
	%	0.2			1.7		1.8
부처합동	백만 원						
	%						0.0
산림청	백만 원	7,205		791			7,996
	%	0.0		0.0			0.0

구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소계
산업부	백만 원	110,613		156,348			266,961
	%	0.5		0.7			1.1
식약처	백만 원			1,922			1,922
	%			0.0			0.0
여가부	백만 원	7,076		-	9,238	1,595	17,909
	%	0.0			0.0	0.0	0.1
외교부	백만 원					34,804	34,804
	%					0.1	0.1
인사처	백만 원	-					-
	%						0.0
조달청	백만 원	20					20
	%	0.0					0.0
중기부	백만 원	765,978		4,007		2,526	772,511
	%	3.2		0.0		0.0	3.2
통일부	백만 원	20				35	55
	%	0.0				0.0	0.0
특허청	백만 원	1,544		6,588			8,132
	%	0.0		0.0		0.0	0.0
해수부	백만 원	5,673		2,250			7,923
	%	0.0		0.0		0.0	0.0
행안부	백만 원	349,529				8,340	357,869
	%	1.5		0.0		0.0	1.5
환경부	백만 원	2,011		38,464		250	40,725
	%	0.0		0.2		0.0	0.2
총 합계	백만 원	8,196,158	8,703,925	5,681,804	1,162,337	68,845	23,813,069
	%	34.4	36.6	23.9	4.9	0.3	100.0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 과제 관련 재분석

특이점은 청년정책의 대상을 청년기본법에서 설정한 15~34세로 가정할 때 창업 지원정책을 포함한 1인당 정책지원 예산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 15~34세 인구수는 10,911,411명(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21년 총 청년정책 예산은 약 23.8조 원이다. 따라서 대략 1인당 정책 예산은 약 218만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청년 주택 등 일부 청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의 예산 약 8조 7,039억 원을 제외할 때, 1인당 청년정책 예산액은 138만 원 정도로 급감한다.

〈표 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공정 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총합계	
	수	%	수	%	수	%	수	%	수	%
고용부	5	3.0	19	11.4	1	0.6	8	4.8	33	19.8
과기부		0.0	6	3.6	1	0.6		0.0	7	4.2
교육부		0.0	3	1.8	1	0.6	1	0.6	5	3.0
국방부		0.0	1	0.6		0.0		0.0	1	0.6
국토부		0.0	2	1.2	3	1.8		0.0	5	3.0
권익위	1	0.6		0.0		0.0		0.0	1	0.6
금융위		0.0		0.0	1	0.6		0.0	1	0.6
기재부	1	0.6	3	1.8	1	0.6		0.0	5	3.0
농식품부		0.0	5	3.0	9	5.4		0.0	14	8.4
농진청		0.0		0.0	2	1.2		0.0	2	1.2
문체부		0.0	10	6.0	3	1.8		0.0	13	7.8
문화재청		0.0	1	0.6		0.0		0.0	1	0.6
방사청		0.0	4	2.4		0.0		0.0	4	2.4
병무청		0.0	2	1.2		0.0		0.0	2	1.2
보훈처		0.0	8	4.8		0.0		0.0	8	4.8
복지부		0.0	3	1.8		0.0		0.0	3	1.8
부처 합동		0.0	1	0.6		0.0		0.0	1	0.6
산림청		0.0	4	2.4	1	0.6		0.0	5	3.0
산업부		0.0	7	4.2		0.0		0.0	7	4.2
여가부	2	1.2	4	2.4		0.0	1	0.6	7	4.2
인사처	1	0.6	1	0.6		0.0		0.0	2	1.2
조달청		0.0	1	0.6	1	0.6		0.0	2	1.2
중기부		0.0	3	1.8	15	9.0		0.0	18	10.8
통일부		0.0	1	0.6		0.0		0.0	1	0.6
특허청		0.0	1	0.6	1	0.6		0.0	2	1.2
해수부		0.0	9	5.4	1	0.6		0.0	10	6.0
행안부		0.0	3	1.8		0.0		0.0	3	1.8
환경부		0.0	3	1.8	1	0.6		0.0	4	2.4
총 합계	10	6.0	105	62.9	42	25.1	10	6.0	167	100.0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과제 관련 재분석

두 번째는 일자리 분야 정책 방향이 새로운 고용 창출에 맞춘 창업지원보다는 임금이나 자산 보조 등 기존 청년 일자리를 지속시키는 정책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청년정책 5대 분야 중 일자리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부분' 과제 수가 105개로 일자리 분야 과제 167개 중 62.9%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청년창업지원과 관련성이 높은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분야 과제가 42개(25.1%)로 두 번째이다. 하지만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 낮아진다, 청년의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부문 과제에 대한 예산 비중은 일자리 분야 정책 중 과제 수 비중인 62.9%보다 약 15%p 높은 77.3%를 차지한다. 반면에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정책에 대한 예산액은 약 1조 1,752억 원으로 전체 일자리 분야 예산 8조 1,961억 원의 14.3%이다, 즉, 일자리 분야 중 창업지원 과제 수 비중 대비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정부가 청년의 임금을 보존해 주는 등 직접 지원하는 과제 예산은 더 비중이 높은 것이다. 실례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부분' 과제 중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가장 많은 과제를 살펴보면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약 1조 1,753억 원)와 청년내일체움공제제도(약 1조 4,017억 원), 그리고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약 1조 287억 원) 등이 있다(국무조정실, 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따라서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창업기업의 지원을 통해 기업 생존율을 강화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나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임금 등을 보존해 줌으로써 고용을 유지 시키는 개인 직접지원 방식의 경향이 더 강하다.

〈표 2-5〉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공정 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총 합계
고용부	백만 원	686,164	5,014,344	29,846	2,559	5,732,913
	%	8.4	61.2	0.4	0.0	69.9
과기부	백만 원		114,308	12,280		126,588
	%	0.0	1.4	0.1	0.0	1.5
교육부	백만 원		128,572	7,200	-	135,772
	%	0.0	1.6	0.1	0.0	1.7
국방부	백만 원		5,813			5,813
	%	0.0	0.1	0.0	0.0	0.1
국토부	백만 원		8,876	15,700		24,576
	%	0.0	0.1	0.2	0.0	0.3
권익위	백만 원	110				110
	%	0.0	0.0	0.0	0.0	0.0
금융위	백만 원			-		-
	%	0.0	0.0	0.0	0.0	0.0
기재부	백만 원	-	-	1,625		1,625
	%	0.0	0.0	0.0	0.0	0.0
농식품부	백만 원		8,785	685,177		693,962
	%	0.0	0.1	8.4	0.0	8.5
농진청	백만 원			1,260		1,260
	%	0.0	0.0	0.0	0.0	0.0
문체부	백만 원		167,663	5,350		173,013
	%	0.0	2.0	0.1	0.0	2.1
문화재청	백만 원		2,310			2,310
	%	0.0	0.0	0.0	0.0	0.0
방사청	백만 원		1,748			1,748
	%	0.0	0.0	0.0	0.0	0.0
병무청	백만 원		2,469			2,469
	%	0.0	0.0	0.0	0.0	0.0
보훈처	백만 원		6,940			6,940
	%	0.0	0.1	0.0	0.0	0.1
복지부	백만 원		37,390			37,390
	%	0.0	0.5	0.0	0.0	0.5

구분		공정 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총 합계
부처합동	백만 원					
	%	0.0	0.0	0.0	0.0	0.0
산림청	백만 원		7,005	200		7,205
	%	0.0	0.1	0.0	0.0	0.1
산업부	백만 원		110,613			110,613
	%	0.0	1.3	0.0	0.0	1.3
여가부	백만 원	450	6,611		15	7,076
	%	0.0	0.1	0.0	0.0	0.1
인사처	백만 원	-	-			
	%	0.0	0.0	0.0	0.0	0.0
조달청	백만 원		20	-		20
	%	0.0	0.0	0.0	0.0	0.0
중기부	백만 원		351,495	414,483		765,978
	%	0.0	4.3	5.1	0.0	9.3
통일부	백만 원		20			20
	%	0.0	0.0	0.0	0.0	0.0
특허청	백만 원		580	964		1,544
	%	0.0	0.0	0.0	0.0	0.0
해수부	백만 원		5,049	624		5,673
	%	0.0	0.1	0.0	0.0	0.1
행안부	백만 원		349,529			349,529
	%	0.0	4.3	0.0	0.0	4.3
환경부	백만 원		1,561	450		2,011
	%	0.0	0.0	0.0	0.0	0.0
총 합계	백만 원	686,724	6,331,701	1,175,159	2,574	8,196,158
	%	8.4	77.3	14.3	0.0	100.0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과제 재분석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 등 비영리영역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외 부재하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의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사업들과 기술·과학 중심의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19개로 파악되는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사업에는 일반 중소기

업과 스마트팜, Data, Network, AI 등 신 과학기술 분야의 영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23개로 파악되는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사업'에는 영농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농식품부 및 농진청 과제가 8개(19.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중기부 과제가 4개(9.5%), 문화·게임·콘텐츠 기업육성을 위한 문체부 과제가 3개(7.1%) 등의 순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등 비영리 사업영역과 관련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고용부의 '청년 사업가 육성사업' 1개로 파악되며 총예산은 약 298억 원 정도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총예산 1조 1,751억 원 중 2.5%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회적기업이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영리법인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영리 영역 중심의 청년창업 지원예산은 더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부처 과제 수 현황

구분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총합계	
	수	%	수	%	수	%
고용부	1	2.4		0.0	1	2.4
과기부		0.0	1	2.4	1	2.4
교육부		0.0	1	2.4	1	2.4
국토부	2	4.8	1	2.4	3	7.1
금융위		0.0	1	2.4	1	2.4
기재부	1	2.4		0.0	1	2.4
농식품부	6	14.3	3	7.1	9	21.4
농진청	2	4.8		0.0	2	4.8
문체부	3	7.1		0.0	3	7.1
산림청	1	2.4		0.0	1	2.4
조달청		0.0	1	2.4	1	2.4
중기부	4	9.5	11	26.2	15	35.7
특허청	1	2.4		0.0	1	2.4
해수부	1	2.4		0.0	1	2.4
환경부	1	2.4		0.0	1	2.4
총합계	23	54.8%	19	45.2%	42	100.0%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과제 재분석

〈표 2-7〉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정책예산 현황

구분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총합계
고용부	백만 원	29,846		29,846
	%	2.5	0.0	2.5
과기부	백만 원		12,280	12,280
	%	0.0	1.0	1.0
교육부	백만 원		7,200	7,200
	%	0.0	0.6	0.6
국토부	백만 원	-	15,700	15,700
	%	0.0	1.3	1.3
금융위	백만 원		-	-
	%	0.0	0.0	0.0
기재부	백만 원	1,625		1,625
	%	0.1	0.0	0.1
농식품부	백만 원	636,796	48,381	685,177
	%	54.2	4.1	58.3
농진청	백만 원	1,260		1,260
	%	0.1	0.0	0.1
문체부	백만 원	5,350		5,350
	%	0.5	0.0	0.5
산림청	백만 원	200		200
	%	0.0	0.0	0.0
조달청	백만 원		-	-
	%	0.0	0.0	0.0
중기부	백만 원	22,309	392,174	414,483
	%	1.9	33.4	35.3
특허청	백만 원	964		964
	%	0.1	0.0	0.1
해수부	백만 원	624		624
	%	0.1	0.0	0.1
환경부	백만 원	450		450
	%	0.0	0.0	0.0
총합계	백만 원	699,424	475,735	1,175,159
	%	59.5	40.5	100.0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과제 재분석

넷째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 청년창업 지원정책 중 창업기업이 기업 경쟁환경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데 목적을 둔 종합 창업 보육 사업은 총 42개 사업 중 9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주 사업목표를 살펴보면 〈표 2-9〉, 〈표 2-10〉과같이 대부분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 교육지원, 사업화 모델 구축 및 컨설팅, 운영자금 지원, 사업장 등 공간지원, 판로지원, 종합 창업보육을 통한 안착 등 7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창업지원 정책의 경우, 기업의 고용 창출을 예측하는 사업의 안착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로 전체 과제 중 21.4%에 불과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체 9개 과제의 예산액이 1,517억 원으로 전체 창업지원 정책 예산 1조 1,751억 원의 12.9%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창업지원 정책이 정부 주도의 창업보육보다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창업기업들에 대한 정책이 주요 대상이었고, 공간지원 분야에서 청년농을 위한 토지 임대 등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8〉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별 부처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주 사업 목적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총합계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백만 원)	과제 수	예산 (백만 원)
예비창업자 발굴	4	4,350	1	1,205	5	5,555
창업교육 지원	3	9,350	4	62,611	7	71,961
사업모델 등 컨설팅	1	360	0		1	360
운영자금지원	5	44,421	6	245,123	11	289,544
사업장 등 공간지원	5	605,420	3	50,545	8	655,965
판로지원			1	0	1	
종합 창업보육	5	35,523	4	116,251	9	151,774
총계	23	699,424	19	475,735	42	1,175,159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 과제 재분석

〈표 2-9〉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 중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정책 주요 내용

소관부처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 목적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영농정착자금 지원 및 농지·창업 자금·기술교육 연계	자금
해수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 영어 정착 자금 지원	자금
중기부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	공간
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 전통문화 관련 창업기획자, 예비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 창업보육	창업 보육
문체부	게임기업 육성 지원	- 업력 3년 미만의 신규 게임 기업 발굴	발굴
환경부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유망 환경 창업자 발굴 및 육성	발굴
문체부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 문화관련사업 모태펀드 조성	자금
국토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내 희망상가 공급	- 공공임대주택 내 일부상가를 저렴한 임대료에 지원	공간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매장 활성화	- 고속도로내 일부 매장을 청년 창업매장으로 지원	공간
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1	- 생활속 아이디어를 이용한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성공불 융자 지원	자금
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2	- 소상공인 융자지원	자금
농식품부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 식품혁신창업자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장비·전문가·창업교육 지원	안착
농식품부	외식창업 창업보육	- 외식창업희망자에게 창업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기회를 제공	교육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스마트팜 희망 청년 모집 및 교육	교육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청년 농업인 성공모델 발굴	발굴
농식품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청년농에게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공급	공간
농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 영농 경험부족 청년에게 실습농장 임대	공간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희망분야 전문가 컨설팅 제공	컨설팅
중기부	우수벤처기업 공동채용	- 우수벤처기업 공동으로 청년신규직원 채용 및 교육 훈련기회 제공	교육
고용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선발 및 지원을 통해 창업지원	창업 보육
기재부	청년등 협동조합창업지원	- 팀빌딩·팀창업 프로그램지원, 시장조사·사업모델구축·법인설립 등 지원	창업 보육
산림청	산림분야청년창업경진대회	- 실전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	발굴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IP 디딤돌프로그램)	- 전국 17개 IP창업존의 교육·컨설팅을 이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유도	안착

주: 주 사업목표는 부처에서 제공한 주 사업내용과 성과평가지표를 고려하여 분석함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 과제 재분석

〈표 2-10〉 청년창업 지원정책 분야 중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정책 주요 내용

소관부처	과제명	주요내용	사업 목적
중기부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대상 경연대회를 통한 포상 지원	발굴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 보유 3년 미만 청년 창업자 발굴 후 사업성공화 지원	안착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Data, Network, AI 분야 3년 미만 창업기업에 기술교육 및 보육을 제공	안착
중기부	글로벌엑셀러레이팅	- 해외 진출 희망 초기 창업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교육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에 시제품 개발 자금, 멘토링 등 창업사업화 준비단계를 지원	창업 보육
중기부	TIPS(팁스) 프로그램1	- 민간투자사(팁스 운영자)에 의한 우수 창업기업 선발 및 추천	자금
중기부	TIPS(팁스) 프로그램2	- 우수 창업기업 대상으로 R&D 및 사업화·마케팅 자금을 지원	자금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공간
과기부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 지원	- 연구실 소속 연구원 대상으로 실험실 창업탐색 교육 및 보육을 지원	교육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업력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융자 및 연계지원	자금
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	자금
중기부	혁신창업펀드	- 2025년까지 혁신 창업펀드 7,500억 원 조성	자금
중기부	재도전 성공 패키지	- 실패 창업자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교육, 사업화 등을 지원	창업 보육
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대학 내 유휴부지를 고시첨단단지로 조성 후, 창업 기업에게 저렴하게 제공	공간
교육부	대학창업펀드조성	- 대학보유 기술의 창업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1000억 원 펀드 조성	자금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경영, 마케팅등 실무지식 교육 및 지원	교육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스마트팜 창업희망 청년에게 재배 및 경영역량 교육 및 지원	교육
농식품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 공유 주방시설 조성 및 운영을 지원	공간
조달청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 청년고용기업과 청년건축사 기업에게 정부 조달우대 혜택 부여	판로

주: 주 사업목표는 부처에서 제공한 주 사업내용과 성과평가지표를 고려하여 분석함
자료: 국무조정실(2020.1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 과제 재분석

제2절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검토

1. 개관

앞서 1절에서는 정부의 청년정책 중 고용창출과 관련된 창업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366개 청년 과제 중 창업지원 정책은 42개였으며, 청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창업보육 사업은 9개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 창업보육 사업들의 정책 효과성은 존재하는 것일까? 또한 정책 효과성이 존재한다면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요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현재 각 부처로부터 종합 창업보육 사업 지원을 받는 중소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 어느 기업형태가 가장 경쟁력이 우수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기부의 창업 지원기업과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기재부의 협동조합 등 3개 기업형태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중기부의 창업지원 기업과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은 각각의 부처에서 육성하고 있는 창업기업들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한 창업이력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였고, 협동조합은 창업이력 실태조사가 부재해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에서 우려된 점은 각 기업의 원천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해 발표된 조사 결과, 특히 생존기업들만의 조사 결과만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효과의 과대 추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생존기업과 더불어 폐업기업들에 대한 원천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면 각 기업별 생존분석에서 위험함수(Hazard Fuction)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2.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정부가 지원한 청년창업 기업의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창업지원 정책의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창업지원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과 현재 창업지원 기업에 소속된 종사자들의 고용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2-11〉 청년창업 기업형태별 지원 내용 비교('20년 기준)

중기부		예산규모	지원금액	지원기간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922.0억 원	최대 1억 원(평균 7.6천만 원)	12개월
	예비창업패키지	113,9억 원	최대 1억 원(평균 4.5천만 원)	10개월
	초기창업패키지	107,5억 원	최대 1억 원(평균 7천만 원)	7개월
고용부	사회적기업가 육성	315.9억 원	최대 5천만 원(평균 3천만 원)	10개월
기재부	청년 등 협동조합 육성	16.5억 원	(평균 1.6천만 원)	12개월

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이력·성과조사 및 기재부(2020) 내부 자료인 협동조합 육성사업 이력 자료 중 동일항목 만을 비교

우선, 앞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년창업 지원정책 중 창업기업을 창출하는 종합 창업보육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기업형태별 1개 기업을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기업당 평균 1.6~7.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7~12개월 정도로 파악된다. 지원부서별 창업지원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벤처 등 영리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기업당 지원예산액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이른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기업당 지원액은 평균 1.6~3천만 원 정도로 낮았다.

그리고 지원기업 중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최소 64% 이상이었다. 단 중기부의 창업지원 기업의 경우,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창업을 준비할 때, 사업체 등록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 하지만 고용부의 사업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 인증 또는 허가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창업 성공의 난이도가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67.9%(2011년)의 창업 성공률을 보였던 고용부의 사회적기업과 최소 61.7%의 창업 성공률을 나타내는 기재부의 협동조합 창업률은 높은 편이라 판단된다.

〈표 2-12〉 청년창업 기업형태별 창업성공률

구분	중기부 창업지원기업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			기재부 지원 협동조합		
	지원 기업	창업 기업	창업 성공율	지원 기업	창업 기업	창업 성공율	지원 기업	창업 기업	창업 성공율
전체	46,719	46,564	99.7	4,259	3,902	91.6	114	73	64.0
2009년	1,245	1,241	99.7	-	-	-	-	-	-
2010년	1,755	1,753	99.9	-	-	-	-	-	-
2011년	1,213	1,208	99.6	312	212	67.9	-	-	-
2012년	1,921	1,919	99.9	341	262	76.8	-	-	-
2013년	2,983	2,981	99.9	340	268	78.8	-	-	-
2014년	4,204	4,184	99.5	359	337	93.9	-	-	-
2015년	5,152	5,132	99.6	409	379	92.7	-	-	-
2016년	5,684	5,663	99.6	501	494	98.6	-	-	-
2017년	7,233	7,209	99.7	511	494	96.7	24	17	70.8
2018년	8,217	8,187	99.6	680	667	98.1	30	19	63.3
2019년	7,112	7,087	99.6	806	789	97.9	60	37	61.7

주1: 중기부 창업지원기업은,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이력·성과조사 자료를, 기재부 지원 협동조합 자료는 기재부(2020)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주2: 중기부의 지원 기업중 창업지원기업은 직접 분석 자료가 부재해 각년도 휴업상태를 제외한 사업유지기업과 2019년 기준, 폐업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재집계해 산출, 본고에서는 폐업을 창업 후 폐업으로 간주

또한 청년창업 지원기업 종사자의 고용 확대 가능성, 즉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창업지원 기업 수에서도 전반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체 등록 등 창업에 성공한 창업지원 정책기업들의 수를 살펴보면 중기부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은 전체 33,398개, 고용부의 청년 사회적기업은 2,907개, 그리고 청년 등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73개로 파악되며, 이들 3개 창업지원 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4%, 18.5%, 47.5%로 동일 기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기업의 연평균 신생률 5.2%보다 최소 3.2%p 높았다.

〈표 2-13〉 기업형태별 연평균 창업기업 증가율

(단위: %)

구분	전체 ('15~'19)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창업지원 중소기업	33,398	5,152	5,684	7,233	8,217	7,112	8.4%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2,907	409	501	511	680	806	18.5%
창업지원 협동조합	73	-	-	17	19	37	47.5%
일반 기업	451,900	813,000	876,000	913,000	920,000	997,000	5.2%

주1: 중기부 창업지원기업은,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이력·성과조사 자료를, 기재부 지원 협동조합 자료는 기재부 협동조합과(2020) 내부 자료를, 일반기업 자료는 통계청(2015~2020),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비교

둘째로 창업지원 기업의 고용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 기업들의 생존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 생존율이란 해당연도 신생 창업기업이 시간 경과에 따라 생존한 비율로, 여기서 생존은 기업이 신생 이후, 특정 경과 년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속한 경우를 의미한다(통계청, 2020, 기업생멸행정통계). 이와 관련하여 각 기업 형태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일반 영리기업 대비 높은 기업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생존율의 경우, 중기부 창업지원 기업은 92.5%, 고용부의 청년사회적기업은 96.5%, 기재부의 협동조합은 93.4%로 정부

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영리기업의 1년 생존율 63.7%보다 최소 29.7%p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로부터 지원 또는 인가를 받은 창업지원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이 일반 영리기업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으로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 효과가 창업 시점으로부터 1~2년간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5년 생존율의 경우, 중기부 창업지원 기업은 57.1%, 고용부의 청년사회적기업은 57.3%, 기재부의 협동조합은 75.3%로 각각의 기업 형태들의 1년 생존율보다는 급감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영리기업의 5년 평균 생존율 31.2%보다는 최소 25.9%p 높아 1년 생존율의 격차 29.7%p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표 2-14〉 기업형태별 기업 생존율 현황

(단위: 년도, %)

구분	기준 년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창업지원 중소 기업	2019	2018	92.5	2017	86.1	2016	75.4	2015	65.0	2014	57.1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2020	2019	96.5	2018	88.0	2017	73.1	2016	62.3	2015	57.3
청년 등 협동조합	각년도	2015	93.4			2017	83.2			2019	75.3
일반 기업	2018	2017	63.7	2016	52.8	2015	44.7	2014	36.7	2013	31.2

주1: 기업생존율 : (t-1)년 신생기업 중 (t)년까지 생존한 기업수/(t-1)년 신생기업수 * 100

주2: 중기부 창업지원기업은,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이력·성과조사 자료를, 일반기업 자료는 통계청(2015~2020),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비교

주3: 협동조합의 경우,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생존율 관련 자료가 부재해 통계청(2021),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기획재정부(2017).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재정부(2019). 2019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의 각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차용,

주4: 각 수치는 설립 후 해당년도 사업체 등록 협동조합 중 해당년도 까지 폐업한 전체 협동조합의 비율

세 번째는, 각 기업형태별 고용창출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지표로써 창업지원 기업당 평균 종사자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 1차년도 중기부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는 4.9명, 고용부 지원 청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평균 3.3명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신생 일반 영리기업은 평균 1.46명으로 매우 낮아, 창업지원 기업 대비 최소 약 2배 정도의 종사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지원 여부에 따라 신생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매년 창업되는 일반 영리기업의 경우, 〈표 2-15〉처럼 1인 창업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존하여 활동하는 기업 중에서도 종사자 1인 규모의 비중은 78.9%로 국내 일반기업의 창업이 매우 소규모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5〉 기업형태별 창업기업의 평균 종사자 규모

(단위: 개, 명)

구분		창업지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창업지원 중소 기업	신생기업 수	4,228	6,085	8,701	12,230	15,710
	평균 고용인력	6.6	6.1	6.0	5.4	4.9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신생기업 수	379	494	494	667	789
	평균 고용인력	5.3	5.5	5.3	3.5	3.3
협동조합	기업 수	6,235	10,615	-	14,526	-
	평균 고용인력	2.2	3.5	-	3.8	-
일반 기업	신생기업 수	813,000	876,000	913,000	920,000	997,000
	평균 고용인력	1.53	1.52	1.45	1.48	1.46

주1: 중기부 창업지원기업은,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이력·성과조사 자료를, 일반기업 자료는 통계청(2015~2020),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비교

주2: 협동조합의 경우,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평균고용이력 자료가 부재해 각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차용

〈표 2-16〉 일반 영리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생멸 현황

(단위: 천개, %)

종사자 규모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2019	구성비	2019	구성비	2018	구성비
전체	6,527	100.0	997	100.0	692	100.0
1인	5,146	78.9	893	89.6	634	91.6
2인 이상	1,380	21.1	104	10.4	58	8.4
2~4인	795	12.2	71	7.1	42	6.1
5~9인	337	5.2	23	2.3	11	1.6
10~49인	215	3.3	9	0.9	5	0.7
50~99인	19	0.3	0	0.0	0	0.0
100인~199인	8	0.1	0	0.0	0	0.0
200인~299인	2	0.0	0	0.0	0	0.0
300인 이상	4	0.1	0	0.0	0	0.0

자료: 통계청(2018~2020), 기업생멸행정통계

네 번째로 각 기업의 고용 창출에 관한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형태별 매출액 규모 추이를 살펴보았다. 중기부의 창업지원 기업 평균 매출액은 2017년 5.7억 원에서 2019년 7.9억 원으로 약 2년간 17.7% 증가하였고,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은 2017년 1.4억 원에서 2019년 1.6억 원으로 약 2년간 6.9%씩 증가하였다. 반면에 일반 영리기업은 연 1.38억 원~1.24억 원으로 연평균 약 5.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은 중기부의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지원연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답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기업형태별 평균 매출액 규모

(단위: 개, 억 원)

구분		창업 지원 년도		
		2017	2018	2019
창업지원 중소 기업	신생기업 수	12,003	14,482	16,512
	평균 매출액	5.7	6.9	7.9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신생기업 수	559	897	1224
	평균 매출액	1.4	1.5	1.6
협동조합	기업 수	1,979	2,189	-
	평균 매출액	1,82	1,07	-
일반 기업	신생기업 수	913,340	919,752	996,779
	평균 매출액	1.38	1.35	1.24

주1: 중기부 창업지원기업은,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이력·성과조사 자료를 활용. 일반기업 자료는 통계청(2015~2020),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비교

주2: 협동조합의 경우,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평균고용이력 자료가 부재해 각 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차용

주3: 일반 창업기업 매출액의 경우, 통계청이 매출액 평균치 대신 5천만 원 미만에서 100억 원 이상까지 총 7개 범주별 비율만을 제공하고 있어 각 범주별 중간치 금액과 비율을 이용하여 가중평균해 산출

이와 같이 3개 창업지원 대상 창업기업과 일반기업과의 경쟁력 분석을 요약해 보면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각 기업당 최소 1.6천만 원에서 7.6천만 원까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업생존율과 고용창출 규모, 그리고 매출액 상승, 3가지 측면에서 일반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3개 창업보육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020년 기준 약 1,517억 원에 불과해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고용기업에 지원하는 약 6조 3,317억 원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등 현재 취업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이다.

제3장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

제1절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제2절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제3절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제4절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시장 진출 현황 분석
제5절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

본 고에서는 앞서 청년실업률 완화 방안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영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교육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국가정책 방향이 국민복지에 맞추어지면서 복지예산 비중과 규모가 과거 대비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창업은 청년고용 창출과 지속성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 내 경쟁력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은 사업을 통한 이익 발생 시, 영리법인과 달리 출자자들에 대한 이윤배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이윤을 종사자 복지에 투자하거나 신사업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인 내 유보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고용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대안으로서 주 사업 목적이 비영리인 창업지원 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장에서는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서 가능성 타진을 위해 크게 시장진입과 운영, 그리고 육성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1절에서는 정부의 국내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의 유형, 그리고 해외 비영

리법인 지원정책과의 차이를 법제처의 관련 법률정보들과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시장진입 측면에서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인 중소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비영리법인 창업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을 각 기업형태 별 제도에 관한 내용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운영 측면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을 을 통해 일반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의 고용 지속가능성에 관한 경쟁력을 제3절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all business Integrated Mangement System, SIM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들의 정부 위탁사업 현황 및 가능성을 제4절에서 파악하였고, 제5절에서는 현재 창업지원 정책대상인 청년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비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는 조세 감면제도의 특성과 경쟁력을 조세법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표 3-1〉 비영리법인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방법론

관점	구성	주요 내용	분석방법
시장진입 가능성	제1절	-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 법적근거와 지원 정책 유형	법제처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수집 및 내용분석
	제2절	-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검토	창업 지원정책 대상별 인가·허가제도 내용분석
운영 현황과 경쟁력	제3절	-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데이터 분석
		- 영리법인 대비 기타사업체간 제무성과	KED를 이용한 재무성과 분석
육성 정책	제4절	-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중기부 SIMS 데이터 분석
		-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위탁사업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 분석
	제5절	-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법제처 법률정보시스템 자료 수집 및 내용분석

제1절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1. 현행 정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

가. 현행 정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

현재, 한국에서는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단체 가운데 단체의 설립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맞추어 이를 법인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동법 제39조). 후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동법 제32조 참조).

또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이 성립할 수 있다. 동법은 법인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동법에 근거하여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동법 제2조)으로 하는 경우, 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 이외에도「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학교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의료법」에 근거한 의료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법령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있다. 2000년 제정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

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1)]에서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참조).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공익활동 참여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동법 제5조 참조)과 보조금(동법 제6조)지원, 그리고 조세감면(10조) 및 우편요금의 지원(제11조)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존재한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특별히 공익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은 학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공익법인은 공익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할 수 있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보다 그 개념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이러한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1975년에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세 번째로 조세 분야에서는 각 개별법에서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3-2〉와 같이 조세법 분야에서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및 비영리 사업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에서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950&ancYd=20000112&ancNo =06118&efYd=2000041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 2021.10.25.).

〈표 3-2〉 조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지원 규정

대상	지원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동법 제16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동법 제48조) -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면제 등 (동법 제50조 등)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	- 과세소득 범위의 제한(동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동법 제29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동법 제55조의2 제6항) - 과세표준 등의 신고 특례(동법 제60조 제5항) -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동법 제62조) -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동법 제62조의2)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	-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동법 제26조 제1항)
지방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특례(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특례(동법 제103조의23 제6항)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동법 제103조의32)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6호(2021), 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202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8577호(2021), 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2021).

한편, 비영리법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법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이 있다. 동법에서는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①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③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④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⑤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⑦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및 ⑧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자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참조). 그리고 등록을 마친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참조).

네 번째로 기타 하위법령 차원에서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익법인법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 대상, 감액 요건, 감액 범위 등에 관한 고시」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추진단계별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사업 참여 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단체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부당집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2] 아울러 2020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30718호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3]이 제정되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4]하였다.

---

2) 행정안전부,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1면[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none(방문일 : 2021.10.25.).

3) 동 시행령은 최근 시민사회는 정부가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활성화해 가야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사회위원회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사회위원회 간사를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504&lsiSeq=232025#0000
(방문일 : 2021.10.2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417&ancYd=20200526&ancNo=30718&efYd=202005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방문일 : 2021.10.25.).

나. 국회 계류 법률

현행 제21대 국회에서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안, 2가지이다. 이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두 10건이 제안되어 소관위원회에 접수 또는 심사 중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공익법인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설립목적 및 운영에 반하는 설립자나 법인 관계자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재무·회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보다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3〉 21대 국회 계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	주요내용
(210023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24인) (2020-06-05)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공익법인은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을 높이고,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5]
(2100313)「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2020-06-10)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등).[6]

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A0Q0Q6X0W5Q1R7C5B0V1G5R5

의안	주요내용
(210057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2020-06-16)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7]
(2100576)「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2020-06-16)	최근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8]
(210112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0-06-29)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에 그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2조),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9]
(2101136)「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0-06-29)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10]
(210408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2020-09-21)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 공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9조).[11]
(2108297)「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1-02-25)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신설).[12]
(211183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2021-07-30)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13]

D0V3(방문일 : 2021.10.25.).

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K0H0A6Z1E0N1G0T4M9D2J8G6Y6K8(방문일 : 2021.10.25.).

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

의안	주요내용
(211205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2인) (2021-08-13)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留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14]

주: 각 항목별 원문 주소는 각주에 표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

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D0E0E6Y1Y6I1N8S2Z8F3J8L0E8E4(방문일 : 2021.10.25.).

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C0U0Y6A1P6S1W8J3L8M3F0P6X4W6(방문일 : 2021.10.25.).

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0X0W6B2V9Y1P3C5W1X0N6P8H9C7(방문일 : 2021.10.25.).

1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H0X0P6C2O9H1D4K3H8T0I3K7V6X5(방문일 : 2021.10.25.).

1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X0Z0S9B2K1W1U3E4I2A5X6F6I8G1(방문일 : 2021.10.25.).

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1P0E2G2S5T1W0F1Y7C2K6P2O8R9(방문일 : 2021.10.25.).

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Z2B1T0J7T3C0M1R3U4C7O0V2A9O2B7(방문일 : 2021.10.25.).

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J1Z0D7S2A7I1D1B4O3F4E0J1U6I0(방문일 : 2021.10.25.).

는 내용이다. 다만, 김영배 의원 안에 있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 수를 완화(현행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축소, 안 제2조 제4호)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의 부과(안 제3조 제2항 신설), 보조금 지원범위의 확대(안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삭제)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1조의4 신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동 법안은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공익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 제정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다.[15]

〈표 3-4〉 21대 국회 계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의안	주요 내용
(210023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20인)(2020-06-05)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16]

1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C1I0Z1X1J1B1T7H3U3U2Y3J7N5J2(방문일 : 2021.10.25.).

1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

의안	주요 내용
(2101040)「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6-26)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제6조).[17]
(210113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2020-06-29)	비영리민간단체가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9조1항 및 제13조제1항).[18]
(2107650)「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2021-01-26)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19]
(210838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2021-02-26)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20]
(211062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0인)(2021-06-04)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21]
(211088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2021-06-1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22]

주: 각 항목별 원문 주소는 각주에 표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1),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C0Z0O6O0U5I1O8H1I4Z0T6Z6H5X6(방문일 : 2021.10.25.).

1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C0F0D6W2W6Y1C1A2U2H5L6U3K8T8(방문일 : 2021.10.25.).

18)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W0D0S6K2W9J1V4B3M0U0I1T7O2E2(방문일 : 2021.10.25.).

1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I1W0D1I2R6O1O7J5G2Y1K8C8A2G3(방문일 : 2021.10.25.).

2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

다. 비영리법인 대한 지원정책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직접적 지원정책과 간접적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지원정책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중앙정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유형과 분야는 〈표 3-5〉와 같다. 그리고 연도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4년 133억 원을 지원한 이래 해마다 점점 총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총 305건, 149억 원의 신청에 총 223건, 7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23]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몇 개 분야를 나누어 해마다 공모를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간접적 지원정책으로는 조세법상의 조세감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우편요금 할인, 종사자 교육 및 지원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은 비영리법인이 존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1K0V2O2T6T1R5R4K9Y3A5Y4B6L0(방문일 : 2021.10.25.).

2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R1S0R6P0A1J1F3A5N5I4J0T4F5K1(방문일 : 2021.10.25.).

2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1W0A2R0V1Y1D0Q1G5X0D2A7K6O6(방문일 : 2021.10.25.).

2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지원사업통계, https://npas.mois.go.kr/nsbms/hmp/infoPblntf/sbsidySportYearTrnsitn/sbsidySportYearTrnsitnChart.do(방문일 : 2021.10.25.).

〈표 3-5〉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분야별 예시

사업 유형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사회통합	-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 다문화·탈북자 생활 적응 지원, 노인층 스마트 교육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일용직 고용안정
사회복지	-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증진 - 치매 예방 교육 지원, 고령자·느린 학습자 학습 지원 - 소외계층 복지·인권 증진 - 자원봉사(의료, 재능, 사회봉사 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시민사회	-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생태·환경	-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 쓰레기 줄이기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 국가안보, 국방, 보훈, 국토 보전 - 평화통일 기반 구축, 세계평화 증진 활동 - 국경일 의미 알리기, 나라 사랑 활동
사회안전	-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 안전사고 예방, 생명 존중 확산 - 사회 안전 및 국민 안전 -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등
국제교류협력	-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 교류 -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활동 -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 국제개발 및 구호 사업 지양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OPAS)(2021), 사업유형 및 분야별 예시, https://npas.mois.go.kr/nsbms/hmp/bsnsInfo/sotBsnsTyRamEx/ sotBsnsTyRamExR.do?srchBizYear=2021(방문일 : 2021.10.25.).

특히, 최근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유지가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층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각 정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및 시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6〉 각 부처별 청년 일자리 관련 비영리법인 지원정책

소관부처	정책 내용	근거 법령
기획재정부	중소 비영리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비영리 부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비영리 분야 지원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비영리법인·단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제7조

자료: 박준. (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 주요 해외 국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

가. 주요 해외 국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

우선,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정의에 대해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제501조(c)(3)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점검, 문학, 교육,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그리고 아동과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공동모금(community chest), 기금 또는 재단으로서, 그 순수익이 사적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그 주된 활동으로 정치적 선전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 공공 자선단체가 대표적으로 해당하며, 아울러 교회·종교 및 사회복지단체, 사교클럽, 노동단체 등의 기타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되지만, 일반적으로 단일 주요 자금 출처(여러 출처의 자금보다는

일반적으로 한 가족 또는 기업의 기부)를 가지고, 대부분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자선단체나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하는 민간 재단(Private Foundations)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24] 따라서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주로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인격 없는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등이 있으나, 미국에서 이러한 단체의 성립은 상당 부분 미국 회사법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25] 즉, 비영리단체는 각 주의 장관에게 단체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만, 비영리성의 판단은 미국 국세청이 담당한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로 성립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정보공개의 의무 등이 발생한다.

한편 미국에서 비영리법인 등의 활동을 규율하는 정부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국세청은 비영리성을 판단하여 세제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BBB 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BBB wisegiving alliance)가 있다. 이 단체는 거버넌스, 효율성, 재정 및 모금과 관련된 20개의 자체 평가 기준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인증(Charity Seal Licensing)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부자에게 정보 제공과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 재정 및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6] 이와 아울러 미국 가이드 스타에서는 미국 국세청이 인정한 180만여 개의 면세단체와 수천 개의 종교 기반 비

24)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exempt-organization-types(방문일 : 2021.10.25.).
25) 김태선, “미국의 단체에 관한 법제도”, 「중앙법학」 통권 제66호, 중앙법학회, 2017.12., 158-159면 참조.
26) https://www.give.org/charity-landing-page/bbb-standards-for-charity-accountability# 참조(방문일 : 2021.10.25.).

영리단체의 재무, 회계 및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27]

둘째로 현행 일본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은 민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리고 그 밖의 법인설립은 조직,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민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8]. 이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에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법인 관련 규정을 상당수 삭제(제38조부터 제84조까지 삭제[29])하는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민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일본의 공익법인의 법적 근거는 개별법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일본 NPO법)"이 있다. 1995년 일본에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특정 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동법 제1조) 1998년 12월 1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일본 NPO법)"을 제정하였다. 일본 NPO 법인은 특정 비영리활동[30]을 주된 목적으로 ① 영리를

27) https://www.guidestar.org/ 참조(방문일 : 2021.10.25.).

28)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129AC0000000089(방문일 : 2022.1.10.).

29)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129AC0000000089(방문일 : 2022.1.10.).

30) 특정비영리활동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에 열거된 특정한 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 ② 사회교육 추진을 위한 활동, ③ 지역사회조성(まちづくり) 추진을 위한 활동, ④ 관광진흥을 위한 활동, ⑤ 농어촌 또는 중산간지역의 진흥을 위한 활동, ⑥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동, ⑦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⑧ 재해구원활동,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② 사원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해 부당한 조건이 없으며, ③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자의 수가 임원 총수의 1/3 이하이며, ④ 종교활동,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또한 동법에서는 ① 설립절차·신청서 그리고 정관 내용 등이 법령에 적합하고, ② 당해 신청 관련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규정된 단체에 해당하며, ③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 또는 폭력단의 구성원 아닌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않은 자의 통제에 있는 단체가 아니며, ④ 당해 신청 관련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10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 것 등의 NPO 법인 인정기준(동법 제12조 제1항 참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관청이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그 설립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관할청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설립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동법 제43조 참조)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개별법으로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인정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있다. 동법은 일본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중요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조치 등을 정하여 공익의

⑨ 지역안전활동, ⑩ 인권옹호 또는 평화추진을 위한 활동, ⑪ 국제협력활동, ⑫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의 촉진을 위한 활동, ⑬ 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 ⑭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⑮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활동, ⑯ 경제활동 활성화을 위한 활동, ⑰ 직업능력개발 또는 고용기회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⑱ 소비자보호을 위한 활동, ⑲ ①~⑱의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지원을 위한 활동, ⑳ ①~⑱의 활동에 준하는 활동으로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활동.

증진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동법상의 공익법인은 학술, 기예, 자선 및 그 밖의 공익에 관한 별표 각호에 열거하는 종류의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동법 제2조 제4호 참조), 일본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법인 가운데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 행정청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의미한다(동법 제3조 및 제4조 참조)[31].

한편, 일본에서는 비영리법인 활동에 관한 관리·감독은 관할 관청이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민간조직인 비영리조직평가센터(JCNE: Japan Center for NPO Evaluation)가 출범하면서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민간 공익단체의 조직강화 및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해 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단체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① 공익활동단체의 평가·인증 및 평가인증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업, ② 공익활동단체의 조직 및 사업의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사업, ③ 공익활동 실시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④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제언, 사회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발신 등에 관한 사업, ⑤ 평가인증제도에 종사하는 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32]

셋째로 영국에서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는 공익신탁단체, 영국 회사법에 근거한 법인, 공익법인(CIO: 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zation)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영국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의 승인을 얻어 등록을 마친 단체는 자선단체(charity)의 지위를 부여받는다[33]. 영국 "비영리

31)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8AC0000000048(방문일 : 2022.1.10.).
32) https://jcne.or.jp/about/jcne/ 참조(방문일 : 2021.10.25.).

단체법(Charities Act)(이하, 영국 CA)"에서는 자선단체를 '자선적인 목적(charitable purpose)'만을 위해 설립되며, 영국 고등법원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영국 CA 2011 제1조 및 제11조). 여기서 '자선적인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것과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 수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가난의 예방 또는 구제, 교육의 발전, 종교의 발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선단체의 사업목적이 반드시 이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유사하다면 사업목적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동법 제3조 참조). 한편 영국 공익위원회는 사업 과정에서 공익단체의 불법행위 및 부실 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방지대책 수립과 공익법인의 일반인 대상 모금 활동에 대한 최초 허가 및 지속 여부의 판단, 그리고 등록된 공익단체에 대한 최신 정보수집 및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영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업무와 더불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넷째, 독일에서 비영리단체는 사단(Verein)이나 재단(Stiftung), 그리고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or GmbH) 등 3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영리단체가 반드시 법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단체가 존재한다. 독일의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독일 "민법" 등 연방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단은 부분적으로 독일 주법(Länder)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독일 연방법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자격의 인정 여부에 관여하지만, 실제적인 결정은 지방세무서가 담당한다.[34]

---

33) 김학수/송은주/이형민/조승수,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109-111면 참조.

34) https://www.cof.org/country-notes/nonprofit-law-germany#_ftn2

여기서,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를 의미하며, 일정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 또는 사단 구성원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담당 지방법원의 사단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독일 민법, 제21조). 또한 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집합체(독일 민법 제80조, 제88조)로 재단의 주 사무소가 위치하는 장소의 담당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법인격이 부여되며, 당국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재단을 승인한다(동법 제80조 참조). 이외에도 독일에서의 비영리단체는 특별법에 따라 등록 및 규제가 이루어지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들이 제한적인 책임만을 부담하는 법인격을 가진 상업회사이나, 비영리단체 목적이 무보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할 경우,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기도 한다.[35]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영리 개념을 공익, 자선 및 종교의 3가지 목적별로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7〉 독일 「조세기본법」상 비영리의 목적별 정의

목적	정의
공익	- 공공복리에 대한 기여로서, 법인의 활동이 물질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측면에서 국민 전체의 이타적 발전에 직접적이고, 전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제52조 제1항)
자선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원인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는 자 또는 독일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구성원 등에게 이타적으로 지원하는 것(제53조)
종교	- 종교공동체의 이타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제54조)

자료: 박준. (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방문일 : 2021.10.25.).

35) https://www.cof.org/country-notes/nonprofit-law-germany#_ftn2
(방문일 : 2021.10.25.).

독일의 비영리법인 등은 세무 당국에 회계 사항을 신고하지 않지만, 외부 민간단체에 의해 검증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외부 민간단체로 '독일중앙사회문제연구소(Deutsches Zentralinstitut für soziale Fragen, DZI)'가 있다. 1893년 설립된 독일 중앙사회문제연구소는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재무 및 회계 검증, 그리고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부자들에게 기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6]

나. 주요 해외국가의 비영리법인 지원정책

첫째,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가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37]과 많은 비영리단체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38]에서 국가 차원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조세감면 등의 방법으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39]. 원칙적으로 미국의 비영리법인은 과세의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특정한 비영리단체만 비과세의 적용을 받는다(IRC 제501조(a)). 즉,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IRC 제501조(c)(3)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

36) https://www.dzi.de/ 참조(방문일 : 2021.10.25.).
37) 김태선, "미국의 단체에 관한 법제도", 「중앙법학」 통권 제66호, 중앙법학회, 2017.12., 159면 참조
38) 박성환·이호영·강선아·채수준(2014), "비영리공익법인의 모니터링시스템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와 정책연구」 제19권 제5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10면 참조.
39) 미국에서의 비영리단체는 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구성되며, 이러한 단체의 성립은 주로 주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Ⅱ.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 1. 현행 법령 (1) 미국 부분에서 기술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주된 지원방법은 미국 IRC 제501조(a)에 근거한 조세감면을 참조하여 작성자가 내용을 정리하였음.

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미국 국세청에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고용주 식별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부여받아야만 한다. 다만, 비영리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될 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IRC 제511조(a)).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지방세 또는 영업세의 비과세를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 또는 법인의 증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IRC 제501조(c) 참조).

한편, 개인이나 법인이 IRC 제501조(c)(3)의 적용을 받는 자선단체에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IRC 제170조 참조), IRC 제501조(c)(3)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자선단체가 부당이득을 얻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규제세(Excise tax)가 부과되며, 과세기간 내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교정거래를 하여야 한다(IRC 제4958조). 그리고 미국 국세청은 불법행위를 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면세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더불어 IRC 제41장과 제42장에 따른 추징세(Penalty Excise Taxes) 및 제507조에 따른 면세 취소세(Termination Tax)와 같은 형벌적인 조세도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에서도 NPO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및 내각부 등 각 정부 부처별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과의 협력 및 협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비영리법인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형태

로 형성 및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 또는 운영을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NPO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NPO 센터는 정부, NPO 법인, 지역주민간의 연계와 연결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NPO 센터는 민간 비영리 부문에 대한 기반조직으로서 NPO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조성의 공동 책임자로서 기업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NPO 단체의 조직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면서 ① NPO의 사회적 정착과 신뢰성 확보(안정성), ②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응하는 NPO의 확대(선구성), ③ NPO의 재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정착(자립성), ④ 지역 생활에 필요한 NPO의 대처 정착(지역성), ⑤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 Stakeholder) 프로세스의 추진과 정착(협동성) 및 ⑥ 사회에 대한 메시지의 발신력 확대(사회변혁성) 등을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40]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NPO 및 NPO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강화를 위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의 다양한 연수와 기업 및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 촉진, NPO 법인 데이터베이스인 “NPO 히로바”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 및 공개 지원, 소프트웨어 기증을 통한 NPO의 ICT 활용 기반 강화, 세금 및 법인 제도에 대한 제안 및 제언, 그리고 NPO회원 대상의 개별 상담 등의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41]

한편 일본에서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를 살펴보면, NPO 법인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세제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NPO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하, 인정 NPO법인[42])의 특정비영리활동에 대해

40) https://www.jnpoc.ne.jp/?page_id=10146 참조(방문일 : 2021.10.25.).
41) https://www.jnpoc.ne.jp/?page_id=10146 참조(방문일 : 2021.10.25.).
42) ① 퍼블릭 서포트 테스트(Public Support Test)를 충족할 것, ② 법인의 활동이 회원을

서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 또는 증여를 할 경우에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또는 상속세의 과세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일본 NPO법 제71조). 이러한 특례는 NPO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부자의 기부금에 세액공제 또는 세율공제를 적용하여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인정 NPO법인에 기부한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40%는 국세(소득세)에서, 그리고 10%는 지방세(주민세)에서 공제되어 최대 기부금액의 5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은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의 특례 조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11의 2).[43]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에서도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목적사업에 관련된 활동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및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과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그리고 지방세 등에서 혜택을 지원 받는다(공익인정법 제58조).[44] 이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각 사업 연도소득 중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법인세법 제5조(내국법인 과세소득의 범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일본 법인세법 제7조).[45] 그리고,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해당 공익을

위주로 한 공익(共益)적 활동이 아닐 것, ③ 적정한 조직운영 및 회계, ④ 사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⑤ 적정한 정보공개, ⑥ 소관청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⑦ 법령위반 또는 부정행위 등이 없을 것, ⑧ 성립 후 1년을 넘은 기간의 경과 등의 요건을 갖춘 NPO법인을 의미한다(네모토마사쯔구·박영화, 2012).

43)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2AC0000000026(방문일 : 2022.1.10.).

44)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8AC0000000049_20160401_426AC0000000069(방문일 : 2022.1.10.).

45)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0AC0000000034(방문일 : 2022.1.10.).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일본 상속세법 제12조 제3항),[46]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 제1항).[47] 그러나, 공익인정법 제4조에서는 공익법인 등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와 법인과세신탁을 인수하는 경우,[48] 그리고 제84조 제1항(퇴직연금 등 적립금 금액의 계산)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업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진다.[49]

세 번째로 영국에서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주로 공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익위원회는 자선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해 운영과 관련된 조언 및 자문을 실시하고, 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선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자격요건은 자선단체가 ① 영국, 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또는 노르웨이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② 자선 목적으로만 설립되어야 하고, ③ 공익위원회 또는 다른 규제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④ 적절하고 적합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⑤ 영국 국세청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50] 이와 아울러 기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임대 또는 은행 이자

46)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5AC0000000073(방문일 : 2022.1.10.).
47)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2AC0000000026(방문일 : 2022.1.10.).
48)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8AC0000000049_20160401_426AC0000000069(방문일 : 2022.1.10.).
49)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8AC0000000049_20160401_426AC0000000069(방문일 : 2022.1.10.).

와 같은 투자 소득, 재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판매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부동산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자선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다면 과세하지 않는다.[51] 따라서 자선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부수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지만,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영국 소득 및 법인세법(ICTA: Income and Corporation Tax Act) 1988 제505조 참조). 그리고 자선단체가 얻은 금융수익, 부동산수익, 자본이득, 사업활동수익 등은 고유목적에의 사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될 수 있다(동법 제505조(e) 참조). 한편, 일반 직장인 등 개인은 자선단체에 기부금 공제제도의 기부(gift aid donations)와 기부금을 사업자가 원천 징수하는 원천징수(payroll) 공제제도의 기부(gifts under a payroll deduction scheme)를 할 수 있으며,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소득공제되며, 자선단체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된다.[52]

네 번째로 독일에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에서 비영리단체로 인정되는 단체 형태가 다양해 이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과 많은 비영리단체가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기부금 등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에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비영리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50) https://www.gov.uk/charities-and-tax/get-recognition(방문일 : 2021.10.25.).
51) https://www.gov.uk/charities-and-tax/tax-reliefs(방문일 : 2021.10.25.).
52) 김학수·송은주·이형민·조승수. (2017).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114-115면 참조.

위한 사업 실시범위에 한정하여 세제상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독일 "조세기본법" 제64조 제1항)[53], 이때 발생한 이익이 과세의 최저한도인 연간 3만 5천 유로를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된다(동조 제3항).[54]

비영리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과 목적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목적이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공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동법 제59조).[55] 즉, 단체의 목적이 공익만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목적의 전속성과 자금 지출의 적시성, 그리고 이익을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형식적 요건 등도 필요하다.[56] 이러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받은 기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내지 18호).[57] 또한 비영리단체가 받은 기부금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독일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58]

한편,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독일 "소득세법" 제10b조 제1항),[59] 다만 법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과 급여 합계액의 0.4%가 기부금 공제의 한도로 적용될 수 있다(독일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53) https://www.gesetze-im-internet.de/ao_1977/(방문일 : 2022.1.10.).
54) https://www.gesetze-im-internet.de/ao_1977/(방문일 : 2022.1.10.).
55) https://www.gesetze-im-internet.de/ao_1977/(방문일 : 2022.1.10.).
56) https://www.cof.org/country-notes/nonprofit-law-germany#_ftn2 (방문일 : 2021.10.25.).
57) 기부에 의해 출연된 자산을 10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는 등 조세특례의 사유가 소멸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독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3호 참조).
58) https://www.gesetze-im-internet.de/kstg_1977/BJNR025990976.html (방문일 : 2022.1.10.).
59)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BJNR010050934.html (방문일 : 2022.1.10.).

60)결국, 독일에서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세제상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공익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여부 판단은 지역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1).

이상과 같이 해외 주요 4개국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지원 법제와 운영 및 감독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국가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법제에서는 첫째, 단체의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다. 미국의 경우 설립을 규율하기보다는 세제상의 특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자선적인 목적인 경우라면 비영리단체의 설립이 자유로우며, 다만 공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선단체 에게만 세제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와 유사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법인단체를 인정하면서 세제상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만 국가기관인 세무서가 관여하고 있다. 이외에 일본에서도 과거 일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의 일본 NPO법 또는 일본 공익단체 인정법에서는 관할청의 인증만으로 비영리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함으로써 양적 측면에서 비영리단체의 사업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둘째,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감독에 민간 영역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

60) https://www.gesetze-im-internet.de/kstg_1977/BJNR025990976.html (방문일 : 2022.1.10.).

61) 독일에서의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역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Ⅱ.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 1. 현행 법령 (4) 독일 부분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자가 내용을 정리한 것임.

다는 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공익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NPO센터가 정부와 NPO법인과의 중간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독에서도 미국은 주 정부가 일부 관여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비영리단체의 내부 통제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관리·감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세무서)의 역할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한국과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와 정책 비교

앞서 본 절에서는 한국 등 주요 5개국 정부의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첫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에 있어 주요 5개국은 법인설립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준거법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대체로 해당 국가의 “민법” 또는 “상법” 등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연방제 국가의 경우 연방법과 각 주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각 국가는 비영리법인 지원과 관련하여 법인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경우, 다양한 세제상의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비영리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부를 받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도 기부받은 현금 또는 현물을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한다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셋째,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경우 감독기관에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사업에 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주요 5개 국간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와 정책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법인설립의 용이성에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설립에 있어 대체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감독관청의 특별한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법인설립에 주무관청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근의 일본 NPO법 또는 공익인증법에서는 관할청의 인증 또는 인정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반법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원에 등기를 완료함으로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엄격한 허가주의를 완화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일반법인 "민법" 외에도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유사하다. 이에 반하여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체로 일반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면 세법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세법상의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을 세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비영리법인이 실시하는 사업

의 '비영리성' 또는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관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주무관청에서 이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등의 국가에 있어서는 세무 당국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공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정 NPO 법인의 경우 지방 세무 당국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인정위원회에서 공익성을 판단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국가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국가에서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은 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주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대체로 주무관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관할청과 세무 당국이 감독을, 그리고 관리에서는 특히,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이원 체제가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미국의 경우, BBB 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BBB wisegiving alliance)가, 독일은 독일중앙사회문제연구소(Deutsches Zentralinstitut für soziale Fragen, DZI)가, 영국에서는 영국 공익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NPO 지원센터가 있다.

제2절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1. 개관

본 절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의 가능성 타진을 위해 현재 청년 창업지원 정책이 부재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 용이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원 근거에 대한 국내외 비교평가를 통해 한국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로 인해 해외 대비 비영리법인의 설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재,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인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을 제도·행정 자료를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벤처기업 등 3개 기업형태 역시 주무관청의 인증 및 허가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용이성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주의가 청년들의 국내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성에 어느 정도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벤처기업 등 기타 정부 인가 및 허가 기업들과 비교하여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의미한다.[62] 즉,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법인을 소유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조직으로, 영리 아닌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란 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발생한 이윤을 조직의 소유주나 구성원에게 나눠주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은 반드시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다.

---

62) 지원림(2019), 민법강의, 서울, 홍문사

한편, 비영리법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63], 「의료법」에 근거하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6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본 절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제도에 관한 비영리법인의 조직 형태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이 사업 분야와 업종에서 명확하고 청년고용 등의 부가적 목표를 동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역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출연한 자산의 상속·증여세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지원하는 법인 규정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창업 지원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 형태를 반드시 법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적용되고, 보조금 지원, 기부금 대상 공익단체 지정 등을 받을 수 있어 검토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 지원제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써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63) 「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64)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체 등 4개 조직 형태를 포함하였다.

또한 본 절에서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검토할 기업형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제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설정하였다. 3개 기업형태로 정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부분이 이 유형의 창업으로 귀결되었으며 통계자료의 접근이 쉬워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내용에서는 7개 조직 형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의 등을 확인하였으며, 법인설립 과정과 법인설립 후 등록 또는 인허가사항, 법과 제도적 지원 내용 등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2. 기업형태별 정의와 법적 근거

가. 비영리법인의 세부 유형과 특성

우선, 비영리법인 중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nonprofit making corporation)을 사단법인(社團法人, 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財團法人, a foundation)이라고 한다(민법 제31조, 제32조). 이중, 사단법인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 등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과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단체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법 제32조,

39조, 상법 제169조). 또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출연된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재단의 목적과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는 등 재단의 활동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구분된다(법 제43조).

두 번째 비영리법인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있다. 사회복지사업[65]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 제

65) 사회복시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2조 제3호)으로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규정하는 재단법인에 속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등의 사업[66]을 위탁(법 제9조 제2항)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법 제34조 제5항[67]))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비영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법 제2조 제3호)을 말한다.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등)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회나 대의원총회(조합원 200명 이상일 때 해당) 등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1인 1표를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구를 가지며 조합원 1인의 출자 한도는 총 출자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 및 지역사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66)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67)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회를 위한 사업을 필수 포함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④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⑤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⑥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⑦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 있다. 특히, 법인이 정한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조).

나.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유형별 특성

한편, 청년창업 지원정책으로 설립되는 주요 기업형태의 법적 근거와 법인격 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venture企業)이라고 한다(법 제2조). 벤처기업은 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 ④ 예비벤처기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유형별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벤처기업 확인 기관에서 발급하며 벤처기업법 시행령[68]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기관은 벤처확인기업에 대한 상

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주요 제품 등 일반 사항과 재무 정보, 투자 관련 정보, 벤처기업 확인서를 공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69]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도록 의사결정기구가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잉여금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출자금에 비례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이나 배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조직 형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또한,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법인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인증조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법 제7조)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6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69) ICA(국제협동조합연맹)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3-8〉 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별 종류와 특징

구분		근거법	특징
비영리 법인	사단 및 재단법인	민법	- 비영리법인, 주 사업 주무관청인가,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복지부인가, - 사회복지사업과 시설 운영위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 비영리법인, 주 사업 주무관청인가, - 조합원 총회(1인 1표), 넓은 사업영역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법인 또는 임의단체, 시도 등록, - 공익사업 참여, 우편료 감면
기타 정부 인가 및 인증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제, - 유형별 금융·세제·인력지원
	일반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 중소기업, 시도 신고(등록제), - 조합원 총회(1인 1표), 유보금 인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 법인(영리, 비영리), 고용노동부 인증 - 일자리창출 사업·재정·세제·인력지원

자료: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8618호 (2021). 협동조합기본법, 법률 제17818호 (20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7374호 (2020).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2012).

3. 기업형태별 법인설립과 인허가 과정

가. 비영리법인 유형별 법인설립 과정

우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을 기본으로 따르나, 비영리법인의 유형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인가 또는 허가 절차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주 목적사업,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행정절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과 비영리법인에게 지원되는 법적 혜택과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법인에 따라 선택적이다.

먼저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인 사단·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준비와 설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설립 허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인 법인설립 준비와 설립총회 개최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정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작성한 후 법인 창립총회를 여는 과정이다. 이때 사단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설립발기인을 구성하고 법인의 사업을 주도하는 핵심 회원 3인 이상이 필요하다. 반면에 재단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위해 출연하는 '재산'이 준비되어야 하고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법인의 목적과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한편, 설립총회 준비사항으로는 법인의 목적 및 법인의 명칭 정하기, 설립발기인 구성, 회원명부 작성, 임원(이사와 감사, 이사회), 사무소, 정관 작성, 법인의 기초규범으로 필요한 재규정 등을 검토하고 총회 안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단계로 개최된 설립총회에서는 정관 심의 채택, 대표자 및 임원(이사와 감사) 선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기본재산 출연 사항, 주사무소 및 법인조직 승인 등을 안건으로 부의하고 의결하며 총회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회를 마친 후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활동 목적사업에 따라 담당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신청서 및 첨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단계로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주무 부서는 정관을 중심으로 명칭, 목적과 사업내용, 예산의 비중 순서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립 취지 및 발기인과 임원의 이력 사항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주무관청은 사단·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회비 징수, 수혜대상 등 조건을 붙여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림 3-1〕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설립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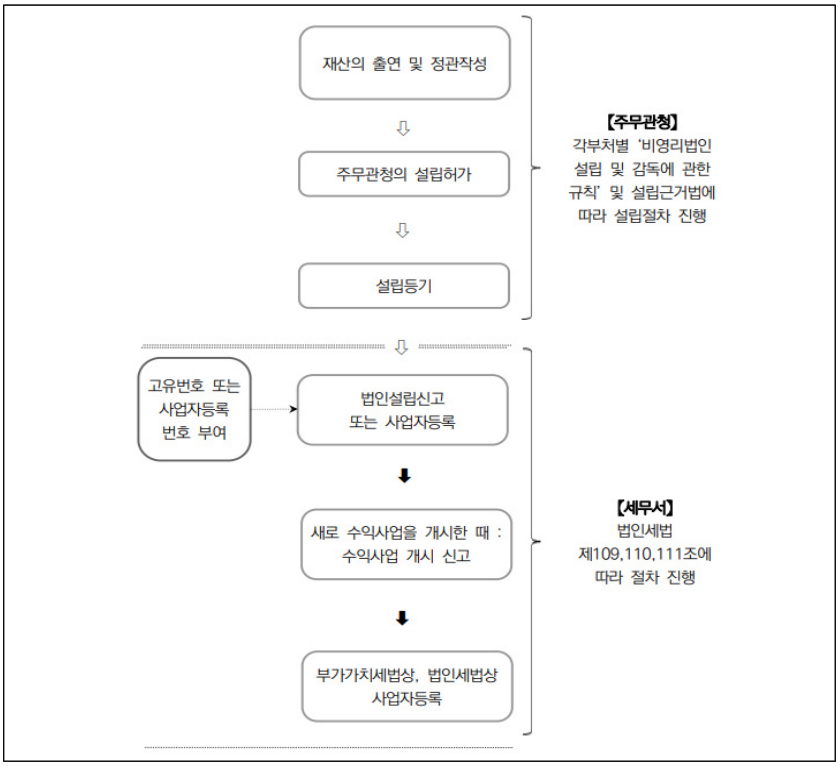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2021),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인가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인가 절차는 「민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규정을 따르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70]를 준

7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비하여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법」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규정에 따라 자산에 관한 실제 조사 결과와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해야 하며,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사회복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71]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72]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

---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 〈2008. 11. 5.〉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71)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한은 17일 이며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허가신청서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72)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조합과 정관에 동의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발기인과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행정기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설립인가증을 교부 받는 과정을 거친다. 우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발기인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목적사업과 유관한 중앙 행정기관(부처, 청, 위원회 등)의 장에게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73]를 준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설립인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73) 설립인가신청서(제18호 서식),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사업계획서(제19호 서식), 수입·지출 예산서(제20호 서식),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수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가증을 받은 설립신청인들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하고 이사장은 조합원이 되려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납부받아 조합원의 자격을 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협동조합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설립을 등기하면 법인등기증명서를 교부받게 되고, 법인등기증명서와 소정 서류를 준비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 받으면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자료: 협동조합 포털 홈페이지(2021), https://www.coop.go.kr/COOP/manage/establishGuild_normal.do에서 2021. 10. 25. 인출

넷째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최근 1년 이상의 실질적인 비영리 공익사업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 활동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 기준, 전년도 총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 사업 수지 예·결산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등록하고자 하는 연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설립과 등록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하는 해당 연도에 반드시 100명 이상의 회원[74]을 확보하고 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단체가 사용할 사무공간을 증명하기 위한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무실 무상사용 승낙서 등의 서류도 필요하다. 그리고 등록 준비를 마치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하게 되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는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주무관청은 어느 한 곳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목적과 고유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별개로 특정될 수 있다.

나.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유형별 설립과정

현재,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대상인 벤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과정은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을 설립하거나 등기하는 절차를 기본적으로 따른다. 다만 해당 기업형태를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기업에 대한 지

74)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을 명시(법 제2조)하고 있어, 회원 수 100명 이상은 설립 인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원과 혜택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적 제도적 필요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활동의 목적에 따라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경영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경영자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기업형태를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여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9〉 벤처기업 유형별 기준요건

구분	특징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투자금액의 총합계가 5천만 원 이상[75] -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7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77]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할 것 -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중소기업기본법 제17626호,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17626,20201208)에서 2021. 10. 25. 인출

75)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금 인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

첫째, 벤처기업의 설립과 확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설립한 후, 관련 법이 정하는 벤처기업 유형별 기준 요건을 갖추었다는 벤처기업 확인 기관의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벤처기업 확인제도). 앞서 서술한 것처럼 벤처기업의 유형은 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 ④ 예비벤처기업 4가지로 유형이 구분되며 각각 유형별 기준요건은 〈표 3-9〉와 같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76)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77)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림 3-3〕 벤처기업 확인 신청 절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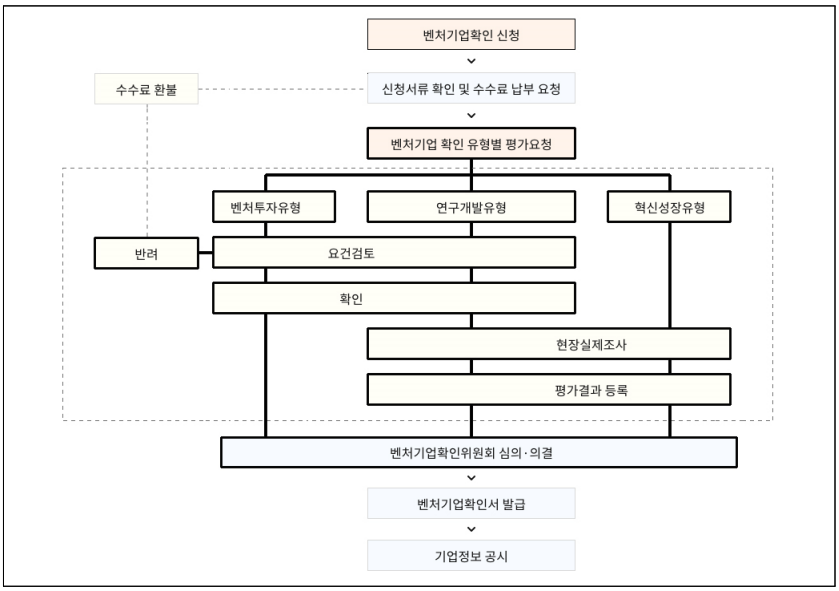

자료: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2021),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ocessGuide에서 2021. 10. 25. 인출

두 번째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기업으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등록 절차는 크게 발기인모집과 설립총회, 협동조합 설립, 등록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발기인모집에서는 협동조합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설립발기인을 모집하고 정관을 작성한다. 이때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78]에서 정한 필수 기

78)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총회에서는 발기인들이 정관에 동의하는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후,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지 2 이상 찬성으로 설립을 의결해야만 한다. 총회 이후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는데,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발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후 설립과정은 앞서 사회적협동조합과 같다.

세 번째로 사회적기업은 법인 형태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법인설립은 먼저 법인격을 갖춘 후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따른다. 우선, 사회적기업은 법인[79](法人, juridical person)인 회사(사업장, 기업)로 규정되고 있어서 법인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첫 과정이다. 여기서 법인인 회사란 「상법」상 영리기업인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경제조직뿐만 아니라

---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9) 법인이란, 민법(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민법 제32조, 제39조)

「민법」에 근거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률[80]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명시된 사회적기업으로써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81]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며, 재정, 세제, 판로 등 초기 성장기반 조성과 관련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가 해당연도 인증계획 공고를 하면 사회적기업 인증 희망 기업들은 권역별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지원 기관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후 고용노동부 인증심사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위원회는 지원 기관과 진흥원, 소위원회 의견을 담아 사회적경제육성전

80)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수산업법

81)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문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그림 3-4]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social/ente/certProcedure.do?m_cd=E003에서 2021. 10. 25. 인출

4. 기업형태별 운영 지원제도

본 연구에서는 앞서 비영리법인 4개 유형과 현행 창업지원 정책으로 주로 설립되고 있는 3개 기업 유형에 대한 운영상의 지원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기업형태별 법적 근거와 설립 및 인허가 과정이 설립과정 상의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조건이라면 지원정책과 혜택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정부 인허가 및 인증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운영상의 혜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기업형태에 따라 지원되는 정책들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단계에서 기업의 조직 형태를 미리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

우선, 사단·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 4개 유형의 비영리법인들은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82]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첫째,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면제가 있다. 그러나 모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를 내야 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아래 〈표 3-10〉과 같으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표 3-10〉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 하는 사업[83]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84]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85]」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6]」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 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7. 「법인세법 시행령[87]」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88].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82)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13조(구분경리)

83) ①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②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있어야 함, ③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

84) ①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 설립의 경우, ② 외국인학교의 경우

8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86)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 2. 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8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사회복지·문화·예술·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88)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함

또한,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회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즉 자산 및 부채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적어야 하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별로 발생 원천이 분명한 각각의 손익금은 원천별로 귀속시켜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공통 이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고르게 나누고, 공통 손실금의 경우 동일 업종일 때에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으로 같게 나누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실금으로 비례하여 나누어야 한다.

〈표 3-1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대상 수익사업 범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소득[89]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자료: 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2021).

89) 제외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3.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둘째로 공익법인은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당기이익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을 인정(손금산입)해 주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지원제도이다(손금산입). 기부금의 손금산입(비용인정) 한도[90]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결정 금액의 10%(사회적기업은 20%로 적용함)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소득[91]은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100%)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타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의 50%를 곱하여

4.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6.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사업 및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7.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 등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13.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4.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6. 한국장학재단이 「법인세법」 제24조의 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90)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3항
91)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은 소득의 80%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도 가능하다.

셋째로 공익법인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다[92].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93].

넷째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가 있다.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94]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특례 적용대상은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95]이 포함된다.

다섯째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

92)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93)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94) 「법인세법」 제60조

9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원,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리법인(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부가세 면세). 예를 들어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96]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등이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97]되는데, 관세가 면제되는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이나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과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물품 등이 있다.

여섯째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다.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98].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96)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97)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4호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연하는 경우이며,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처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 또는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을 이행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일부 감면(과세가액 불산입)제도가 있다[99].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또는 10%,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 가액을 불산입한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이외에 비영리법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복지법인에게 주어지는 정부 위탁사업이 있다. 비영리법인 4개 유형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지원과 우선 위탁대상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등의 사업[100]을 위탁받을 수 있다(법 제9조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안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0)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있다(법 제34조 제5항[101]).

둘째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설립과 전환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나뉜다.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협동조합본부)과 16개[102]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수시상담과 교육, 설립 신고와 인가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특화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돌봄·의료서비스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참여와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복지부)과 돌봄공동체지원사업(여가부) 등이 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법 제95조의 2[103] 및 시행령 제26조[104])하는 지원제도이다.

---

101)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2) 광역시도에 1개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지원기관으로 선정

103)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 3-12〉 2020년 구매실적 및 2021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국가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기타 특별법인	총계
	광역	기초								
54	17	226	17	36	95	209	152	35	6	847

자료: 기획재정부(2021),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3)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있다. (ㄱ)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제도로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과 교육 용역(법 제36조 제1항 제7호)에 대해서는 부가세 적용을 예외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 증가에 따른 등기 등록면허세,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주민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반영해야 하므로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3-13〉 지방세 감면 조례 예시

구분	조례 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 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천 5백 원인 경우는 4만 2백 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 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자료: 협동조합기본법, 법률 제17818호(2021).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105] 지정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와 더불어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 세제 적격단체 및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되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06].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해 적용된다.[107]

(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 우편요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108]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필

105) '지정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은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106) ①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④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107)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108) 시행령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5조).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한 중앙부처와 시·도는 〈그림 3-5〉와 같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공고 및 설명회, 공익사업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보조금 지급, 사업 활동 집행, 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지원의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 사항 등에 대한 협조(공공시설 사용지원, 차량 지원, 표창 등)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그림 3-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단계별 업무내용(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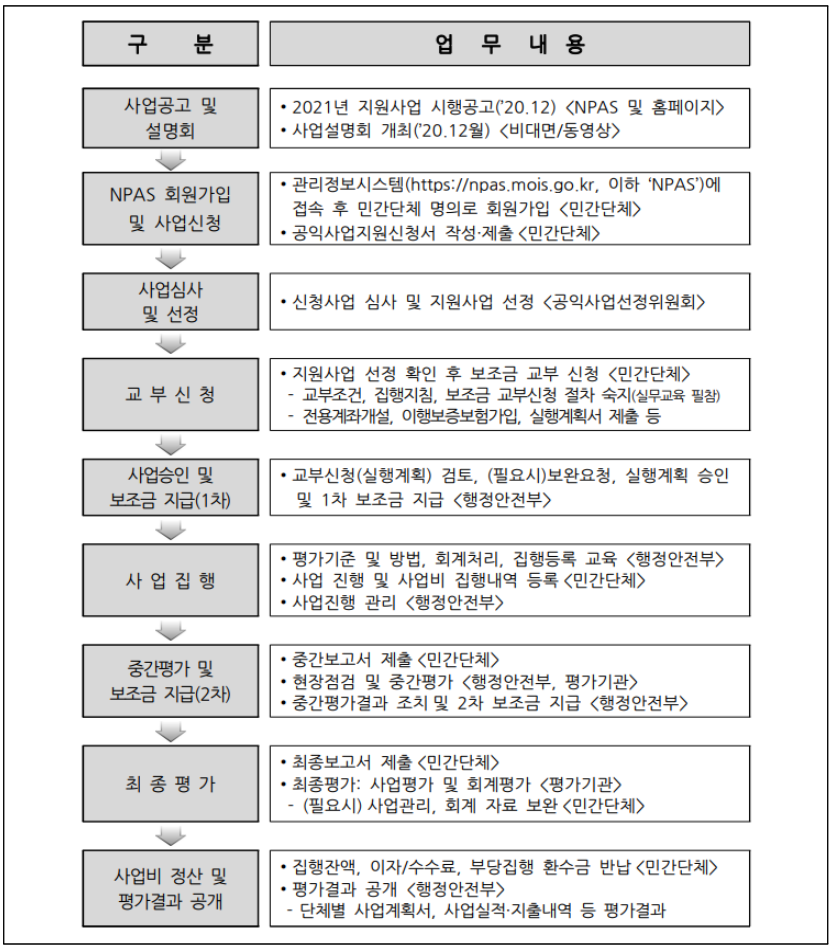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1),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편요금 지원이다(법 제11조 및 영 제14조).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109]해 주고 있다. 또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기부금 대상 공익단체(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나.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첫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창업지원과 창업 후 성장단계별 지원, 벤처기업 확인 후 받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인력 지원제도가 있다. (1) 창업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2021년도 총 1조 5,179억 원의 예산으로 총 194개 창업지원 사업이 15개 중앙부처(90개)와 17개 시·도(104개)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2020~2022)에 포함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가 있다. 이 지원 프로젝트는 '창업 → 스케일링 → 수요창출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표 3-14〉 참조). 또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110]도 있다.

(2) 벤처기업에게 주어지는 금융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일반기업에게 지원되는 30억 원의 금융지원을 벤처기업에게는 50억 원까

109)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 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110) 유망기업 250개 사를 선정하고 2020년 642개 R&D 사업으로 8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1,949억 원을 지원할 계획(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7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를 확대해 주고 있다. 반면에 코스닥 상장기준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을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금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표 3-14〉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창업	- 의료·교육·소비 등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 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사업화, R&D 등 패키지 지원 ▸창업 아이템 사업화 창업자금(최대 1억 원) 지원 및 범부처 협업 사업(중기부는 자금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각 부처는 분야별 특화 지원) ▸투자유치 등 시장에서 인정받은 유망기업에 대한 R&D 지원(최대 2년 6억 원)
성장	- 유니콘 기업 육성; 우량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국내·외 전문가, 국민 심사단이 아기유니콘 200을 선정, 시장개척 등 성장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159억 원까지 대규모 자금 지원 ▸기업가치 1,000억 원이상인 예비유니콘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신속히 투자받을 수 있는 스케일업 시스템 구축(점프업 펀드 1조 원 조성 등) - 신산업 유망기업 250개사를 선정하고 2020년 642개 R&D사업으로 847억 원을 지원(2021년 1,949억 원 지원 계획) - 우대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 비대면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지원 ▸비대면 혁신벤처·스타트업 전용 기술보증 신설(5.5조 원, '25년까지) ▸비대면 분야 정의, 기준, 통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 밀집, 전국 주요 거점 공동화상 회의실 구축 (1,562개)
수요창출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민간시장 중심 활성화 유도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연결하고 바우처 신청 및 사용, 비용 정산 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글로벌화	- 비대면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해외투자 유도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국내기업을 해외 벤처 캐피탈에 소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주: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0),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창업벤처중소기업[111]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동안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와 취득세를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 동안 감면[112]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 면제) 제3항) , 그리고 재산세를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산세 등의 감면))가 있다. 그 외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내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그리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113]해 주는 정책들이 있다.

---

111)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112)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1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 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있는데,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기준 인원을 2명 이상으로 완화[114]해 주는 내용과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인력 기준을 3명 이상[115]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주식 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서도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기준을 벤처 기업에게는 50%로 확대해 주고 있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특별히 협동조합만을 위한 법적인 세제지원이나 혜택은 부재하지만, 중소기업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협동조합이 영리기업과 비교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6년부터 청년 협동조합 창업팀 공모전[116],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보육 협력기관 선정[117], 청년 협동조합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 협동조합 창업팀 선정 등 청년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118]을 시행하고 있는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개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115)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11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는 청년 창업팀(만 19세이상부터 만35세 이하, 최소 2인 이상)을 선정하여 창업 계획을 지원하는 사업

117) "협력기관"이란 팀 협약, 공간·기자재 등 재원 제공, 사업비 집행·관리, 비즈니스 모델 설계, 교육·멘토링 등 창업보육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118) 창업지원사업은 신규설립, 엽합회 설립,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으로 구분

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당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게 팀빌딩 및 팀창업지원, 시장조사 또는 사업모델링 비용지원, 멘토링 및 조합설립 신고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창업지원, 경영지원 및 시설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지원, 우선구매 지원, 세금감면과 면제 등 크게 8가지로 구분된다. (1) 창업지원의 경우,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층에게 사회적기업 창업에 필요한 창업비용, 멘토링,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로 (2) 경영지원사업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 방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회적기업마다 총 5회(연간 1회) 지원 가능하며, 표준형, 자율형 등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과 자부담(10~40%)액이 다르다. (3) 시설비 지원이다.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의 지원·대출·융자 등 자본조달과 국·공유지 임대 등이 가능하다.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5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지원금 수혜 기간) 동안 지원하며 고용 규모가 큰 사회적기업은 최대 50인까지 지원된다. (5) 사업개발비 지원이다.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기업이 자부담하는데 1회차는 10%, 2회차는 20%, 3회차는 30%가 적용된다. (6) 재정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채용과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전략기획·회계·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자 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119]해주는 전문인력 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 기준의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지원 사업, 그리고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120]. (7)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121]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8) 세제지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세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122])된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세 50%[123]와 재산세 25%[124], 법인등기 상의 등록면허세 50%가 감면되며,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교육 용역[125]에 대한 부가세도 면세된다.

---

119)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인증 연차에 따라 자부담율 20%~50%를 적용함

12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social/care/financeJob.do?m_cd=E034

12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의료원을 말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3)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1.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5. 기업형태별 설립 용이성 비교에 관한 시사점

지금까지 본 절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용이성을 법인설립과 인허가 절차, 그리고 지원정책 측면에서 벤처기업 등 기존의 정부 창업지원 대상기업들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격 설립과 인허가 절차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법인격 설립에 있어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4개 유형 중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무관청의 인허가 여부가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민간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의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한 데, 그 요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기존 창업 지원 정책사업에 포함된 벤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법인 또는 사업체 등록 신고 후 심의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허가 전 특정 설립요건이 필요한 조건이 있지만, 기존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형태 중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과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설립요건에 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 및 재단은 3인의 발기인과 사업예산을 포함한 정관 작성, 창업총회라는 사전요건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전 자산출연 및 평가와 수익조서 증서와 예산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의 발기인과 조합원 등 설립동의자 확보 및 창립총회 등에 관한 조건이 사전에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최근 1년 이상의 비영리 공익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2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 제4호

와 비영리법인 등록 시, 필요한 10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에 벤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을 설립하는 등록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전 설립요건이 비영리법인보다는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이어야 한다는 사전조건이 부여되어 설립 용이성 차원에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5인 이상의 발기인과 조합원 등 설립동의자, 그리고 창립총회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전 설립조건 상의 난이도는 비슷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설립된 이후에 벤처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정 사전 설립요건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기업형태별 설립 절차에 대한 제도적 검토

구분	조직유형	설립준비	설립과정	등기 전 규제	등기 후 제도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3인 이상	창립총회	인허가	-
	재단법인	기본재산(소)	출연자	인허가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대)	출연자	인허가	-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	창립총회	인허가	-
	비영리민간단체	100인 이상	창립총회	-	등록제
기존 기업형태	벤처기업	1명 이상	-	신고제	확인제
	협동조합	5인 이상	창립총회	신고제	-
	사회적기업	1명 이상	법인	신고제	인증제

세 번째로 기존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기업형태 대비 비영리법인의 창립 용이성을 지원정책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정책의 특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중심의 정부 위탁사업 정책이 주를 이르지만, 기존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들은 기업설립에 따른 창업지원 과정과

특정 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제공되는 재정지원 등 부가적인 정책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세제지원을 받는데, 세부적으로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인정,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 지원, 일부 제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육성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지원,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재정 및 행정지원, 우편요금 감면, 조세감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즉, 비영리법인 4개 유형은 공익법인의 지위로 받은 공통의 세제지원과 함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위탁이나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청년창업 지원정책으로 설립되는 벤처기업은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와 같이 '창업→스케일링→수요창출→글로벌화' 등 기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과 벤처기업 인증 후 주어지는 금융지원 그리고,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과 4년 동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 요원의 확대 등이 존재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창업부터 운영상에 필요한 지식 및 시설, 전문인력 인건비, 판로, 세제지원 등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6〉 기업형태별 지원정책에 대한 유형별 현황

구분	조직유형	세제	시설/판로/사업	창업	운영/시설비	인력	사업개발비	금융/기부금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	-	-	-		○
	재단법인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	-	-	○
	비영리민간단체	○	○	-	○	-	○	○
창업지원기업	벤처기업	◎	○	○	-	○	-	◎
	협동조합	-	-	◎	-	-	-	○
	사회적기업	○	◎	○	○	◎	○	○

주1: ○: 주요 시행 지원정책, ◎: 지원정책 강하거나 용이

결국, 기존 창업지원 정책대상인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비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 인가제와 이로 인한 사전 요건충족들로 인해 신고제 설립과 다양한 창업 및 운영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기타 기업형태 대비 창업 용이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경쟁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과 비용지출 차원에서의 세제지원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부 사업으로서 정부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인 정부 보조금 수입과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그리고 비영리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공익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또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손금산입 등을 고려할 때, 약 20% 이상의 법인세(매출 2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기업의 법인세율 20%, 2021년) 지출이 매년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제3절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1.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쟁력

청년들의 고용 창출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일자리로써 비영리법인에 관한 운영현황과 경쟁력에 관한 정부 통계자료는 2020년 현재,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연도별 가동법인 수와 법인세 신고법인 수, 그리고 법인세 신고법인의 수입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 비영리법인의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가동법인 수는 45,719개이며, 이 중 법인세 납부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35,964개로 파악된다.

〈표 3-17〉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가동법인 수 및 법인세 신고법인 수

(단위: 개, %)

연도	항목	전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019	가동법인 수	874,245	829,066	45,179
	신고법인 수	751,474	715,510	35,964
	법인세 신고율	86.0%	86.3%	79.6%
2018	가동법인 수	816,370	774,466	41,904
	신고법인 수	706,616	673,017	33,599
	법인세 신고율	86.6%	86.9%	80.2%
2017	가동법인 수	769,684	730,458	39,226
	신고법인 수	663,464	631,483	31,981
	법인세 신고율	86.2%	86.5%	81.5%
2016	가동법인 수	726,701	690,368	36,333
	신고법인 수	616,685	588,309	28,376
	법인세 신고율	84.9%	85.2%	78.1%
2015	가동법인 수	673,374	644,957	28,417
	신고법인 수	567,120	542,546	24,574
	법인세 신고율	84.2%	84.1%	86.5%

주1: 국세청 2015~2020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집계해 재분석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2015년 28,417개에서 2019년 45,179개로 약 4년간 약 16,762개가 증가했으며, 법인세 신고 비영리법인도 2015년 24,574개에서 2019년 35,964개로 4년간 약 11,390개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율은 2015년 84.1%에서 2019년 86.3%로 증가한 반면, 2019년 비영리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율은 약 79.6%로 2015년 법인세 신고율 86.5%보다 약 6.9%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동일 기간(2019년 대비 2015년) 영리법인의 증가율(128%)보다 비영리법인(159%)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표 3-18〉 법인세 신고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입액

(단위: 개, 백만 원)

연도	항목	전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019	신고법인 수	787,438	751,474	35,964
	수입금액(매출액)	5,160,465,434	4,962,452,803	198,012,631
	법인당 수입액	6,553	6,604	5,506
2018	신고법인 수	740,215	706,616	33,599
	수입금액(매출액)	5,021,567,332	4,837,161,773	184,405,559
	법인당 수입액	6,784	6,846	5,488
2017	신고법인 수	695,445	663,464	31,981
	수입금액(매출액)	4,661,150,474	4,477,505,816	183,644,658
	법인당 수입액	6,702	6,749	5,742
2016	신고법인 수	645,061	616,685	28,376
	수입금액(매출액)	4,506,772,763	4,318,208,374	188,564,389
	법인당 수입액	6,987	7,002	6,645
2015	신고법인 수	591,694	567,120	24,574
	수입금액(매출액)	4,468,472,742	4,284,779,325	183,693,417
	법인당 수입액	7,552	7,555	7,475

주: 자료의 내용을 집계해 저자 재분석
자료: 국세청(2015~2020), 국세통계연보

한편 매출액 정보의 경우, 법인 중 법인세 등 부가세가 발생한 신고법인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 전체에 관한 현황을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45,179개 중 법인세 신고 비영리법인 35,964개의 매출액 집계액이기 때문에 미신고된 9,215개의 매출액 정보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비영리법인들의 고용 창출 및 고용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용지표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대안으로써 사업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가 2021년 12월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두 번째 대안으로 표본조사이지만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있는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영리법인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에는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등 조직형태별 현황이 집계되는데 이중 회사이외법인에 본 고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단법인(법인코드 21) 및 재단법인(법인코드 22), 사회복지법인(법인코드 32), 학교법인(법인코드 31), 의료법인(법인코드 33) 등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법인등록번호 13자리 중 5·6번에 부여되는 법인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5가지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한 후, 통계청에 요청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받아 분석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요청한 5개 법인의 통합 자료는 제공되었지만, 각각의 법인별 통계는 제공되지 않아 개별 법인 현황의 파악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국내 비영리법인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38,213개로 전국사업체 4,176,549개의 약 0.9%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015년

부터 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조직 형태 중 개인사업체(1.4%) 다음으로 낮았다. 분석 결과 중 특이한 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영리법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조직 형태 중 가장 높았지만 2019년 들어 전년 대비 약 3,083개의 사업체 수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한 통계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2019년 조사 당시, 회사이외법인 중 약 7,000개 법인이 법인 코드를 미응답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계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분석기준을 2018년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8년 기준 전국의 비영리법인 사업체 수는 약 41,296개로 전체 사업체 4,103,172개 중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19〉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연도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8년	19년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계		3,874,156	3,950,169	4,019,872	4,103,172	4,176,549	1.9	1.9
개인사업체		3,104,928	3,160,391	3,197,878	3,245,411	3,276,822	1.5	1.4
회사법인		524,190	541,415	565,580	594,173	624,739	4.3	4.5
회사이외법인	소계	118,407	121,327	124,197	130,272	136,653	3.2	3.6
	비영리법인	35,032	35,560	36,846	41,296	38,213	5.6	2.2
	비영리법인외 법인	83,375	85,767	87,351	88,976	98,440	2.2	4.2
비법인단체		126,631	127,036	132,217	133,316	138,335	1.7	2.2

주1: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
주2: 회사이외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개 법인의 총합이며 비영리법인외 법인에는 공공 및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

두 번째로, 국내 비영리법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총 1,072,951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 22,234,776명 중 4.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은 3.4%로 5개 조

직 형태 중 비법인단체(6.8%) 다음으로 높았다. 결국,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비영리법인은 사업체 수에서 1%에 불가하지만, 고용 비중은 5%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 폭에서도 회사법인(1.9%) 대비 1.5%p, 개인사업체(1.7%) 대비 1.8%p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0〉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 수	종사자 수	종사자 수	종사자 수	
계		20,889,239	21,259,126	21,626,904	22,234,776	2.1
		100.0%	100.0%	100.0%	100.0%	
개인사업체		7,868,870	8,028,713	8,156,480	8,272,436	1.7
		37.7%	37.8%	37.7%	37.2%	
회사법인		9,376,147	9,499,799	9,640,798	9,934,168	1.9
		44.9%	44.7%	44.6%	44.7%	
회사이외법인	소계	3,100,908	3,177,040	3,222,166	3,366,656	2.8
		14.8%	14.9%	14.9%	15.1%	
	비영리법인	970,182	999,061	1,022,837	1,072,951	3.4
		4.6%	4.7%	4.7%	4.8%	
	비영리법인 외 법인	2,130,726	2,177,979	2,199,329	2,293,705	2.5
		10.2%	10.2%	10.2%	10.3%	
비법인단체		543,314	553,574	607,460	661,516	6.8
		2.6%	2.6%	2.8%	3.0%	

주1: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
주2: 회사이외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개 법인의 총합이며 비영리법인외 법인에는 공공 및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

세 번째로, 조직형태별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에서 비영리법인은 2018년 기준, 26.0명으로 5개 조직 형태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체가 평균 2.5명, 회사법인이 평균 16.7명을 고용하는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26.0명으로 개인사업체보다는 약 23명이, 회사법인보다는 약 9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2015년 기준 27.7명에서 2018년 26.0명으로 약 2.1%씩 감소하고 있었다.

〈표 3-21〉 조직형태별 평균 종사자 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 수	종사자 수	종사자 수	종사자 수	
계		5.4	5.4	5.4	5.4	0.2%
개인사업체		2.5	2.5	2.6	2.5	0.2%
회사법인		17.9	17.5	17.0	16.7	-2.2%
회사이외법인	소계	26.2	26.2	25.9	25.8	-0.4%
	비영리법인	27.7	28.1	27.8	26.0	-2.1%
	비영리법인 외 법인	25.6	25.4	25.2	25.8	0.3%
비법인단체		4.3	4.4	4.6	5.0	5.0%

주1: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
주2: 회사이외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개 법인의 총합이며 비영리법인외 법인에는 공공 및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

네 번째로, 종사자의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종사자 지위별 비중에서도 비영리법인은 2018년 기준, 전체 종사자의 83.4%가 상용 근로자였으며, 임시 일용근로자가 13.9%, 기타근로자가 2.7%였다. 이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공공 및 국가기관, 공익법인 등이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외 법인(90.0%)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특히 전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 81.5%에서 2018년 83.4%로 1.9%p 상승한 반면,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 14.7%에서 2018년 13.9%로 감소해 비영리법인의 고용의 질이 점차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2〉 조직 형태·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및 비중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	기타 종사자
2015년	계		20,889,239	13,446,901	2,600,972	3,127,441	747,516	966,409
			100.0%	64.4%	12.5%	15.0%	3.6%	4.6%
	개인사업체		7,868,870	2,617,177	1,122,530	3,127,440	747,511	254,212
			100.0%	33.3%	14.3%	39.7%	9.5%	3.2%
	회사법인		9,376,147	7,728,635	1,047,458	1	5	600,048
			100.0%	82.4%	11.2%	0.0%	0.0%	6.4%
	회사이외법인	소계	3,100,908	2,684,532	349,360	0	0	67,016
			100.0%	86.6%	11.3%	0.0%	0.0%	2.2%
		비영리법인	970,182	791,071	142,402	0	0	36,709
			100.0%	81.5%	14.7%	0.0%	0.0%	3.8%
		비영리법인 외 법인	2,130,726	1,893,461	206,958	0	0	30,307
			100.0%	88.9%	9.7%	0.0%	0.0%	1.4%
	비법인단체		543,314	416,557	81,624	0	0	45,133
			100.0%	76.7%	15.0%	0.0%	0.0%	8.3%
2018년	계		22,234,776	14,368,925	2,888,527	3,260,484	747,380	969,460
			100.0%	64.6%	13.0%	14.7%	3.4%	4.4%
	개인사업체		8,272,436	2,703,161	1,318,753	3,260,484	747,380	242,658
			100.0%	32.7%	15.9%	39.4%	9.0%	2.9%
	회사법인		9,934,168	8,201,999	1,121,993	0	0	610,176
			100.0%	82.6%	11.3%	0.0%	0.0%	6.1%
	회사이외법인	소계	3,366,656	2,960,237	342,991	0	0	63,428
			100.0%	87.9%	10.2%	0.0%	0.0%	1.9%
		비영리법인	1,072,951	894,758	148,812	0	0	29,381
			100.0%	83.4%	13.9%	0.0%	0.0%	2.7%
		비영리법인 외 법인	2,293,705	2,065,479	194,179	0	0	34,047
			100.0%	90.0%	8.5%	0.0%	0.0%	1.5%
	비법인단체		661,516	503,528	104,790	0	0	53,198
			100.0%	76.1%	15.8%	0.0%	0.0%	8.0%

주1: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

주2: 회사이외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개 법인의 총합이며 비영리법인외 법인에는 공공 및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

다섯 번째로, 비영리법인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가 78.3%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사업체(96.1%)와 비법인단체(96.5%)보다는 낮고 회사법인보다(49.8%)는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1,459개의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3.6%로 회사법인(9.58%), 비영리법인 외 법인(8.0%)보다는 적었으나 비영리법인 중 일부 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법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3〉 2018년 기준 조직 형태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원 미만	5천만 ~ 1억 원	1억~ 5억 원	5억~ 10억 원	10억 ~ 50억 원	50억 ~ 100 억 원	100억 ~ 200 억 원	200~ 300 억 원	300 억 원 이상
2018년	계		4,103,172	1,605,649	591,585	1,106,738	315,506	349,249	66,738	34,988	12,049	20,670
			100.0	39.1	14.4	27.0	7.7	8.5	1.6	0.9	0.3	0.5
	개인사업체		3,245,411	1,468,575	533,379	913,221	205,797	116,439	6,176	1,396	254	174
			100.0	45.3	16.4	28.1	6.3	3.6	0.2	0.0	0.0	0.0
	회사법인		594,173	43,965	30,952	133,994	86,761	192,589	48,731	29,342	10,363	17,476
			100.0	7.4	5.2	22.6	14.6	32.4	8.2	4.9	1.7	2.9
	회사이외법인	소계	130,272	20,969	8,269	29,169	15,813	35,704	11,638	4,196	1,416	2,998
			100.0	16.1	6.3	22.4	12.1	27.4	8.9	3.2	1.1	2.3
		비영리법인	41,296	14,697	4,285	9,603	3,722	5,792	1,738	696	193	570
			100.0	35.6	10.4	23.3	9.0	14.0	4.2	1.7	0.5	1.4
		비영리 법인외 법인	88,976	6,272	3,984	19,566	12,091	30,012	9,900	3,500	1,223	2,428
			100.0	7.0	4.5	22.0	13.6	33.7	11.1	3.9	1.4	2.7
	비법인단체		133,316	72,140	18,985	30,354	7,135	4,417	193	54	16	22
			100.0	54.1	14.2	22.8	5.4	3.3	0.1	0.0	0.0	0.0

주1: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
주2: 회사이외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개 법인의 총합이며 비영리법인외 법인에는 공공 및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

한편 비영리법인의 산업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협회·단체 등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9.8%), 교육서비스업(13.7%)의 순이었다.

즉, 이 3개 산업에 대한 비중은 전체 비영리법인의 8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6년 81.9%에서 약 1.8%p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2018년 기준, 3개 산업 중 교육 서비스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비영리법인의 비중이 전체 비영리법인 중 약 3.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3%, 협회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는 0.4%로 나타나 교육서비스업에 진출한 일부 학교법인들의 매출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24〉 2016, 2018년 기준 비영리재단의 산업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사업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1억~5억 원	5억~10억 원	10억~50억 원	50억~100억 원	100억~200억 원
		수	%							
2018년	전체 산업	41,296	100.0	46.0	23.3	9.0	14.0	4.2	1.7	1.8
	농업, 임업 및 어업	38	0.1	0.1	0.0	0.0	0.0	0.0	0.0	0.0
	광업	2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608	1.5	0.4	0.4	0.2	0.4	0.1	0.0	0.0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	5	0.0	0.0	0.0	0.0	0.0	0.0	0.0	0.0
	수도, 전기 등, 원료 재생업	34	0.1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10	0.0	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710	1.7	0.6	0.6	0.2	0.2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156	0.4	0.2	0.1	0.0	0.0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703	1.7	0.9	0.5	0.2	0.1	0.0	0.0	0.0
	정보통신업	334	0.8	0.3	0.3	0.1	0.1	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254	0.6	0.1	0.2	0.1	0.2	0.0	0.0	0.0
	부동산업	395	1.0	0.4	0.3	0.1	0.1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59	4.5	1.3	1.1	0.5	1.1	0.2	0.2	0.2
	사업시설 등 임대 서비스업	645	1.6	0.5	0.5	0.2	0.2	0.0	0.0	0.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80	0.2	0.0	0.1	0.0	0.0	0.0	0.0	0.0
	교육서비스업	5,649	13.7	3.2	2.5	1.2	3.1	2.3	0.8	0.6

구분		사업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1억~5억 원	5억~10억 원	10억~50억 원	50억~100억 원	100억~200억 원
		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304	29.8	7.8	8.5	4.6	6.5	1.1	0.5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24	3.2	1.3	0.8	0.3	0.5	0.1	0.0	0.1
	협회·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186	39.2	28.8	7.3	1.4	1.3	0.2	0.1	0.1
2016년	전체 산업	35,560	100.0	38.9	26.9	10.3	15.5	4.6	1.8	2.0
	농업, 임업 및 어업	29	0.1	0.0	0.0	0.0	0.0	0.0	0.0	0.0
	광업	3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531	1.5	0.4	0.5	0.2	0.4	0.1	0.0	0.0
	전기, 등 공기조절 공급업	2	0.0	0.0	0.0	0.0	0.0	0.0	0.0	0.0
	수도, 전기 등 원료 재생업	31	0.1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8	0.0	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662	1.9	0.7	0.7	0.2	0.3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165	0.5	0.2	0.2	0.0	0.1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561	1.6	0.7	0.5	0.2	0.1	0.0	0.0	0.0
	정보통신업	335	0.9	0.3	0.3	0.1	0.2	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248	0.7	0.1	0.2	0.1	0.2	0.0	0.0	0.0
	부동산업	383	1.1	0.4	0.3	0.1	0.2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03	4.8	1.3	1.4	0.5	1.0	0.2	0.1	0.2
	사업시설 등 임대 서비스업	581	1.6	0.6	0.5	0.2	0.3	0.0	0.0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2	0.2	0.0	0.1	0.0	0.0	0.0	0.0	0.0
	교육 서비스업	5,450	15.3	3.2	2.7	1.4	4.0	2.5	0.8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56	31.7	6.5	10.4	5.4	6.8	1.2	0.6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19	3.1	1.2	0.9	0.3	0.5	0.1	0.0	0.1
	협회·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421	34.9	23.3	8.2	1.7	1.4	0.2	0.1	0.1

주1: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

주2: 회사이외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개 법인의 총합이며 비영리법인외 법인에는 공공 및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

2. 국내 비영리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가. 분석 방법과 지표

본 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고용 지속가능성에 관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비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은 재무 자료나 비재무 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Small Busines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이하, Sims)으로부터 추출한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이하, KED)를 연계하여 구축하였다. SIMS 상의 인증정보를 통해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을 추출하여 재무적 성과를 KED와 연계했고, SIMS 상의 인증정보를 통해 확보할 수 없었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은 KED 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한 후 재무 자료를 연계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0년 말 현재, 인증 벤처기업 수는 37,360개,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2,953개, 협동조합은 4,192개, 비영리법인은 4,189개였고, 이 중, 2014~2019년까지 각 년도별 재무 자료 확인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지표로는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등 대표적인 경영성과 3가지 지표를 이용했다. 분석에 이용된 성장성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을,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을, 그리고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사용하였다.

우선, 성장성 지표는 당해연도 기업의 자산, 자본 등 경영규모와 기업활동 성과가 전년에 비하여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절에서 성장성 지표는 2014~2019년, 약 6년간의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을 이용해서 평가하였다. 총자산증가율(Growth rate of total assets)은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써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한다. 또한 매출액증가율(Growth rate of sales)은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지표이다.[126)]

두 번째, 수익성 지표는 수익 정도를 다른 재무 항목에 대비하여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척도이다. 보통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부채상환계수,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의 지표를 통해 수익성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익률 등 2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 이중 매출액영업이익률(Operating income to sales)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비교하기 때문에 영업 효율성 측정에 유용하다. 또한 매출액순이익률(Net income to sales)은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기업의 수익구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평가한다.

세 번째, 안정성 지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지배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 및 경기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 2가지 지표를 분석하였다. 우선, 부채비율(Debt ratio)은 기업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간의 관계로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재무

126) 이하, 지표에 관한 설명은 한국은행(2019), 2019년 기업경영분석결과(해설 및 통계편)의 분석지표 해설 내용을 일부 인용했음.

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100 이하이면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20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단기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여신평가 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유동비율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

〈표 3-25〉 경영성과 분석지표 설명

구분		산식 및 의미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00 - 회사의 자산총계 증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로서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매출액증가율	- (당기말 매출액 - 전기말 매출액) ÷ 전기말 매출액 × 100 - 회사의 매출액 증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로서 회사의 거래 규모 및 주된 영업활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회사가 적정한 원가율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100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에서 비용, 세금 등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태는 수치
안정성	부채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는 불안정
	유동비율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 단기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여신평가 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

자료: 저자 정리

나. 기업형태별 경영성과 분석 결과

첫째, 기업형태별 성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지표 중 총자산증가율은 당기 말 총자산 증가분을 전기 말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자료를 통해 기업형태 별로 얼마나 자산규모가 확장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형태별 총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2019년 말 현재 벤처기업은 6.8%, 사회적기업은 29.9%, 협동조합은 5.9%, 비영리법인 1.6%(이 중, 재단법인 8.4%, 사단법인 8.5%, 학교법인 -7.6%, 사회복지법인 12.3%, 의료법인 3.9%)로 비영리법인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2015년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9년 6.8%로 큰 폭으로 상승한 총자산증가율을 보였다. 사회적기업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5년 이후 -0.8% 감소하다가 이후 해마다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2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협동조합은 2015년에 큰 폭의 총자산증가율을 보였는데, 이후 2017년까지 총자산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은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7년 -3.9%까지 감소한 이후 2018년 증가와 2019년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회적기업의 연평균 총자산증가율은 1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협동조합 3.7%, 벤처기업 2.9%, 비영리법인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기업형태별 총자산 및 총자산증가율 현황(2015~2019)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전체		42.5	42.3	41.0	41.2	41.4
	벤처기업		30.4	30.8	31.0	31.9	34.0
	사회적기업		4.8	4.9	5.2	6.1	7.9
	협동조합		1.9	2.0	2.0	2.0	2.1
	비영리법인	소계	264.0	276.2	265.5	275.8	280.3
		재단법인	12.8	11.1	11.2	10.5	11.3
		사단법인	179.9	183.4	176.2	194.8	211.3
		학교법인	3,672.8	3,879.0	3,942.2	4,331.1	4,002.0
		사회복지법인	64.1	65.2	57.9	67.4	75.6
		의료법인	129.2	138.8	147.0	154.1	160.1
증가율	전체		-2.5	-0.4	-3.1	0.4	0.6
	벤처기업		2.1	1.3	0.7	2.9	6.8
	사회적기업		-0.8	1.5	6.0	16.8	29.9
	협동조합		26.2	9.7	-2.3	1.8	5.9
	비영리법인	소계	11.9	4.6	-3.9	3.9	1.6
		재단법인	14.5	-13.5	0.5	-6.2	8.4
		사단법인	3.2	2.0	-3.9	10.5	8.5
		학교법인	422.5	5.6	1.6	9.9	-7.6
		사회복지법인	-11.9	1.7	-11.1	16.3	12.3
		의료법인	3.0	7.5	5.9	4.8	3.9

주: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연계 후 재분석

한편, 매출액증가율은 당기 말 매출액 증가분을 전기 말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아래 〈표 3-27〉에서 보듯이, 사회적기업, 벤처기업은 2015년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은 큰 폭으로 둔화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2015년 -0.9%에서 2016년 -2.7%로 증가율이 감소했다가 2017년 이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2015년에 -2.4%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2016년 이

후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9.3%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협동조합은 2015년 전년 대비 매출액이 25.3% 증가했지만 이후 해마다 매출액증가 폭이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매출액증가 폭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비영리법인은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2015년 전년 대비 매출액증가율이 37.0%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매출액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해 2017년, 2018년 2년 동안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가 2019년 다시 5.6% 증가하였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사회적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7.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협동조합 6.1%, 비영리법인 0.9%, 벤처기업 -0.3% 등 순의 순이었다.

〈표 3-27〉 기업형태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현황(2015~2019)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전체		40.1	38.8	38.8	37.1	37.2
	벤처기업		34.7	33.8	34.5	33.6	34.3
	사회적기업		8.2	8.4	8.4	9.2	11.0
	협동조합		3.1	3.6	3.7	3.7	3.9
	비영리법인	소계	160.1	164.4	164.2	157.0	165.8
		재단법인	15.2	13.6	14.3	13.5	15.3
		사단법인	131.1	136.7	131.7	145.0	163.0
		학교법인	1,882.5	1,942.1	2,079.4	1,965.5	1,898.5
		사회복지법인	66.3	66.1	75.3	85.4	83.0
		의료법인	94.1	100.1	107.7	112.0	117.9
증가율	전체		2.3	-3.2	0.0	-4.4	0.3
	벤처기업		-0.9	-2.7	2.2	-2.7	2.1
	사회적기업		-2.4	2.8	0.0	9.3	19.3
	협동조합		25.3	17.0	1.5	1.8	4.9
	비영리법인	소계	37.0	2.7	-0.1	-4.4	5.6
		재단법인	-9.0	-10.8	5.5	-5.7	13.0
		사단법인	-6.5	4.3	-3.7	10.2	12.4
		학교법인	636.9	3.2	7.1	-5.5	-3.4
		사회복지법인	3.6	-0.3	13.9	13.4	-2.8
		의료법인	1.5	6.4	7.6	3.9	5.3

주: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연계 후 재분석

두 번째, 수익성 지표 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란 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로서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아래 〈표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로 수익성이 매우 취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21.8%로 영업손실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벤처기업(-4.0%), 사회적기업(-3.5%), 비영리법인(-3.3%) 등 순이었다. 지난 5년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벤처기업과 비영리법인은 각각 2015년 2.9%, -2.2%에서 2019년 -4.0%, -3.3%로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각각 2015년 -10.8%, -29.9%에서 2019년 -3.5%, -21.8%로 미력하나마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기업형태별 매출액영업이익률 현황(2015~2019)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0.8	-0.2	-1.1	-3.4	-4.6
벤처기업		2.9	1.5	0.5	-2.3	-4.0
사회적기업		-10.8	-7.5	-7.0	-6.0	-3.5
협동조합		-29.9	-25.9	-25.1	-24.2	-21.8
비영리법인	소계	-2.2	-2.2	-2.3	-2.8	-3.3
	재단법인	-12.3	-10.9	-8.2	-9.2	-12.0
	사단법인	-0.7	-1.1	-4.0	-0.6	-0.2
	학교법인	7.0	4.4	4.9	5.2	5.0
	사회복지법인	-7.0	-5.4	-4.2	-14.1	-10.4
	의료법인	5.0	5.2	4.7	3.9	3.5

주: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연계 후 재분석

수익성 지표 중 두 번째 지표인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창출해 낸 이익률을 말한다. 아래 〈표 3-29〉는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매출액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은 2015년 3.4%로 가장 높은 매출액순이익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마이너스 이익률(-0.9%)을 기록해 해마다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2015년 0.9%에서 증가해 2019년 2.3%로 비교 대상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협동조합은 해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5년의 -12.1%에서 2019년 -2.8%로 해마다 호전되고 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2015년 1.1%에서 2016년 -0.2%, 2017년 0.2%, 2018년 -0.3%, 2019년 0.4%로 비슷한 수준 내에서 전년 대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었다.

〈표 3-29〉 기업형태별 매출액순이익률 현황(2015~2019)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7	1.8	1.4	0.1	-0.8
벤처기업		3.4	2.6	2.0	0.3	-0.9
사회적기업		0.9	0.0	0.2	1.1	2.3
협동조합		-12.1	-11.0	-7.9	-5.3	-2.8
비영리법인	소계	1.1	-0.2	0.2	-0.3	0.4
	재단법인	0.4	-3.0	-1.2	-2.0	-0.7
	사단법인	0.9	0.1	-0.2	0.3	1.1
	학교법인	0.5	-0.6	-0.3	0.5	0.8
	사회복지법인	2.7	3.2	1.8	1.1	0.5
	의료법인	1.8	2.0	1.7	1.1	1.0

주: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연계 후 재분석

세 번째로 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은 기업이 타인의 자본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100% 미만을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100% 이상이면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다는 것이며 200% 이상이면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 〈표 3-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비영리법인의 부채비율은 157.5%로 벤처기업(206.4%), 사회적기업(259.4%), 협동조합(248.5%) 대비 재무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영리법인 중 학교법인(40.1%)의 재무안정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보다는 부채비율이 높지만,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기업형태별 부채비율 현황(2015~2019)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06.6	201.6	201.0	204.3	208.4
벤처기업		208.4	204.0	201.7	203.0	206.4
사회적기업		202.8	195.3	211.9	233.7	259.4
협동조합		273.4	237.6	237.1	264.1	248.5
비영리법인	소계	157.0	153.5	156.0	154.2	157.5
	재단법인	161.6	157.2	167.2	164.4	164.6
	사단법인	112.5	113.0	99.5	101.5	101.5
	학교법인	37.1	40.1	39.6	35.7	40.1
	사회복지법인	149.6	113.0	137.8	120.6	147.0
	의료법인	191.8	193.3	196.6	197.9	200.4

주: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연계 후 재분석

그리고 안정성 지표 중 두 번째인 유동비율은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유동자산)을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일반

적으로 200% 이상이면 재무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100% 이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아래 〈표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모두 2019년 유동비율이 200% 이상으로 재무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의 유동비율을 보면,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2015년 이후 유동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해 유동성이 갈수록 양호해지지만, 비영리법인은 2015년 398.5%에서 2017년 421.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369.3%, 2019년 296.4%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유동비율이 2015년 958.9%에서 2019년 250.1%로 708.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기업형태별 유동비율 현황(2015~2019)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73.0	279.4	296.4	310.3	321.2
벤처기업		267.2	274.6	293.4	311.0	324.6
사회적기업		230.9	253.7	261.9	289.5	320.3
협동조합		261.4	234.3	242.1	253.6	268.5
비영리법인	소계	398.5	406.7	421.9	369.3	296.4
	재단법인	434.2	526.9	487.4	435.5	375.5
	사단법인	788.8	723.5	811.4	651.6	492.8
	학교법인	189.0	242.5	224.1	270.3	244.9
	사회복지법인	958.9	427.2	658.2	403.0	250.1
	의료법인	121.5	124.4	105.9	108.9	107.8

주: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및 한국기업데이터(KED) 연계 후 재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성장성 분석에서 우선, 비영리법인은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협동조합의 증가율보다 낮았고, 증

가세도 비교 대상기업 중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다만, 비영리재단의 증가세가 비교대상 기업보다는 낮아도 증가액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외형적 신장세는 비영리재단이 훨씬 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체 매출액 증가율을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2017년 이후 (-)증가에서 2019년 (+)증가로 전환되었다. 총자산매출액과 동일하게 비교대상 기업들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매출액의 절대값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외형적 신장성도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비영리법인은 타 기업형태 대비 총자산이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증가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수요처가 정부사업이며, 대부분의 정부 위탁시장이 규모는 큰 반면에, 예산 증가의 제약으로 인해 증가율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수익성 분석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2015년 -2.2%에서 2019년 -3.3%로 소폭 악화되었지만, 지난 5년간 -2.2% ~ -3.3% 사이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영업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같은 기간 2.9%에서 -4.0%로 약 -6.9%p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각각 -10.8%, -29.9%에서 -3.5%, -21.8%로 적자 폭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이익률이 감소하여 2019년 부(-)로 전환되었고, 순손실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2015년 -12.1%에서 2019년 -2.8%로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었고, 사회적기업은 이익률은 높지 않지만 2016년 이후 해마다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지난 5년간 -0.3%에서 1.1%

로 매출액 중에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매년 적자이지만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주 사업에서는 적자이지만 영업 외 수입 측면에서 민간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셋째, 안정성 분석 결과를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은 부채비율이 지난 5년간 150% 내외로 재무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벤처기업과 협동조합은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사회적기업은 증가세를 보여 재무 건전성이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비율을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9년에 들어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296.4%). 그리고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지난 5년간 유동비율이 해마다 계속해서 개선되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주로 비영리를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벤처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이 민간 영리시장의 급격한 수요에 반응하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현금 등 유동자산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에 진출해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4절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시장 진출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앞서 제시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관한 지원법을 근거로 현재 비영리법인이 어느 정도 정부 지원정책사업에서 수혜를 얻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위탁 및 지원은 매출액 상승으로 이어져 종사자의 고용가능성을 상승시킴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생존율 상승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정부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중소기업으로써 참여하는 사업 이력과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참여 현황,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비영리법인들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현황을 검토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 사업목적인 비영리사업 외에 부 사업으로써 영리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영리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으로써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상 이윤배당이 불가한 비영리법인이지만, 중소기업법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비영리 목적의 주 사업 이외에 부 사업으로 영리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의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위탁 참여 현황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 비영리법인들이 각 중앙부처 소관으로 설립되어 소관 부처 주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이 비영리법인 창업 시, 매출 확보시장으로서 정부 지원 위탁시장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정부 지원사업 이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Small Busines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ata를 이용하여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이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수혜 중소기업 지원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확보가 가능하고, 수혜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 및 지원 후 경영성과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127] 그리고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위탁 사업의 사회복지법인 진출 현황에 관해서는 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의 정부 위탁사업 진출 현황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복지부 내에서도 분석된 바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정부 위탁사업 현황분석에 필요한 원자료 추출이 가능하지만,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정보시스템 개발이 2021년도에 완료되기까지 데이터의 오류수정 및 연동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자료추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종사자 수, 그리고 위탁 주체 등을 살펴보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중앙부처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의 지자체별 보조금 및 후원금 현황을 분석하였다.

12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2021년 9월 누적 기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 중소기업 3,497,476개사, 지원 건수 11,625,873건, 지원액 8,470,753억원의 지원이력을 확보하고 있음.

1.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가.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지원 이력을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2,368개 사(중복 제외)가 약 272,781건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54조 6,795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래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지원사업은 36,875건, 지원액은 8조 1,497억 원에서 2019년 지원사업은 75,012건, 지원액은 14조 2,435억 원으로 각각 203.4%, 174.7%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2015년 546.9백만 원에서 2019년 530백만 원으로 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평균지원건수	평균지원금액
합계	37,360	32,368	272,781	54,679,514	8.4	1,689.3
2015	37,360	14,903	36,875	8,149,727	2.5	546.9
2016	37,360	17,065	43,173	9,292,891	2.5	544.6
2017	37,360	19,148	49,020	10,453,291	2.6	545.9
2018	37,360	23,632	66,376	12,310,332	2.8	520.9
2019	37,360	26,876	75,012	14,243,512	2.8	530.0

주: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벤처기업이 참여한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표 3-33〉과 같이 지난 5년간(2015~2019년) 경영, 금융, 기술, 내수, 수출, 인력, 창업, 기타 등 8개 사업 분야 564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금융 분야 지원사업이 47조 9,652억 원(8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술 지원사업이 5조 2,755억 원(9.6%), 인력 지원사업이 4,425억 원(0.8%), 창업 지원사업이 4,226억 원(0.8%) 등의 순이었다. 결국, 금융과 기술 분야 지원사업이 전체의 97.3%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연도별·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분야 지원액은 2015년 7조 3,204억 원에서 2019년 12조 4,012억 원으로 약 69.4% 증가했고, 기술 분야 지원액은 2015년 7,1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724억 원으로 91.7% 증가했으며, 창업 분야 지원액은 2015년 233억 원에서 2019년 1,544억 원으로 561.8% 증가했다.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간 지원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창업과 경영 분야이지만, 규모에서는 금융과 기술 분야에 비해 크지 않았다.

〈표 3-33〉 지원분야별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경영	14,673	36,358	34,793	79,373	113,162	278,358	0.5
금융	7,320,406	8,275,855	9,202,725	10,765,060	12,401,208	47,965,254	87.7
기술	715,828	868,806	1,062,809	1,255,626	1,372,405	5,275,474	9.6
내수	696	1,010	1,851	4,219	4,241	12,016	0.0
수출	46,914	45,372	56,073	53,167	76,647	278,172	0.5
인력	49,673	56,349	44,136	87,683	204,620	442,461	0.8
창업	23,327	33,244	87,480	124,163	154,376	422,591	0.8
기타	1,079	1,166	1,321	1,291	330	5,187	0.0

주 1: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주 2: 합계는 지원 분야별 지난 5년간의 지원액 총액이고, 비중은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에서 지원 분야별 지원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임.

다음으로 소관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부가 43조 3,693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의 79.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위원회 4조 7,616억 원(8.7%), 산업부 4조 2,306억 원(7.7%), 과학기술부 5,599억 원 (1.0%) 등 순으로 많았으며,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3개 부처의 지원액이 전체의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부처별 벤처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고용부	54,125	77,537	67,058	104,694	211,031	514,445	0.9
과기부	47,787	122,490	143,090	156,632	89,852	559,852	1.0
관세청	387	349	296	273	261	1,566	0.0
국토부	7,136	6,484	6,998	18,871	11,132	50,621	0.1
금융위	621,402	688,978	955,115	1,296,074	1,200,078	4,761,647	8.7
기상청	13		70	1,357	2,141	3,581	0.0
농림부	27,027	34,437	35,103	35,303	50,483	182,353	0.3
문체부	27,172	38,040	52,753	63,779	80,112	261,855	0.5
방통위				1,485	1,474	2,959	0.0
방사청	47,586	16,602	29,581	19,061	33,177	146,006	0.3
산림청		337	759	0	784	1,880	0.0
산업부	749,150	804,490	870,477	903,797	902,691	4,230,606	7.7
식약처	20	6	7	284	40	357	0.0
조달청	35	71	111	145	849	1,211	0.0
중기부	6,506,835	7,440,000	8,223,876	9,628,618	11,570,004	43,369,332	79.3
특허청	19,847	18,689	21,632	34,074	93,847	188,088	0.3
해수부	15,352	17,939	20,036	24,330	23,813	101,470	0.2
행안부				1,350	2,485	3,835	0.0
환경부	48,723	51,713	64,225	80,454	52,735	297,850	0.5

주 1: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주 2: 합계는 지원 분야별 지난 5년간의 지원액 총액이고, 비중은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에서 지원 분야별 지원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임.

중소기업부 지원사업 중에는 기술보증기금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들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부 전체 지원액의 8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벤처기업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건, 백만 원, %)

분야	내역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비중
금융	기술보증기금출연(소부장포함)	32,003	14,756,195	34.0
금융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4,504	10,146,915	23.4
금융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11,439	6,143,837	14.2
금융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기금)	1,289	3,032,324	7.0
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혁신창업지원자금)	6,007	1,640,686	3.8
금융	혁신성장지원	1,723	1,033,675	2.4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표 3-36〉 벤처기업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평균지원건수	평균지원금액
합계	37,360	14,778	47,019	5,870,207	3.2	397.2
2015	37,360	4,212	6,269	863,540	1.5	205.0
2016	37,360	5,109	7,735	960,935	1.5	188.1
2017	37,360	6,196	9,322	1,218,525	1.5	196.7
2018	37,360	6,684	10,362	1,368,118	1.6	204.7
2019	37,360	8,363	13,331	1,459,089	1.6	174.5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한편, 벤처기업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14,778개사가 47,019건의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5조 8,702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동기간 동안 중앙부처로부터 54조 6,795억 원, 지자체로부터 5조 8,702억 원 등 총 60조 5,497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사회적기업

한편, 사회적기업의 지원 이력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1,808개 사가 약 8,956건의 부처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7,706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지원사업은 1,109건, 지원액은 829억 원에서 2019년에는 2,459건, 지원액은 2,226억 원으로 각각 121.7%, 1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당 평균 지원액도 2015년 131.7백만 원에서 2019년 186.9백만 원으로 4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기업당 지원 건수에 있어서는 2015년에 1.8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나타나 기업당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7〉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평균지원건수	평균지원금액
합계	2,953	1,808	8,956	770,574	5.0	426.2
2015	2,953	629	1,109	82,862	1.8	131.7
2016	2,953	758	1,323	96,500	1.7	127.3
2017	2,953	874	1,601	132,273	1.8	151.3
2018	2,953	1,197	2,464	236,294	2.1	197.4
2019	2,953	1,191	2,459	222,645	2.1	186.9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한편,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부처별 지원사업을 사업 분야별로 정리하면 〈표 3-38〉과 같다. 사회적기업은 지난 5년간 기타 부분을 제외한 경영, 금융, 기술, 내수, 수출, 인력, 창업 등 7개 사업 분야에서 7,706억 원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금융 분야 지원사업 참여금은 7,213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3.6%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기술 지원액이 207억 원, 인력 지원액이 13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들 세 분야의 지원액은 7,550억 원으로 전체의 98.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38〉 지원분야별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경영	588	632	1,266	1,060	1,536	5,081	0.7
금융	76,489	87,583	122,754	224,313	210,171	721,309	93.6
기술	2,383	4,097	3,324	5,777	5,106	20,686	2.7
내수	66	90	78	570	205	1,009	0.1
수출	436	416	865	737	1,414	3,867	0.5
인력	2,245	3,047	2,592	2,104	3,013	13,000	1.7
창업	656	636	1,395	1,734	1,201	5,621	0.7
기타	-	-	-	-	-	-	-

주 1: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주 2: 합계는 지원 분야별 지난 5년간의 지원액 총액이고, 비중은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에서 지원 분야별 지원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임.

〈표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관부처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부가 6,987억 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농림부가 266억 원, 금융위원회가 161억 원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부처의 지원액은 7,414억 원으로 전체의 96.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39〉 부처별 사회적기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고용부	2,246	3,134	2,485	2,633	4,549	15,046	2.0
과기부	71	528	72	718	212	1,602	0.2
관세청	2			2	2	6	0.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금융위	1,440	1,100	1,000	5,678	6,930	16,148	2.1
농림부	5,052	7,714	6,525	3,244	4,036	26,570	3.4
문체부	114	37	76	620	944	1,790	0.2
방통위				7	2	9	0.0
산림청		3	12	3	52	70	0.0
산업부	218	349	620	444	830	2,461	0.3
식약처	30	0		44	0	74	0.0
조달청			5	4	2	12	0.0
중기부	72,429	82,914	118,418	221,327	203,640	698,728	90.7
특허청	348	351	220	466	361	1,745	0.2
해수부				312	210	522	0.1
환경부	912	370	2,840	792	875	5,789	0.8

주 1: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주 2: 합계는 지원 분야별 지난 5년간의 지원액 총액이고, 비중은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에서 지원 분야별 지원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임.

그리고 중기부 지원사업 중에는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기술보증기금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들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부 전체 지원액의 8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사회적기업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건, 백만 원, %)

분야	내역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비중
금융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1,060	279,370	40.0
금융	기술보증기금출연(소부장포함)	362	92,770	13.3
금융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15	74,194	10.6
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986	73,895	10.6
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혁신창업지원자금)	265	53,794	7.7
금융	혁신성장지원	95	28,413	4.1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표 3-41〉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평균지원건수	평균지원금액
합계	2,953	1,674	6,280	283,905	3.8	169.6
2015	2,953	592	927	52,804	1.6	89.2
2016	2,953	648	1,023	43,859	1.6	67.7
2017	2,953	735	1,152	55,750	1.6	75.9
2018	2,953	708	1,076	39,249	1.5	55.4
2019	2,953	1,180	2,102	92,243	1.8	78.2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한편, 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1,674개 사가 6,280건의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839억 원의 지원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경우, 동기간 동안 중앙부처로부터 7,706억 원, 지자체로부터 2,839억 원 등 총 1조 545억 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 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지원 이력을 분석한 결과, 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880개 사가 2,479건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32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지원사업은 344건, 지원액은 176억 원이었지만 2019년 지원사업은 665건, 327억 원으로 각각 93.3%, 86.0%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2015년 64.6백만 원에서 2019년 74.5백만 원으로 약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2〉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평균지원건수	평균지원금액
소계	4,192	880	2,479	132,133	2.8	150.2
2015	4,192	272	344	17,583	1.3	64.6
2016	4,192	311	409	24,128	1.3	77.6
2017	4,192	332	448	21,972	1.3	66.2
2018	4,192	405	613	35,745	1.5	88.3
2019	4,192	439	665	32,706	1.5	74.5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한편, 협동조합이 참여한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사업 분야별로 정리하면 〈표 3-43〉과 같다. 협동조합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경영, 금융, 기술, 내수, 수출, 인력, 창업 등 7개 사업 분야 114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금융 분야 지원사업이 952억 원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서 경영 분야 지원사업이 309억 원(23.4%), 인력 분야 지원사업이 24억 원(1.8%), 기술 분야 지원사업이 20억 원(1.5%) 등의 순이었으며, 금융과 경영 분야 지원사업이 전체의 9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 분야 지원액은 2015년 96억 원에서 2019년 251억 원으로 160.5% 증가한 반면, 경영 분야 지원액은 2015년 73억 원에서 2019년 60억 원으로 17.6% 감소했다. 또한 동기간 동안 지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수출 분야로 지난 5년 동안 1,180.4% 증가했지만, 지원액은 2019년 6억 6천만 원으로 2019년 금융 분야 지원액의 0.7% 수준에 불과했다.

〈표 3-43〉 지원분야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경영	7,280	4,789	5,387	7,411	6,002	30,869	23.4
금융	9,644	18,416	15,347	26,642	25,124	95,172	72.0
기술	242	245	420	882	252	2,040	1.5
내수	0	0	117	189	90	397	0.3
수출	32	86	20	112	406	655	0.5
인력	288	427	513	416	741	2,385	1.8
창업	97	166	168	94	91	615	0.5

주 1: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주 2: 합계는 지원 분야별 지난 5년간의 지원액 총액이고, 비중은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에서 지원 분야별 지원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임.

소관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에서는 〈표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부가 1,264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의 9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용부 24억 원(1.8%), 환경부 18억 원(1.4%) 등의 순이었으며, 중기부, 고용부, 환경부가 전체의 9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부처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고용부	288	427	513	416	738	2,381	1.8
과기부				29		29	0.02
관세청					2	2	0.001
금융위					300	300	0.2
농림부			5	4	10	19	0.0
문체부		225	21	12	113	371	0.3
산림청		0	3	0	1	4	0.0
산업부	0	0	493	0	0	493	0.4
식약처	10	0		29	0	39	0.03
중기부	16,688	23,432	20,279	35,220	30,761	126,380	95.6
특허청	33	44	98	28	68	269	0.2
해수부				0	40	40	0.03
환경부	564		560	7	675	1,805	1.4

주 1: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주 2: 합계는 지원 분야별 지난 5년간의 지원액 총액이고, 비중은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에서 지원 분야별 지원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임.

특히 중소기업부 지원사업 중에는 사회적기업과 같이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기술보증기금출연, 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특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이 약 297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들 6개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88.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527개사가 1,339건의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85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경우, 동기간 동안 중앙부처로부터 1,321억 원, 지자체로부터 485억 원 등 총 1,806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3-45〉 협동조합 중기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건, 백만 원, %)

분야	내역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비중
금융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210	38,847	30.7
금융	소상공인협업활성화	670	29,735	23.5
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344	17,560	13.9
금융	기술보증기금출연(소부장포함)	41	9,918	7.8
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혁신창업지원자금)	57	9,464	7.5
금융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7	6,717	5.3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표 3-46〉 협동조합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평균지원건수	평균지원금액
소계	4,192	527	1,339	48,524	2.5	92.1
2015	4,192	112	148	6,555	1.3	58.5
2016	4,192	146	197	7,030	1.3	48.2
2017	4,192	189	251	9,060	1.3	47.9
2018	4,192	224	296	7,860	1.3	35.1
2019	4,192	310	447	18,020	1.4	58.1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라. 비영리법인

한편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 이력의 경우, 아래 〈표 3-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단지 2개 사가 4건의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 자료의 경우, KED(한국기업데이터) 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4,189개 사의 비영리법인을 추출하여 SIMS 데이터의 지원 이력과 연계했지만,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의료법인 2개 사가 단지 4건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128] 비영리법인의 정부 지원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은 지원사업 2건에 지원액 5.9백만 원이 전부였고, 2019년은 지원사업 2건에 지원액은 38.6백만 원이 전부였다.

〈표 3-47〉 비영리법인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평균지원건수	평균지원금액
2018	4,189	2	2	5.9	1	3.0
2019	4,189	2	2	38.6	1	19.3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참여한 부처별 지원사업은 〈표 3-48〉과같이 2018년, 2019년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것이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달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8) 분석대상인 비영리법인을 법인유형별로 구분하면, 재단법인 1,336개 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단법인 864개 사, 학교법인이 831개 사, 사회복지법인이 184개 사, 의료법인 974개 사이다.

〈표 3-48〉 지원분야별 비영리법인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고용부				5.9	38.6	44.5	100.0

주 1: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주 2: 합계는 지원 분야별 지난 5년간의 지원액 총액이고, 비중은 지난 5년간 전체 지원액에서 지원 분야별 지원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임.

마. 종합분석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들의 정부 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영리법인은 정부의 창업, 성장지원사업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고, 대부분 지원사업은 영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은 34,705개 사가 283,080건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55조 4,987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이중, 비영리법인은 단 2개 사가 4건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표 3-49〉 기업형태별 중앙정부 지원사업 현황(2015~2019)

(단위: 개사, 건, 백만 원, %)

구분	대상표본	지원기업 수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 비율	평균 지원건수	평균 지원금액
합계	48,694	34,705	283,080	55,498,657	71.27	8.2	1,599.2
벤처기업	37,360	32,368	272,781	54,679,514	86.64	8.4	1,689.3
사회적기업	2,953	1,808	8,956	770,574	61.23	5.0	426.2
협동조합	4,192	527	1,339	48,524	12.57	2.5	92.1
비영리법인	4,189	2	4	45	0.05	2.0	22.3

주 : 중소벤처기업부(2015~2019), SIMS 데이터 재분석

한편, 대상 표본기업 중 지원 비율을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벤처기업은 86.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회적기업[129]이 61.2%, 협동조합이 12.6% 등 순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은 0.05%에 불과했다. 즉, 비영리법인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창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의 영리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창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로 한정하는데, 여기서 창업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영리와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인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제공, 사회적 문제해결,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도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대상에 포함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영리법인은 주 사업인 비영리 사업 외에 부 사업으로써 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사업 중 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

---

129) 사회적기업은 2012년 1월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대상에 포함되었고, 협동조합은 2014년 1월 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2.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

우선,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국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59,122개이며, 9개 시설 유형 중 어린이집이 37,371개로 전체 시설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노인시설(19.2%), 아동시설(9.1%), 장애인시설(6.3%)의 순이었다. 유형별 시설의 연도별 증감에서는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어린이집은 연평균 3.2% 감소했지만, 노인시설은 연평균 6.7% 증가해 해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복지시설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3-50〉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수(2015~2019)

(단위: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Total	시설 수	60,738	60,130	59,536	58,974	59,122	-0.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노 인	시설 수	8,752	9,274	9,428	9,765	11,346	6.7
	비중	14.4	15.4	15.8	16.6	19.2	
아 동	시설 수	4,890	5,061	5,092	5,155	5,363	2.3
	비중	8.1	8.4	8.6	8.7	9.1	
장애인	시설 수	3,327	3,429	3,507	3,587	3,744	3.0
	비중	5.5	5.7	5.9	6.1	6.3	
정신보건	시설 수	403	413	398	427	427	1.5
	비중	0.7	0.7	0.7	0.7	0.7	
노숙인	시설 수	146	151	153	150	148	0.3
	비중	0.2	0.3	0.3	0.3	0.3	
결핵 및 한센	시설 수	6	7	7	7	6	0.0
	비중	0.0	0.0	0.0	0.0	0.0	
지역자활센터	시설 수	245	251	249	249	249	0.4
	비중	0.4	0.4	0.4	0.4	0.4	
사회복지관	시설 수	452	460	464	463	468	0.9
	비중	0.7	0.8	0.8	0.8	0.8	
어린이집	시설 수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3.2
	비중	70.0	68.3	67.6	66.4	63.2	

주: 각 년도 취합 후 시설 수 연평균 증가율 및 비중을 재산출, 노인시설의 경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5~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두 번째로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587,03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어린이집 종사자가 331,44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56.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노인시설(31.0%), 장애인시설(6.4%), 아동시설(3.4%)의 순이었다. 한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수 연평균 증가율은 -0.7%이었던 반면, 종사자 수는 2015년 515,678명에서 2019년 587,031명으로 연평균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이슈화되면서 복지예산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유형별 현황(2015~2019)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Total	전체	515,678	618,649	550,179	568,912	587,031	3.3
	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노 인	전체	130,229	141,580	151,056	164,318	181,785	8.7
	평균	25.3	22.9	27.5	28.9	31.0	
아동	전체	16,556	105,637	18,390	18,977	19,785	4.6
	평균	3.2	17.1	3.3	3.3	3.4	
장애인	전체	32,863	34,483	35,452	36,354	37,740	3.5
	평균	6.4	5.6	6.4	6.4	6.4	
정신보건	전체	3,285	3,454	3,148	3,326	3,532	1.8
	평균	0.6	0.6	0.6	0.6	0.6	
노숙인	전체	1,470	1,676	1,724	1,762	1,861	6.1
	평균	0.3	0.3	0.3	0.3	0.3	
결핵 및 한센	전체	84	96	96	97	103	5.2
	평균	0.0	0.0	0.0	0.0	0.0	
지역자활센터	전체	1,928	1,914	1,864	2,037	2,023	1.2
	평균	0.4	0.3	0.3	0.4	0.3	
사회복지관	전체	8,196	8,043	8,232	8,621	8,758	1.7
	평균	1.6	1.3	1.5	1.5	1.5	
어린이집	전체	321,067	321,766	330,217	333,420	331,444	0.8
	평균	62.3	52.0	60.0	58.6	56.5	

주: 각 년도 취합 후 시설 수 연평균 증가율 및 비중을 재산출, 노인시설의 경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5~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또한 세부적으로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당 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평균 9.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유형별 종사자 규모에서는 사회복지관이 평균 18.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핵 및 한센시설이 평균 17.2명, 그리고 노인시설이 평균 16명의 순이었다. 반면에 평균 종사자 수가 가장 작은 시설 유형은 아동으로 시설당 3.7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 8.1명의 순이었다. 그리고 시설 유형별 평균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노숙인과 결핵 및 한센시설이 각각 5.7%, 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4년 동안 종사자 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종사자 규모가 큰 노인시설(1.9%)과 사회복지관(0.8%)에서 종사자 확충이 적었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서비스가 이루어진 노숙인 시설과 결핵 및 한센 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확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52〉 사회복지시설별 평균 종사자 수 현황(2015~2019)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Total	8.5	10.3	9.2	9.6	9.9	4.0
노 인	14.9	15.3	16.0	16.8	16.0	1.9
아 동	3.4	20.9	3.6	3.7	3.7	2.2
장애인	9.9	10.1	10.1	10.1	10.1	0.5
정신보건	8.2	8.4	7.9	7.8	8.3	0.4
노숙인	10.1	11.1	11.3	11.7	12.6	5.7
결핵 및 한센	14.0	13.7	13.7	13.9	17.2	5.2
지역자활센터	7.9	7.6	7.5	8.2	8.1	0.8
사회복지관	18.1	17.5	17.7	18.6	18.7	0.8
어린이집	7.6	7.8	8.2	8.5	8.9	4.1

주: 각 년도 취합 후 시설 수 연평균 증가율 및 비중을 재산출, 노인시설의 경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5~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셋째, 운영 주체를 살펴보면, 전체 59,122개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시설은 전체의 88.1%에 해당하는 52,082개이며, 이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10.7%에 불과한 6,323개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유형별 위탁 시설 수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이 3.9%(2,33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2.8%(1,668개), 어린이집 2.3%(1,343개)의 순이었다.

〈표 3-53〉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별 현황 수

(단위: 개)

구분		전체 수	지자체 설치 시설	민간 설치 및 운영 시설				
				소계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단체 (법인 외)	개인
2019년	Total	59,122	7,040	52,082	6,323	4,919	655	40,185
	노 인	11,346	1,055	10,291	2,335	1,212	112	6,632
	아 동	5,363	357	5,006	649	730	289	3,338
	장애인	3,744	649	3,095	1,668	984	35	408
	정신보건	427	0	427	182	91	53	101
	노숙인	148	37	111	51	32	7	21
	결핵 및 한센	6	0	6	5	1	0	0
	지역자활센터	249	249	0	0	0	0	0
	사회복지관	468	369	99	90	9	0	0
	어린이집	37,371	4,324	33,047	1,343	1,860	159	29,685
2015년	Total	60,738	4,555	56,183	6,166	4,313	626	45,078
	노 인	8,752	694	8,058	2,275	1,053	16	4,714
	아 동	4,890	59	4,831	682	603	418	3,128
	장애인	3,327	560	2,767	1,490	896	0	381
	정신보건	403	20	383	166	78	6	133
	노숙인	146	35	111	34	53	2	22
	결핵 및 한센	6	0	6	4	2	0	0
	지역자활센터	245	245	0	0	0	0	0
	사회복지관	452	313	139	101	9	29	0
	어린이집	42,517	2,629	39,888	1,414	1,619	155	36,700

주: 각 년도 취합 후 시설 수 연평균 증가율 및 비중을 재산출, 노인시설의 경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5~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한편, 2015년 대비 2019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의 비중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 위탁 비중이 92.5%에서 88.1%로 감소한 반면에 법인위탁 비중은 반대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사회복지법인의 민간 위탁 비중은 10.2%였지만 2019년에는 10.7%로 0.5%p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인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위탁 비중이 3.7%에서 3.9%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위탁 비중도 2.5%(2015년)에서 2.8%(2019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기타법인 비중도 7.1%에서 2019년 8.3%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2.7%→3.1%)과 노인시설(1.7%→2.0%) 위탁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표 3-54〉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별 현황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비중	지자체 설치 시설	민간 설치 및 운영 시설				
				소계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단체 (법인 외)	개인
2019년	Total	100.0	11.9	88.1	10.7	8.3	1.1	68.0
	노 인	19.2	1.8	17.4	3.9	2.0	0.2	11.2
	아 동	9.1	0.6	8.5	1.1	1.2	0.5	5.6
	장애인	6.3	1.1	5.2	2.8	1.7	0.1	0.7
	정신보건	0.7	0.0	0.7	0.3	0.2	0.1	0.2
	노숙인	0.3	0.1	0.2	0.1	0.1	0.0	0.0
	결핵 및 한센	0.0	0.0	0.0	0.0	0.0	0.0	0.0
	지역자활센터	0.4	0.4	0.0	0.0	0.0	0.0	0.0
	사회복지관	0.8	0.6	0.2	0.2	0.0	0.0	0.0
	어린이집	63.2	7.3	55.9	2.3	3.1	0.3	50.2
2015년	Total	100.0	7.5	92.5	10.2	7.1	1.0	74.2
	노 인	14.4	1.1	13.3	3.7	1.7	0.0	7.8
	아 동	8.1	0.1	8.0	1.1	1.0	0.7	5.1
	장애인	5.5	0.9	4.6	2.5	1.5	0.0	0.6
	정신보건	0.7	0.0	0.6	0.3	0.1	0.0	0.2
	노숙인	0.2	0.1	0.2	0.1	0.1	0.0	0.0

구분		전체 비중	지자체 설치 시설	민간 설치 및 운영 시설				
				소계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단체 (법인 외)	개인
	결핵 및 한센	0.0	0.0	0.0	0.0	0.0	0.0	0.0
	지역자활센터	0.4	0.4	0.0	0.0	0.0	0.0	0.0
	사회복지관	0.7	0.5	0.2	0.2	0.0	0.0	0.0
	어린이집	70.0	4.3	65.7	2.3	2.7	0.3	60.4

주: 각 년도 취합 후 시설 수 연평균 증가율 및 비중을 재산출, 노인시설의 경우,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5~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넷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운영 주체가 중앙정부 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통해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보조금과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모법인 등으로부터 기부 및 전입되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기준, 약 15,340개로 파악된다. 그중 17개 광역시별로 수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약 3,329개로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서울시(2,135개, 13.9%), 전라남도(1,009개, 6.6%)의 순이었다. 반면에 수혜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전체의 0.4%(61개)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주도(255개, 1.7%)의 순이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시설이 전체의 41.7%(6,39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시설이 29.2% (4,478개), 3위가 장애인시설로 19.9%였다.

〈표 3-55〉 2020년 기준 정부 보조금 수혜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합계	결핵 한센인	노숙인 등	노인	다문화 가족	아동	여성	일반	장애인	저소득	정신 보건	청소년	한부모 가족
	비중												
총계	15,340	5	95	6,397	98	4,478	277	386	3,045	133	298	30	98
	100.0	0.0	0.6	41.7	0.6	29.2	1.8	2.5	19.9	0.9	1.9	0.2	0.6
강원도	678		6	315	11	169	6	14	134	14	4	2	3
	4.4	0.0	0.0	2.1	0.1	1.1	0.0	0.1	0.9	0.1	0.0	0.0	0.0
경기도	3329	1	12	1743	9	795	43	75	579	13	45	5	9
	21.7	0.0	0.1	11.4	0.1	5.2	0.3	0.5	3.8	0.1	0.3	0.0	0.1
경상 남도	958	1	3	345	9	307	33	13	219	14	6	4	4
	6.2	0.0	0.0	2.2	0.1	2.0	0.2	0.1	1.4	0.1	0.0	0.0	0.0
경상 북도	916	1	2	359	6	267	23	15	219	12	7		5
	6.0	0.0	0.0	2.3	0.0	1.7	0.1	0.1	1.4	0.1	0.0	0.0	0.0
광주 광역시	658		1	162	1	302	1	15	152	6	13		5
	4.3	0.0	0.0	1.1	0.0	2.0	0.0	0.1	1.0	0.0	0.1	0.0	0.0
대구 광역시	766	1	6	320	6	222	12	27	143	7	16		6
	5.0	0.0	0.0	2.1	0.0	1.4	0.1	0.2	0.9	0.0	0.1	0.0	0.0
대전 광역시	516		8	115	2	178	13	20	141	3	30		6
	3.4	0.0	0.1	0.7	0.0	1.2	0.1	0.1	0.9	0.0	0.2	0.0	0.0
부산 광역시	807		10	234	4	255	21	50	190	12	20	2	9
	5.3	0.0	0.1	1.5	0.0	1.7	0.1	0.3	1.2	0.1	0.1	0.0	0.1
서울 특별시	2,135		28	856	13	491	23	83	537	14	66		24
	13.9	0.0	0.2	5.6	0.1	3.2	0.1	0.5	3.5	0.1	0.4	0.0	0.2
세종 특별시	61			22	1	16	2	2	15		3		
	0.4	0.0	0.0	0.1	0.0	0.1	0.0	0.0	0.1	0.0	0.0	0.0	0.0
울산 광역시	275		1	85	5	68	10	6	87	4	1	5	3
	1.8	0.0	0.0	0.6	0.0	0.4	0.1	0.0	0.6	0.0	0.0	0.0	0.0
인천 광역시	844		5	445	7	199	17	14	129	5	13	1	9
	5.5	0.0	0.0	2.9	0.0	1.3	0.1	0.1	0.8	0.0	0.1	0.0	0.1
전라 남도	1,009	1	4	397	9	409	17	12	134	15	6	2	3
	6.6	0.0	0.0	2.6	0.1	2.7	0.1	0.1	0.9	0.1	0.0	0.0	0.0
전라 북도	761		2	311	5	316	16	9	78	1	19		4
	5.0	0.0	0.0	2.0	0.0	2.1	0.1	0.1	0.5	0.0	0.1	0.0	0.0
제주 자치도	255		3	90		78	3	7	65	2	6		1
	1.7	0.0	0.0	0.6	0.0	0.5	0.0	0.0	0.4	0.0	0.0	0.0	0.0
충청 남도	720			320	5	232	22	15	84	5	31	2	4
	4.7	0.0	0.0	2.1	0.0	1.5	0.1	0.1	0.5	0.0	0.2	0.0	0.0
충청 북도	652		4	278	5	174	15	9	139	6	12	7	3
	4.3	0.0	0.0	1.8	0.0	1.1	0.1	0.1	0.9	0.0	0.1	0.0	0.0

주: 자료의 보조금 및 후원금 이용내역 현황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재분석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21),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연 보조금은 총 5조 142억 원으로 시설당 약 3억 3천만으로 집계된다. 이중 경기도가 9,395억 원으로 1위였고, 다음으로 서울시(8,781억 원), 경상북도(3,179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시설당 보조금에서는 부산시가 평균 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세종시(4.3억 원)와 제주도(4.3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시설 유형에서는 장애인시설이 1조 6,5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시설(1조1,443억 원), 아동(8,216억 원)의 순이었다.

〈표 3-56〉 2020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보조금액 및 시설당 보조금액 수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총합계	결핵 한센인	노숙인 등	노인	다문화 가족	아동	여성	일반	장애인	저소득	정신 보건	청소년	한부모 가족
총계	50,142	73	988	11,443	1,389	8,216	676	5,759	16,520	2,891	1,703	77	408
	3.3	14.6	10.4	1.8	14.2	1.8	2.4	14.9	5.4	21.7	5.7	2.6	4.2
강원도	2,091	0	40	363	142	297	10	223	793	210	5	5	4
	3.1	·	6.6	1.2	12.9	1.8	1.6	15.9	5.9	15.0	1.4	2.4	1.4
경기도	9,395	7	91	2,473	172	1,425	97	985	3,578	294	222	18	34
	2.8	7.1	7.6	1.4	19.1	1.8	2.3	13.1	6.2	22.6	4.9	3.5	3.7
경상남도	2,864	14	36	582	109	531	75	144	973	272	106	5	17
	3.0	13.5	12.0	1.7	12.2	1.7	2.3	11.1	4.4	19.4	17.7	1.1	4.1
경상북도	3,179	24	33	508	149	500	40	215	1,325	248	114	0	23
	3.5	23.5	16.5	1.4	24.9	1.9	1.7	14.4	6.0	20.7	16.3	·	4.6
광주광역시	1,931	0	18	279	15	406	2	198	729	151	112	0	22
	2.9	·	17.7	1.7	14.6	1.3	1.9	13.2	4.8	25.1	8.6	·	4.5
대구광역시	2,646	7	25	705	112	433	36	323	700	193	78	0	34
	3.5	7.4	4.2	2.2	18.6	2.0	3.0	11.9	4.9	27.5	4.9	·	5.7
대전광역시	1,748	0	48	234	9	378	41	256	633	29	96	0	25
	3.4	·	6.0	2.0	4.5	2.1	3.1	12.8	4.5	9.8	3.2	·	4.1
부산광역시	3,803	0	88	885	48	495	62	884	878	350	75	1	38
	4.7	·	8.8	3.8	11.9	1.9	2.9	17.7	4.6	29.2	3.7	0.6	4.2

구분	총합계	결핵 한센인	노숙인 등	노인	다문화 가족	아동	여성	일반	장애인	저소득	정신 보건	청소년	한부모 가족
서울 특별시	8,781	0	367	2,119	136	1,055	100	1,593	2,733	386	185	0	107
	4.1	·	13.1	2.5	10.5	2.1	4.4	19.2	5.1	27.6	2.8	·	4.5
세종 특별시	265	0	0	38	22	33	2	38	106	0	27	0	0
	4.3	·		1.7	21.5	2.0	1.0	18.8	7.1	·	9.0	·	·
울산 광역시	1,016	0	3	245	92	126	21	49	373	62	19	16	9
	3.7	·	3.5	2.9	18.4	1.9	2.1	8.2	4.3	15.4	19.3	3.2	3.1
인천 광역시	2,316	0	42	758	147	425	41	153	475	180	54	4	36
	2.7	·	8.5	1.7	21.0	2.1	2.4	10.9	3.7	36.1	4.2	4.0	4.0
전라 남도	2,549	22	69	450	70	626	32	215	711	236	100	5	12
	2.5	21.7	17.2	1.1	7.8	1.5	1.9	18.0	5.3	15.7	16.7	2.7	3.9
전라 북도	1,951	0	23	592	62	527	32	149	420	18	110	0	18
	2.6	·	11.3	1.9	12.5	1.7	2.0	16.5	5.4	17.8	5.8	·	4.6
제주 자치도	1,088	0	34	237	0	161	10	93	433	70	47	0	3
	4.3	·	11.2	2.6		2.1	3.5	13.3	6.7	34.9	7.8	·	3.5
충청 남도	2,251	0	0	464	69	420	46	159	751	91	232	5	14
	3.1	·	·	1.5	13.7	1.8	2.1	10.6	8.9	18.2	7.5	2.7	3.6
충청 북도	2,270	0	71	512	37	379	29	83	909	101	120	17	12
	3.5	·	17.7	1.8	7.5	2.2	1.9	9.2	6.5	16.8	10.0	2.5	3.9

주: 자료의 보조금 및 후원금 이용내역 현황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재분석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21),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표 3-57〉 2020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총액 및 시설당 후원금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총합계	결핵 한센인	노숙인 등	노인	다문화 가족	아동	여성	일반	장애인	저소득	정신 보건	청소년	한부모 가족
총계	3,204	2	55	518	29	932	28	764	702	22	68	5	80
	0.21	0.50	0.58	0.08	0.30	0.21	0.10	1.98	0.23	0.16	0.23	0.16	0.82
강원도	119	0	1	14	4	37	0	33	23	1	0	0	6
	0.18	·	0.23	0.04	0.35	0.22	0.04	2.33	0.17	0.06	0.08	0.04	1.86
경기도	593	0	3	107	3	157	3	130	166	3	10	1	10
	0.18	0.25	0.24	0.06	0.35	0.20	0.08	1.73	0.29	0.21	0.23	0.21	1.09
경상 남도	177	1	2	25	2	63	3	27	41	5	3	0	5
	0.18	0.79	0.62	0.07	0.28	0.20	0.10	2.05	0.19	0.35	0.52	0.01	1.23

구분	총합계	결핵 한센인	노숙인 등	노인	다문화 가족	아동	여성	일반	장애인	저소득	정신 보건	청소년	한부모 가족
경상북도	216	0	3	38	4	62	1	48	54	1	2	0	3
	0.24	0.49	1.60	0.11	0.58	0.23	0.05	3.23	0.25	0.10	0.22	·	0.59
광주광역시	111	0	0	14	0	40	0	17	30	1	7	0	2
	0.17	·	0.41	0.09	0.25	0.13	0.01	1.12	0.20	0.09	0.53	·	0.45
대구광역시	189	1	3	24	2	42	1	90	18	0	5	0	4
	0.25	0.55	0.49	0.07	0.30	0.19	0.06	3.34	0.13	0.06	0.29	·	0.60
대전광역시	114	0	3	11	0	34	2	25	26	0	5	0	7
	0.22	·	0.43	0.10	0.02	0.19	0.18	1.26	0.18	0.10	0.16	·	1.21
부산광역시	259	0	6	30	1	60	2	101	48	2	4	0	5
	0.32	·	0.58	0.13	0.19	0.24	0.12	2.02	0.25	0.18	0.20	0.05	0.54
서울특별시	578	0	22	83	2	149	4	157	125	1	14	0	21
	0.27	·	0.79	0.10	0.19	0.30	0.17	1.89	0.23	0.06	0.21	·	0.89
세종특별시	16	0	0	2	2	5	1	3	3	0	0	0	0
	0.27	·	·	0.11	1.64	0.32	0.33	1.63	0.19	·	0.15	·	·
울산광역시	85	0	0	13	2	30	1	13	20	0	0	3	2
	0.31	·	0.16	0.15	0.34	0.43	0.13	2.21	0.23	0.11	0.47	0.56	0.65
인천광역시	121	0	5	19	1	50	1	17	18	0	2	0	7
	0.14	·	1.08	0.04	0.20	0.25	0.06	1.21	0.14	0.09	0.14	0.05	0.74
전라남도	202	0	2	46	1	63	1	38	39	6	2	0	4
	0.20	0.42	0.42	0.12	0.17	0.15	0.09	3.13	0.29	0.37	0.41	0.12	1.30
전라북도	120	0	1	34	0	53	1	16	11	0	2	0	1
	0.16	·	0.30	0.11	0.06	0.17	0.09	1.81	0.14	0.00	0.12	·	0.36
제주자치도	72	0	2	19	0	16	1	13	18	1	2	0	0
	0.28	·	0.61	0.21	·	0.21	0.26	1.84	0.28	0.34	0.37	·	0.28
충청남도	123	0	0	21	4	38	3	24	27	1	4	0	2
	0.17	·	·	0.06	0.71	0.16	0.13	1.58	0.32	0.12	0.14	0.12	0.56
충청북도	109	0	1	19	1	33	1	13	36	0	4	0	1
	0.17	·	0.31	0.07	0.20	0.19	0.05	1.40	0.26	0.03	0.33	0.02	0.42

주: 자료의 보조금 및 후원금 이용내역 현황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재분석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21),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또한 사회복지시설들의 기업 및 민간시설, 모법인의 법인전입금 등 후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총 3,204억 원으로 시설당 2천 백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593억 원으로 1위였고, 다음으로 서울시(578억 원), 부산시(259억 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시설당 평균 후원금액에서는 평균 보조금 액수가 가장 컸던 부산시가 평균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3천 1백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시설 유형에서는 아동시설이 93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 764억 원, 장애인 702억 원, 노인 518억 원의 순이었다. 그리고 시설당 평균 후원금에서는 일반시설이 1억 9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8천 2백만 원), 노숙인시설(5천 8백만 원) 등의 순이었다.

결국, 청년창업 지원방안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창업 시, 법인들의 정부 위탁시장 진입과 생존 가능성을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장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선 시장진입 가능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장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유형에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종사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운영 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10.7%에 불과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발견되는바 청년창업 지원방안으로서 비영리법인 창업 시, 시장진출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 위탁시장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부터 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등을 시설당 평균 3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이용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창업 시, 예상되는 낮은 매출액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감소 되는 장점이 있으며, 주 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시 후원금으로 손실보전이 가능해 생존 가능성이 일반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체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제5절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앞서 본 장에서는 청년고용 창출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표 3-50〉과 같이 기존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들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주목할 점은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 대비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할 국민의 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고 있고, 정부는 그 공익활동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직접 보상하기 어려운 데다가, 비영리법인의 공공재적 기능을 시장에 의존할 경우, 과소 공급의 우려가 존재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로 비영리법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음 〈표 3-58〉과 같이 현재 정부가 비영리법인과 창업 지원정책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세제지원 정책들을 크게 기업 활동의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나눈 후 앞 절에서 파악한 조세감면 정책들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정책들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들은 연구와 인력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지원들을 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기존 청년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 대비 수입 측면의 부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에서는 부재한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부 사업 부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수익금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과 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 및 설비 등에 대한 비용지출에서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부 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의 특성과 주 사업 진행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특성을 조세특례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세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리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제도를 살펴본 후, 조세제도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의 조세제도가 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얼마나 유리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창업 유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표 3-58〉 기존 창업 지원정책기업 대비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지원정책

구분	세부 항목	비영리법인	기존 창업지원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중심)
수입	주 사업	· 과세소득 범위 제한(법인세법 제2조 제1항) ·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특례(지방세법 제103조의 23 제6항)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03조의 3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기술이전 및 대여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부 사업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의무화(법인세법 제113조) · 수익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인세 62조) · 공익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법인세 62조) ·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기부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지출	자산, 설비 등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가액 불산입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5조) ·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구분	세부 항목	비영리법인	기존 창업지원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중심)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제55조의2 제6항) · 과세표준 등의 신고 특례(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 부동산 취득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연구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인력	· 중소 비영리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비영리 부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세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소득세법 제20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비영리 분야 지원(고용보험법 제20조) · 비영리법인·단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 특성화고 졸업자의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근로소득 증대 새엑공제 및 정규직 전환근로자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일자리 나누기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구매	·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우편요금 감액(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상생결제 지급액 세액공제조세 특례제한법 7조)
	기금 등 출연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보조금) 지원 · 기부금품의 비용 충당(기부금품법 제13조) ·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사용시, 고육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24조)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주: 관련 조세지원 법률과 정책들을 검토하여 저자 작성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2021). 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 (202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8577호 (2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고용보험법, 법률 제17859호 (2021). 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18175호 (20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우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시행에 따른 조세지원의 남발을 방지하고 조세감면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시작되었다(1966.1.1. 시행).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한 이유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 부여가 국고 손실을 유발함은 물론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제정을 통해 각종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조세감면 조항을 통합적으로 규제하여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130]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은 제정 당시, 적용기한이 없는 영구법이었지만, 그 후 1981년 말 개정 시 조세정책의 원활하고 신속한 운용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운용하는 한시법으로 전환하였고, 그 적용시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조세감면을 통제·관리하여 과세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그 개편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8년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의 전면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131] 첫 번째, 개별세법과 일반 법률의 조세감면 규정 및 중과세 조항을 이관하여 조세감면 및 중과제도의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두 번째,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원의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자체는 영구법으로 하되, 조세지원 조항별 일몰 기한을 도입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확보하

130) 국가기록원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설명을 참조함(http://www.archives.go.kr/)
131) 기획재정부(1998), 98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 일부 참조.

였다. 즉, 획일적으로 규정되었던 일몰 기한을 개별조항의 특성에 맞게 5년, 3년, 2년, 1년 등으로 설정한 것이다. 세 번째는, 신규로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또는 대상 등을 확대하거나 기존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감면 효과를 선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132]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133]와 조세지출[134], 그리고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형태의 조세감면 제도를 들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이처럼 다양한 조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조세를 통한 경제적 지원과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개별세법과의 관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민감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의 개별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둘째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의 정책 기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그 개정의 폭이 다른 세법에 비해 훨씬 크고 횟수도 잦다는 탄력적 세법의 특징을 가진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제·경영 환경의 변

132)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133)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134) 조세지출이란 조세특례 중에서 중과제도나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목적이 아닌 경우 등이 아닌 조세감면으로서,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조세 정책 지원도 그에 발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별세법상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일반 영리기업의 직접국세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와 간접국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범위는 대부분의 조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3-59〉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의 조세 특례

구분	관련 조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 ~ 제8조의4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 ~ 제19조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 ~ 제23조
제4절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 ~ 제29조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2 ~ 제30조의4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5 ~ 제47조의3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4 ~ 제57조
제7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 ~ 제71조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 ~ 제85조의10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 ~ 제91조의19
제10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 ~ 제100조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제10절의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4 ~ 제100조의26
제10절의 4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 ~ 제100조의31
제10절의 5 투자·상생협력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2 ~ 제100조의34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 제104조의32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2021).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의 조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의 조세특례, 제4장 삭제, 제5장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및 제7장 보칙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는 다시 정책적 목적을 중심으로 〈표 3-59〉와 같은 절로 구성된다. 이중 본 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청년창업 및 고용 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는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 제1절 중소기업과 제2절 연구 및 연구 인력, 그리고 제4절의 2 고용지원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으로는 제8절의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가 존재한다.

가.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특례

2014년 기준, 한국의 중소기업[135]은 전체기업의 99.9%를, 일자리의 87.9%를 담당하고 있다.[136]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능력, 투자 여력, 인력수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 경제환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

13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지만, 다만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때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은 비영리법인을 제외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36) 중소벤처기업부, 2018,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 p.11.

〈표 3-60〉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현황

특례 및 조문	특례 요건	특례 내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5조)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단,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조건이 부과	-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은 1%~2% 세액공제 함. 단, 위기 지역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10%(중견기업은 5%) 등을 적용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추가 감면함.	- 5년간 법인세 등의 50%를 감면. 단,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를 감면함 -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의 1/2을 기본감면율에 합산하여 추가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 감면대상 업종 영위는 중소기업, - 단, 장수 성실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상이고 1억 원 이하 소득요건과 성실사업자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5%~30%를 감면함 - 단, 장수 성실 중소기업은 1.1배 상향하며 감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 원으로 함.
상생 결제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에게 상생 결제 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어음결제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구매기업에게 지급기한에 따라 0.1%~0.2%를 세액공제 - 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함.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8조의3)	- 내국법인이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 해당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창업보육센터 등이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연구시험용 고정자산을 5년 이상 무상임대 하는 경우	- 자산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중소기업은 7%, 중견기업은 3%, 대기업은 1% 세액공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2021).

나.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표 3-61〉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현황

특례 및 조문	특례 요건	특례 내용
특성화고 졸업자의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제2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등 졸업생을 휴직하고 병역이행 후 1년 내 복직시킨 경우	- 복직자에게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 단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이 사유로 퇴직한 후 3년~15년 사이에 해당 기업 또는 동종업종에 고용된 경우 등	- 경력 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중소 기업에게 세액공제. 단,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새액공제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 (제29조의4)	- 내국인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전 3년 평균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직전 3년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를 세액공제
	- 내국인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직전년도 대비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를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 소비성서비스업 영위자를 제외한 내국인이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	- 증가 인원당 근로자의 종류, 기업규모 및 지역별로 400~1,200만 원 세액공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전환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을 세액공제. 단, 중견기업은 700만 원을 세액공제
일자리 나누기 세액공제 (제30조의3)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이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임금삭감액의 10% 및 임금보전액의 15%를 중소기업 등이 세액공제하고, 해당 근로자는 임금총액감소분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과 경력 단절여성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증가분은 50%를 세액공제
	- 영세기업이 최저임금액 상당액을 받는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2021).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표 3-61〉과 같이 영리기업의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청년실업, 명예퇴직 등 기존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력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표 3-6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특례 및 조문	특례요건	특례 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당기분 0~20% 세액공제, 증가분의 25%~50%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이연 (제10조의2)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출연금을 익금 불산입하여 과세이연
기술이전 및 대여 세액감면 (제12조)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특정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기술 이전소득의 50%를 세액감면하고,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액의 25%를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등 감면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생명공학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또는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25조 제1항 제1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고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2021).

세 번째로 연구 및 인력개발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특례가 지원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은 거시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시적으로는 고

용 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선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있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료,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본 고에서 창업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한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세법[137]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다.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지출에도 상당 부분 사용되는데, 이때 조세를 징수하여 지출하는 것과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것은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국가를 이를 막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137) 세법은 세금에 관한 모든 법을 말한다. 이때 세법은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에 한정하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총칙법이라고 하고 과세요건과 납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별세법이라고 한다.

〈표 3-6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 대상 조세절감 지원제도

특례 및 조문	특례 대상	특례 내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법인 등	-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을 합한 금액에 9~ 12% 세율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제74조)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병원, 장학재단, 의료법인 등 특정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하여 손금산입
기부장려금(제75조)	- 기부자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국세청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86조의 6)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 단 1억 원과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감면한도로 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2021).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례규정일 것이다. 기부장려금의 손금산입이 기부자에 한정되는 점에서,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비영리법인은 물론 영리법인 등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고, 과세특례의 내용도 한시 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정책효과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에 한정되어 정책의 장기적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는 특정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부 사업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50% 정도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익성이 큰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이보다 높은 100%의 한도액을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은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기 때문에 본 특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은 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되는 설정 비율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비금의 설정 및 환입이나 절차 등의 규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례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은 본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138] 즉,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다.[139] 이중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140]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

138) 법규법인 2009-443, 2009.12.31.

139)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해당하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치관리기구가 있다.

140)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표 3-64〉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구분	특례 내용
학교법인 등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141]
사회복지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진흥회[142]
국립병원 등	- 국립병원[143],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144], 문화예술단체[145], 국제행사조직위원회[146], 장학재단[147], 연금공단[148] 등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2021).

넷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는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따라서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조항(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14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142) 서면2팀-2202, 2006.10.31.
14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3호.
144)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4호·제5호.
145)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6호.
146)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7호.
147)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제8호.
148)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법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된다.

이외에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례조항과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우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가액 불산입 제도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49] 한편,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이다.[15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 이때 과세 가액 불산입이 적용되기 위한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51]

1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1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
1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2항.

〈표 3-65〉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정

구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제도
준비금 한도	금융소득 금액 100% 그 밖의 수익사업금액 50%(단,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80%)	금융소득 금액 100%, 그 밖의 수익사업 금액 100% 단,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금융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152]
결산 조정 원칙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1항).	법인세법과 동일
신고 조정 특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29조 2항).	법인세법과 동일
준비금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할 때,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29조 3항).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유형 및 무형자산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환입 및 사후 관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9조 5항).	법인세법과 동일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2021). 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2021).

3. 조세제도적 측면에서 비영리법인 창업의 당위성

지금까지 조세특례제도의 개관을 시작으로 공익법인의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중 「조세특례제한법」은 재단 및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게 부 사업인 영리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통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법인 대비 조세감면 측면에서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과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 제한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최소 50% 이상의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감면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한도를 100% 인정해 주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전혀 없다.

둘째,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제외된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을 거치는 경우,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청산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즉,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재산의 가치상승분과 미과세 부분을 포착하여 청산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로써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에 한해 부담하는 법인세이다. 그에 반해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 후 청산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 후의 잔여재산을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

15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게 인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비영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153]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는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의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가 모두 적용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에서도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내국법인과 차별이 없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창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제도적용에서 영리내국법인과 동일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로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외가 존재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 전자를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하며, 후자를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영리내국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거나 신탁을

15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가 원칙이다.

결국, 비영리법인은 그 특성상 설립단계에서 그 목적이 공익사업 등에 한정되지만, 운영 중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런 이유에서 비영리법인은 공익적 요소와 수익적 요소를 모두 갖출 수 있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서 비영리법인은 조세제도 측면에서 영리법인 대비 큰 이점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제4장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제1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 평가 조사
제2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제4장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

제1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 평가 조사

1. 조사개관

본 고에서는 앞서 청년실업률 제고 방안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중 청년창업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원정책 대상의 대안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위해 법적 지원 근거와 국내외 주요국의 지원정책,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과 현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및 기존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들과의 경쟁력 등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향후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서 비영리법인을 고려 시, 영리법인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부 위탁시장 진출 현황과 조세감면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만약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도입된다면, 청년 비영리법인의 생존 가능성과 고용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정책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관한 선택적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다. 즉, 정부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정책 도입 시, 기업의 성장과 고용증가 및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리법인 대비 어떤 지원정책에 더욱 집중지원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업형태별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가지 기업형태, 즉 청년 벤처기업, 청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각각 100개씩, 총 400개 기업의 설립자, 경영 담당이사, 또는 정부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창업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의 협조로 경영자 연령이 2~40대인 청년 벤처기업 500개를 추출 받아 연락처 확인 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 청년 사회적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2~40대 경영자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300개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3) 협동조합은 기재부 협동조합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과 조합원 200인 이상 협동조합 1,800개에 대한 경영공시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7년부터 19년까지 창업 지원정책이 추진 중이나 그 개수가 73개에 불과해 창업 지원정책 대상기업만을 조사하기에는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이 부재하여 대상 선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 비영리법인 중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들의 추출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300여 개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결국,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형태 중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인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지만 정부로부터 창업 지원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정책 중 어떤 세부 지원정책이 기업형태에 따라 기업규모 성장과 고용증대를 가져오는지를 파악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였다. 먼저 세부 정책 유형으로는 앞서 2·3장을 통해 파악되었던 세부 창업지원 정책인 창업교육과 금융, 그리고 사무실과 설비 등을 지원하는 창업 인프라 정책 3가지를 포함하였고, 운영 측면에서는 조세 감면제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정부 위탁사업 참여를 포함하였다.

[그림 4-1]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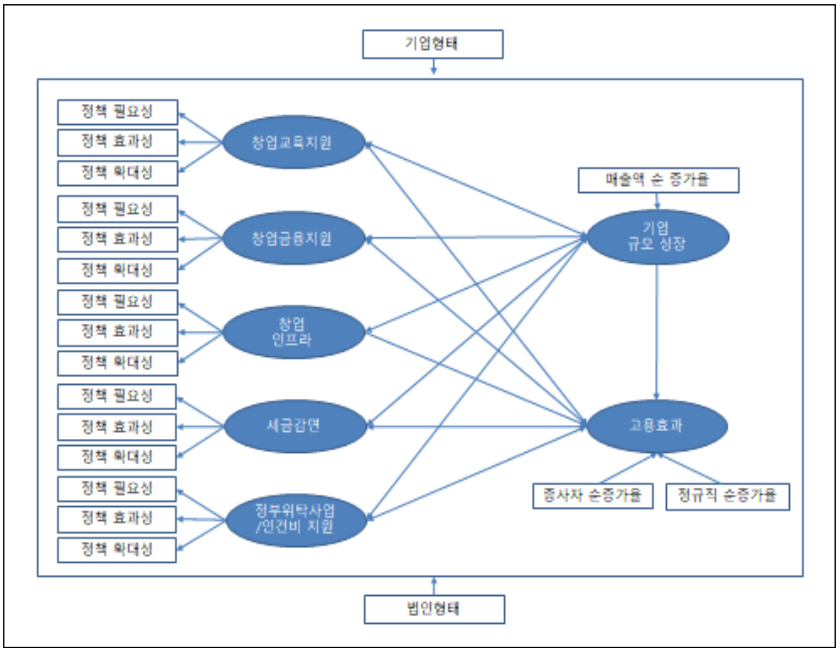

특히, 본 연구에서는 5개 세부 청년창업 지원정책 유형이 기업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규모 성장과 고용효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생존율은 과거 특정 시점에 설립된 기업이 이후 특정 시점에서도 운영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개념이다. 따라서 기업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존한 기업과 소멸한 기업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멸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고용효과에 미치는 직접 변수로써 기업규모 성장을 설정한 것은 종사자 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기업의 매출액과 자본금 등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사자 고용의 지속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이외에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조절변수로써 기업형태와 법인 형태를 포함하였다. 기업형태는 본연구의 목적인 기업형태에 따라 기업규모 성장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세부 지원정책 유형이 차별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인 형태는 영리법인 대비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 지원정책의 차별성과 현 창업지원 정책대상 여부에 따라 정책지원 요인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또 다른 조절변수로는 각 정책의 현금성 지원방식의 여부였다. 창업교육과 창업 인프라 등 세부지원 내용이 모두 현금성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세부 정책들이 기업형태별로 차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창업교육과 창업인프라 정책들의 각 사업내용을 보고 현금성 지급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절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세 번째로, 설문 내용은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델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법인 유형 및 종사자 수, 그리고 자본금 등 현재 기업 현황과 정부가 추진 중인 유형별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부문, 그리고 응답자 특성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 기업 현황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외생변수에 관한 질문이 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매개변수인 기업규모 성장은 매출액과 자본금에 대한 상승률을 이용하였는데 설립연도 및 최근 회계연도인 20년 말 기준 금액을 응답받아 연평균 순 증가율을 구한 후 순 증

가율 범위를 고려해 5점 척도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고용효과 역시 전체 종사자 수와 현재 정규직 비율에 대한 응답을 받아 기업규모 성장과 같이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2) 창업 지원정책 평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창업 지원정책의 직접 수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세부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 그리고 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미혜택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편기(BIOS)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표 4-1〉 주요 설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PART 1. 기업 현황	- 기업형태별 설립 시기 및 최고경영자 연령 등 일반사항 - 기업형태별 성격(기업형태, 법인여부, 영리법인여부, 영리법인 성격) - 기업형태별 주요 사업업종과 매출액 증가율, 매출 주력 시장 - 기업형태별 종사자 수 변화 및 정규직 비율 변화 - 기업형태별 자본금 변화율 및 자본금 조달 방법
PART 2.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성	- 창업기업 교육지원, 금융지원, 인프라지원, 정부위탁시장 참여, 세금 감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확대가능성 평가 - 기업형태별 창업기업 교육지원, 금융지원, 인프라지원, 정부위탁시장 참여, 세금 감면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여부 및 지원 주체 - 창업기업 교육지원, 금융지원, 인프라지원, 정부위탁시장 참여, 세금 감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대적 필요성
응답자 특성	- 기업명, 기업 유형, 응답자 지위, 지역, 연락처 등 종교, 가구 월 총수입 등

네 번째로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응답자가 시스템에 접촉 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는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주간 실시되었다. 연구 초기 설문조사 방법을 대면조사로 설계하였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조사로 대체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우선, 조사에 참여한 4개 기업형태의 경영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2~30대가 각각 80.0%, 84.0%를 차지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4%, 비영리법인은 1%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앞서 조사개관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경영자들은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수혜자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경영자들은 창업 지원사업의 비수혜자이기 때문이었다

〈표 4-2〉 조직 유형별 최고경영자의 연령 분포

(단위: 개, %)

구분		시설 수	최고 경영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400	2.8	39.5	18.5	25.8	13.5
벤처기업	소계	100	6.0	74.0	19.0	0.0	1.0
	3년 미만	38	2.6	92.1	2.6	0.0	2.6
	3년~5년	46	8.7	69.6	21.7	0.0	0.0
	5년~10년	16	6.3	43.8	50.0	0.0	0.0
사회적기업	소계	100	5.0	79.0	16.0	0.0	0.0
	3년 미만	64	6.3	76.6	17.2	0.0	0.0
	3년~5년	32	3.1	81.3	15.6	0.0	0.0
	5년~10년	4	0.0	100.0	0.0	0.0	0.0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100	0.0	4.0	25.0	50.0	21.0
	3년 미만	44	0.0	4.5	31.8	47.7	15.9
	3년~5년	29	0.0	0.0	13.8	55.2	31.0
	5년~10년	22	0.0	9.1	27.3	40.9	22.7
	10년 이상	5	0.0	0.0	20.0	80.0	0.0
사회복지법인	소계	100	0.0	1.0	14.0	53.0	32.0
	3년 미만	2	0.0	0.0	50.0	0.0	50.0
	3년~5년	4	0.0	0.0	0.0	25.0	75.0
	5년~10년	21	0.0	0.0	19.0	47.6	33.3
	10년 이상	73	0.0	1.4	12.3	57.5	2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두 번째로 조사에 참여한 4개 기업형태 경영자의 성별과 학력을 살펴보면 영리기업인 벤처기업의 경우, 남성 경영자가 82.0%였고, 대학원 비중이 17.0%였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기업의 남성 경영자 비율은 67.0%, 대학원 졸 비중은 34.0%였고, 사회적협동조합의 남성 경영자 비율은 63.0%, 대학원 졸 비중은 55.0%에 달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남성 경영자 비율은 68.0%, 대학원 졸 비중은 39.0%였다. 결국 벤처기업의 경우, 대졸 중심의 남성 경영자가 중심인 반면, 기타 기업형태는 대학원 졸 여성 경영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 조직 유형별 최고경영자의 성별·학력 분포

(단위: 개, %)

구분		시설 수	최고경영자 성별		최고경영자 학력		
			남	여	고졸 이하	(초) 대졸	대학원 졸 이상
전체		400	70.0	30.0	3.3	60.5	36.3
벤처 기업	소계	100	82.0	18.0	3.0	80.0	17.0
	3년 미만	38	84.2	15.8	5.3	78.9	15.8
	3년~5년	46	80.4	19.6	0.0	82.6	17.4
	5년~10년	16	81.3	18.8	6.3	75.0	18.8
사회적 기업	소계	100	67.0	33.0	5.0	61.0	34.0
	3년 미만	64	67.2	32.8	6.3	56.3	37.5
	3년~5년	32	65.6	34.4	3.1	71.9	25.0
	5년~10년	4	75.0	25.0	0.0	50.0	50.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63.0	37.0	5.0	40.0	55.0
	3년 미만	44	65.9	34.1	6.8	31.8	61.4
	3년~5년	29	55.2	44.8	3.4	55.2	41.4
	5년~10년	22	63.6	36.4	4.5	40.9	54.5
	10년 이상	5	80.0	20.0	0.0	20.0	80.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68.0	32.0	0.0	61.0	39.0
	3년 미만	2	50.0	50.0	0.0	100.0	0.0
	3년~5년	4	50.0	50.0	0.0	25.0	75.0
	5년~10년	21	66.7	33.3	0.0	52.4	47.6
	10년 이상	73	69.9	30.1	0.0	64.4	3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나. 기업 현황

한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법인 유형과 성격, 그리고 영리법인의 세부 성격을 살펴보면 총 400개 기업 중 법인 비중은 98.0%였고, 그중 51.8%가 비영리법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영리법인 중에는 주식회사 비중이 94.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벤처기업(98.9%)과 사회적기업(90.6%)에서 비중이 높았다. 한편 기업형태에서 비법인으로 파악된 기업은 벤처기업이 약 7.0%, 사회적기업이 1.0%였다.

〈표 4-4〉 조직 유형별 법인 유형·법인 성격·영리법인의 성격

(단위: 개, %)

구분		법인 유형			법인 성격[1]			영리법인 성격[2]			
		시설수	법인	비법인	시설수	영리	비영리	시설수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타
전체		400	98.0	2.0	392	48.2	51.8	189	94.7	0.5	4.8
벤처기업	소계	100	93.0	7.0	93	100.0	0.0	93	98.9	1.1	0.0
	3년 미만	38	92.1	7.9	35	100.0	0.0	35	100.0	0.0	0.0
	3년~5년	46	93.5	6.5	43	100.0	0.0	43	97.7	2.3	0.0
	5년~10년	16	93.8	6.3	15	100.0	0.0	15	100.0	0.0	0.0
사회적기업	소계	100	99.0	1.0	99	97.0	3.0	96	90.6	0.0	9.4
	3년 미만	64	98.4	1.6	63	95.2	4.8	60	90.0	0.0	10.0
	3년~5년	32	100.0	0.0	32	100.0	0.0	32	93.8	0.0	6.3
	5년~10년	4	100.0	0.0	4	100.0	0.0	4	75.0	0.0	25.0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100	100.0	0.0	100	0.0	100.0	0	0.0	0.0	0.0
	3년 미만	44	100.0	0.0	44	0.0	100.0	0			
	3년~5년	29	100.0	0.0	29	0.0	100.0	0			
	5년~10년	22	100.0	0.0	22	0.0	100.0	0			
	10년 이상	5	100.0	0.0	5	0.0	100.0	0			
사회복지법인	소계	100	100.0	0.0	100	0.0	100.0	0	0.0	0.0	0.0
	3년 미만	2	100.0	0.0	2	0.0	100.0	0			
	3년~5년	4	100.0	0.0	4	0.0	100.0	0			
	5년~10년	21	100.0	0.0	21	0.0	100.0	0			
	10년 이상	73	100.0	0.0	73	0.0	100.0	0			

주1: '법인 유형' 문항에 '법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만 '법인 성격'을 질문.
주2: '법인 성격' 문항에 '영리법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만 '영리법인 성격'을 질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두 번째로 응답 기업의 주요 업종에 대해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경우 제조업이 37.0%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기업도 제조업이 28.0%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서비스업이 31.0%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96.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5〉 조직 유형별 주요 사업 업종

(단위: 개, %)

구분		시설 수	주요 사업업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 통신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전체		400	18.0	8.3	9.5	7.8	1.8	12.3	31.8	9.3	0.3	0.3	1.0
벤처 기업	소계	100	37.0	9.0	20.0	23.0	1.0	3.0	0.0	6.0	0.0	0.0	1.0
	3년 미만	38	39.5	13.2	18.4	21.1	0.0	2.6	0.0	2.6	0.0	0.0	2.6
	3년~5년	46	34.8	6.5	26.1	23.9	2.2	2.2	0.0	4.3	0.0	0.0	0.0
	5년~10년	16	37.5	6.3	6.3	25.0	0.0	6.3	0.0	18.8	0.0	0.0	0.0
사회적 기업	소계	100	28.0	9.0	14.0	7.0	1.0	15.0	1.0	22.0	1.0	1.0	1.0
	3년 미만	64	28.1	10.9	12.5	4.7	0.0	15.6	0.0	23.4	1.6	1.6	1.6
	3년~5년	32	28.1	6.3	15.6	9.4	3.1	15.6	3.1	18.8	0.0	0.0	0.0
	5년~10년	4	25.0	0.0	25.0	25.0	0.0	0.0	0.0	25.0	0.0	0.0	0.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7.0	15.0	4.0	1.0	4.0	31.0	30.0	6.0	0.0	0.0	2.0
	3년 미만	44	11.4	15.9	4.5	0.0	4.5	29.5	25.0	4.5	0.0	0.0	4.5
	3년~5년	29	6.9	10.3	6.9	3.4	6.9	20.7	31.0	13.8	0.0	0.0	0.0
	5년~10년	22	0.0	22.7	0.0	0.0	0.0	50.0	27.3	0.0	0.0	0.0	0.0
	10년 이상	5	0.0	0.0	0.0	0.0	0.0	20.0	80.0	0.0	0.0	0.0	0.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0.0	0.0	0.0	0.0	1.0	0.0	96.0	3.0	0.0	0.0	0.0
	3년 미만	2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3년~5년	4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5년~10년	21	0.0	0.0	0.0	0.0	0.0	0.0	90.5	9.5	0.0	0.0	0.0
	10년 이상	73	0.0	0.0	0.0	0.0	1.4	0.0	97.3	1.4	0.0	0.0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세 번째로 응답 기업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2020년 매출액의 경우, 벤처기업은, 평균 11억 814십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10억 684십만 원), 비영리법인(9억 826십만 원), 사회적기업(3억 880십만 원)의 순이었다. 그리고 설립연도 대비 기업형태별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승률에서는 벤처기업이 739%, 사회적기업은 평균 980%, 사회적협동조합은 323%, 사회복지법인은 19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벤처기업은 민간 기업시장(67.0%)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 소비자시장(67.0%, 55.0%)을, 비영리법인은 정부위탁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었으며, 주력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설립연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4-6〉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매출액 비교

(단위: 개, 억 원, %)

구분		시설 수	설립연도 매출액	2020년 매출액	증감률
전체		400	2.571	9.044	352%
벤처 기업	소계	100	1.599	11.814	739%
	3년 미만	38	1.682	9.275	551%
	3년~5년	46	1.441	13.083	908%
	5년~10년	16	1.853	14.198	766%
사회적 기업	소계	100	0.396	3.880	980%
	3년 미만	64	0.415	1.664	401%
	3년~5년	32	0.380	8.547	2,249%
	5년~10년	4	0.230	2.000	87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3.298	10.654	323%
	3년 미만	44	4.410	16.623	377%
	3년~5년	29	3.484	5.713	164%
	5년~10년	22	1.086	5.092	469%
	10년 이상	5	2.160	11.252	521%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4.990	9.826	197%
	3년 미만	2	5.750	5.200	90%
	3년~5년	4	7.005	8.715	124%
	5년~10년	21	5.774	9.264	160%
	10년 이상	73	4.634	10.176	22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표 4-7〉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매출 주력 시장 비교

(단위: 개, %)

구분		시설 수	민간 소비자 시장	민간 기업 시장	정부 위탁 시장	해외 시장	시민 및 기업 기부금	기타
(1) 설립연도의 매출 주력 시장								
전체		400	44.5	23.8	30.8	0.3	2.3	1.8
벤처 기업	소계	100	31.0	67.0	1.0	0.0	0.0	1.0
	3년 미만	38	34.2	60.5	2.6	0.0	0.0	2.6
	3년~5년	46	30.4	69.6	0.0	0.0	0.0	0.0
	5년~10년	16	25.0	75.0	0.0	0.0	0.0	0.0
사회적 기업	소계	100	67.0	24.0	12.0	0.0	1.0	1.0
	3년 미만	64	56.3	31.3	15.6	0.0	1.6	1.6
	3년~5년	32	87.5	9.4	6.3	0.0	0.0	0.0
	5년~10년	4	75.0	25.0	0.0	0.0	0.0	0.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55.0	3.0	35.0	0.0	3.0	4.0
	3년 미만	44	52.3	4.5	36.4	0.0	4.5	2.3
	3년~5년	29	55.2	3.4	34.5	0.0	0.0	6.9
	5년~10년	22	54.5	0.0	36.4	0.0	4.5	4.5
	10년 이상	5	80.0	0.0	20.0	0.0	0.0	0.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25.0	1.0	75.0	1.0	5.0	1.0
	3년 미만	2	100.0	0.0	50.0	0.0	50.0	0.0
	3년~5년	4	25.0	0.0	100.0	0.0	0.0	0.0
	5년~10년	21	33.3	4.8	66.7	0.0	4.8	4.8
	10년 이상	73	20.5	0.0	76.7	1.4	4.1	0.0

구분		시설 수	민간 소비자 시장	민간 기업 시장	정부 위탁 시장	해외 시장	시민 및 기업 기부금	기타
(2) 2020년의 매출 주력 시장								
전체		400	44.3	24.0	31.0	0.0	2.3	1.8
벤처 기업	소계	100	30.0	68.0	2.0	0.0	0.0	1.0
	3년 미만	38	34.2	60.5	2.6	0.0	0.0	2.6
	3년~5년	46	28.3	71.7	2.2	0.0	0.0	0.0
	5년~10년	16	25.0	75.0	0.0	0.0	0.0	0.0
사회적 기업	소계	100	68.0	23.0	11.0	0.0	1.0	1.0
	3년 미만	64	56.3	31.3	15.6	0.0	1.6	1.6
	3년~5년	32	90.6	6.3	3.1	0.0	0.0	0.0
	5년~10년	4	75.0	25.0	0.0	0.0	0.0	0.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56.0	3.0	34.0	0.0	3.0	4.0
	3년 미만	44	54.5	4.5	34.1	0.0	4.5	2.3
	3년~5년	29	55.2	3.4	34.5	0.0	0.0	6.9
	5년~10년	22	54.5	0.0	36.4	0.0	4.5	4.5
	10년 이상	5	80.0	0.0	20.0	0.0	0.0	0.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23.0	2.0	77.0	0.0	5.0	1.0
	3년 미만	2	100.0	0.0	50.0	0.0	50.0	0.0
	3년~5년	4	25.0	0.0	100.0	0.0	0.0	0.0
	5년~10년	21	33.3	4.8	66.7	0.0	4.8	4.8
	10년 이상	73	17.8	1.4	79.5	0.0	4.1	0.0

주: 각 매출 주력 시장의 중복 응답을 포함한 비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한편, 자본금에서는 2020년 기준, 비영리법인이 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벤처기업이 각각 2.11억 원으로 2위였다. 그러나 설립연도 대비 2020년 자본금 증감률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2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적기업(274%), 벤처기업(207%), 사회복지법인(153%)의 순이었다. 그리고 설립 기간별 자본금 증감률에서는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3개 유형은 설립한 지 5년까지 자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3년까지 증가하다가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인 조합원 모집이 설립 초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4-8〉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자본금 비교

(단위: 개, 억 원, %)

구분		시설 수	설립연도 자본금	2020년 자본금	증감률
전체		400	1.39	2.62	188
벤처기업	소계	100	1.02	2.11	207
	3년 미만	38	1.44	2.88	200
	3년~5년	46	0.72	1.74	242
	5년~10년	16	0.91	1.33	146
사회적기업	소계	100	0.35	0.96	274
	3년 미만	64	0.44	0.94	214
	3년~5년	32	0.18	1.02	567
	5년~10년	4	0.38	0.63	166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100	0.71	2.11	297
	3년 미만	44	0.60	3.34	557
	3년~5년	29	0.62	0.79	127
	5년~10년	22	0.80	0.88	110
	10년 이상	5	1.87	4.28	229
사회복지법인	소계	100	3.46	5.30	153
	3년 미만	2	4.50	4.25	94
	3년~5년	4	2.50	2.75	110
	5년~10년	21	6.38	5.92	93
	10년 이상	73	2.65	5.28	1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또한 자본금 마련 방법에서는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 대상기업들의 경우, 설립자 개인 자금투자(47.0%, 66.0%)와

정부 금융지원(42.0%, 28.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타방법이 76.0%였는데 그 주된 방안은 조합원을 통한 출자금 모집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설립자 개인 자금투자(21.0%), 기타(55.0%), 모기업 지원 투자(14.0%) 등 자본금 마련 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조직 유형별 자본금 마련 방법

(단위: 개, %)

구분		시설 수	자본금 마련 방법					
			설립자 개인 자금 투자	투자가 모집 투자	개인 금융 대출	정부 금융 지원	모기업 지원 투자	기타
전체		400	38.3	3.8	3.5	18.0	3.8	32.8
벤처 기업	소계	100	47.0	5.0	6.0	42.0	0.0	0.0
	3년 미만	38	47.4	2.6	5.3	44.7	0.0	0.0
	3년~5년	46	54.3	8.7	4.3	32.6	0.0	0.0
	5년~10년	16	25.0	0.0	12.5	62.5	0.0	0.0
	10년 이상	0						
사회적 기업	소계	100	66.0	0.0	5.0	28.0	1.0	0.0
	3년 미만	64	53.1	0.0	7.8	37.5	1.6	0.0
	3년~5년	32	93.8	0.0	0.0	6.3	0.0	0.0
	5년~10년	4	50.0	0.0	0.0	50.0	0.0	0.0
	10년 이상	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19.0	3.0	0.0	2.0	0.0	76.0
	3년 미만	44	15.9	6.8	0.0	4.5	0.0	72.7
	3년~5년	29	13.8	0.0	0.0	0.0	0.0	86.2
	5년~10년	22	31.8	0.0	0.0	0.0	0.0	68.2
	10년 이상	5	20.0	0.0	0.0	0.0	0.0	80.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21.0	7.0	3.0	0.0	14.0	55.0
	3년 미만	2	50.0	0.0	0.0	0.0	0.0	50.0
	3년~5년	4	0.0	25.0	0.0	0.0	25.0	50.0
	5년~10년	21	23.8	9.5	9.5	0.0	23.8	33.3
	10년 이상	73	20.5	5.5	1.4	0.0	11.0	6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네 번째로 조사기업의 2020년 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벤처기업 8.4명, 사회적협동조합 8.7명, 사회적기업 3.8명의 순이었다. 반면에 설립연도 대비 2020년 기준, 종사자 증감률에서는 벤처기업이 400%로(2.1명 → 8.4명)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적기업(317%), 사회적협동조합(207%), 사회복지법인(171%)의 순이었다. 이와 결과를 기반으로 유추해 볼 때,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종사자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일정 수의 종사자 모집 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10〉 조직 유형별 설립연도와 2020년의 평균 종사 정규직 비율

(단위: 개, 명, %)

구분		시설 수	설립연도 종사자 수	2020년 종사자 수	증감률
전체		400	4.9	10.4	212
벤처기업	소계	100	2.1	8.4	400
	3년 미만	38	2.1	7.4	352
	3년~5년	46	2.3	9.2	400
	5년~10년	16	1.4	8.4	600
사회적기업	소계	100	1.2	3.8	317
	3년 미만	64	1.3	3.0	231
	3년~5년	32	1.1	5.3	482
	5년~10년	4	0.8	3.8	475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100	4.2	8.7	207
	3년 미만	44	3.4	5.4	159
	3년~5년	29	3.9	5.4	138
	5년~10년	22	4.9	15.3	312
	10년 이상	5	10.0	27.4	274
사회복지법인	소계	100	12.2	20.9	171
	3년 미만	2	11.5	14.5	126
	3년~5년	4	8.5	10.0	118
	5년~10년	21	13.6	22.3	164
	10년 이상	73	12.0	21.0	1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다. 기업형태별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 이용 현황

우선, 정부로부터 창업 교육을 지원받은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중 51.5%였으며, 세부기업 유형에서는 사회적기업이 8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벤처기업(80.0%), 사회적협동조합(38.0%)의 순이었다. 반면에 사회복지법인 중에는 지원받은 법인이 전무하였다. 그리고 지원 주체에서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교육받은 비중이 각각 73.8%, 73.9%로 많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자체 창업센터 이용률이 50.0%로 높았다.

〈표 4-11〉 조직 유형별 창업교육 참여 여부 및 지원 주체

(단위: 개, %)

구분		참여 여부			지원 주체[1]			
		시설 수	참여 경험 있음	참여 경험 없음	시설 수	중앙부처 산하기관	대학창업 보육센터	지자체 창업보육 센터
전체		400	51.5	48.5	206	69.4	11.2	34.5
벤처 기업	소계	100	80.0	20.0	80	73.8	12.5	31.3
	3년 미만	38	73.7	26.3	28	78.6	10.7	39.3
	3년~5년	46	82.6	17.4	38	76.3	13.2	26.3
	5년~10년	16	87.5	12.5	14	57.1	14.3	28.6
사회적 기업	소계	100	88.0	12.0	88	73.9	14.8	30.7
	3년 미만	64	84.4	15.6	54	64.8	18.5	33.3
	3년~5년	32	96.9	3.1	31	93.5	6.5	25.8
	5년~10년	4	75.0	25.0	3	33.3	33.3	33.3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38.0	62.0	38	50.0	0.0	50.0
	3년 미만	44	38.6	61.4	17	70.6	0.0	29.4
	3년~5년	29	44.8	55.2	13	15.4	0.0	84.6
	5년~10년	22	31.8	68.2	7	57.1	0.0	42.9
	10년 이상	5	20.0	80.0	1	100.0	0.0	0.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0.0	100.0	0			
	3년 미만	2	0.0	100.0	0			
	3년~5년	4	0.0	100.0	0			
	5년~10년	21	0.0	100.0	0			
	10년 이상	73	0.0	100.0	0			

주1: 중복 응답이 포함되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두 번째로, 정부의 창업금융지원 여부에서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3.0%에 불과했다. 세부기업 유형에서는 벤처기업이 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회적기업(49.0%), 사회복지법인(11.0%), 사회적협동조합(8.0%)의 순이었다. 지원기관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우, 시중은행 융자가 65.6%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기업(55.1%)과 사회적협동조합(50.0%)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창업펀드 이용이 많았다.

〈표 4-12〉 조직 유형별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지원주체

(단위: 개, %)

구분		이용 여부			지원 기관			
		시설 수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시설 수	중앙부처 산하기관 창업 펀드	시중 은행 융자	기타
전체		400	33.0	67.0	132	39.4	54.5	6.1
벤처 기업	소계	100	64.0	36.0	64	32.8	65.6	1.6
	3년 미만	38	60.5	39.5	23	34.8	65.2	0.0
	3년~5년	46	67.4	32.6	31	29.0	67.7	3.2
	5년~10년	16	62.5	37.5	10	40.0	60.0	0.0
사회적 기업	소계	100	49.0	51.0	49	55.1	38.8	6.1
	3년 미만	64	59.4	40.6	38	47.4	47.4	5.3
	3년~5년	32	25.0	75.0	8	87.5	12.5	0.0
	5년~10년	4	75.0	25.0	3	66.7	0.0	33.3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8.0	92.0	8	50.0	25.0	25.0
	3년 미만	44	9.1	90.9	4	50.0	25.0	25.0
	3년~5년	29	6.9	93.1	2	50.0	0.0	50.0
	5년~10년	22	9.1	90.9	2	50.0	50.0	0.0
	10년 이상	5	0.0	100.0	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11.0	89.0	11	0.0	81.8	18.2
	3년 미만	2	50.0	50.0	1	0.0	100.0	0.0
	3년~5년	4	0.0	100.0	0			
	5년~10년	21	23.8	76.2	5	0.0	80.0	20.0
	10년 이상	73	6.8	93.2	5	0.0	80.0	2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세 번째로 시설이나 사무실 지원 등 정부의 창업 인프라 지원정책 이용 여부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중 15.5%에 불과하였다. 세부기업 유형에서는 사회적기업이 3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12.0%), 벤처기업(10.0%), 사회복지법인(7.0%)의 순이었다. 그리고 지원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사회복지법인 모두 중앙부처 산하기관 이용 비율이 각각 72.7%, 60.0%, 7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조직 유형별 창업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지원주체

(단위: 개, %)

구분		이용 여부			지원 기관			
		시설 수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시설 수	중앙부처 산하기관	대학 창업보육 센터	지자체 창업보육 센터
전체		400	15.5	84.5	132	61.3	14.5	24.2
벤처 기업	소계	100	10.0	90.0	10	60.0	20.0	20.0
	3년 미만	38	15.8	84.2	23	66.7	0.0	33.3
	3년~5년	46	6.5	93.5	31	33.3	66.7	0.0
	5년~10년	16	6.3	93.8	10	100.0	0.0	0.0
사회적 기업	소계	100	33.0	67.0	33	72.7	18.2	9.1
	3년 미만	64	37.5	62.5	38	70.8	16.7	12.5
	3년~5년	32	21.9	78.1	8	85.7	14.3	0.0
	5년~10년	4	50.0	50.0	3	50.0	50.0	0.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12.0	88.0	12	25.0	0.0	75.0
	3년 미만	44	15.9	84.1	4	28.6	0.0	71.4
	3년~5년	29	10.3	89.7	2	33.3	0.0	66.7
	5년~10년	22	9.1	90.9	2	0.0	0.0	100.0
	10년 이상	5	0.0	100.0	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7.0	93.0	7	71.4	14.3	14.3
	3년 미만	2	50.0	50.0	1	100.0	0.0	0.0
	3년~5년	4	0.0	100.0	0			
	5년~10년	21	4.8	95.2	5	0.0	100.0	0.0
	10년 이상	73	6.8	93.2	5	80.0	0.0	2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네 번째로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정책 이용 여부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기업 유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100.0%였고, 다음으로 사회적기업(61.0%), 벤처기업(44.0%), 사회적협동조합(29.0%)의 순이었다. 특히,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정책의 이용은 설립 기간이 3~5년인 기업들이 3년 미만 기업들보다 약간 적었지만, 설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표 4-14〉 조직 유형별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개, %)

구분		이용 여부		
		시설 수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전체		400	58.5	41.5
벤처기업	소계	100	44.0	56.0
	3년 미만	38	42.1	57.9
	3년~5년	46	41.3	58.7
	5년~10년	16	56.3	43.8
사회적기업	소계	100	61.0	39.0
	3년 미만	64	67.2	32.8
	3년~5년	32	43.8	56.3
	5년~10년	4	100.0	0.0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100	29.0	71.0
	3년 미만	44	27.3	72.7
	3년~5년	29	24.1	75.9
	5년~10년	22	36.4	63.6
	10년 이상	5	40.0	60.0
사회복지법인	소계	100	100.0	0.0
	3년 미만	2	100.0	0.0
	3년~5년	4	100.0	0.0
	5년~10년	21	100.0	0.0
	10년 이상	73	100.0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한편, 직원 인건비 확보를 위해 이용한 프로그램에서는 기업별로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고용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용률이 88.6%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 지원금 이용률이 70.5%,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인건비 지원 이용률이 62.0%였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부 고용유지 지원금(44.8%),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인건비 지원(31.0%), 사회적경제 지원금(20.7%)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15〉 조직 유형별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명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고용유지 지원금	사회복지시설위탁 인건비 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금	지자체 일자리 지원금	창업기업 일자리 지원금	모름	미응답
전체		234	23.5	30.8	20.9	0.9	7.7	12.8	3.4
벤처기업	소계	44	88.6	0.0	0.0	0.0	11.4	0.0	0.0
	3년 미만	16	81.3	0.0	0.0	0.0	18.8	0.0	0.0
	3년~5년	19	89.5	0.0	0.0	0.0	10.5	0.0	0.0
	5년~10년	9	100.0	0.0	0.0	0.0	0.0	0.0	0.0
사회적기업	소계	61	3.3	1.6	70.5	3.3	21.3	0.0	0.0
	3년 미만	43	4.7	2.3	65.1	2.3	25.6	0.0	0.0
	3년~5년	14	0.0	0.0	78.6	7.1	14.3	0.0	0.0
	5년~10년	4	0.0	0.0	100.0	0.0	0.0	0.0	0.0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29	44.8	31.0	20.7	0.0	0.0	3.4	0.0
	3년 미만	12	66.7	16.7	8.3	0.0	0.0	8.3	0.0
	3년~5년	7	28.6	42.9	28.6	0.0	0.0	0.0	0.0
	5년~10년	8	25.0	37.5	37.5	0.0	0.0	0.0	0.0
	10년 이상	2	50.0	50.0	0.0	0.0	0.0	0.0	0.0
사회복지법인	소계	100	1.0	62.0	0.0	0.0	0.0	29.0	8.0
	3년 미만	2	0.0	50.0	0.0	0.0	0.0	50.0	0.0
	3년~5년	4	0.0	50.0	0.0	0.0	0.0	25.0	25.0
	5년~10년	21	4.8	71.4	0.0	0.0	0.0	23.8	0.0
	10년 이상	73	0.0	60.3	0.0	0.0	0.0	30.1	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다섯 번째로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이용 여부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3.8%로 대부분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세부기업 유형 중에서는 비영리법인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89.0%), 벤처기업(81.0%), 사회적기업(65.0%)의 순이었다. 다만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설립한 지 5년 이상에서, 이용률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2개 기업형태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이 최대 5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6〉 조직 유형별 창업기업 세금감면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개, %)

구분		이용 여부		
		시설 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감면 혜택을받고 없음
전체		400	83.8	16.3
벤처기업	소계	100	81.0	19.0
	3년 미만	38	94.7	5.3
	3년~5년	46	95.7	4.3
	5년~10년	16	6.3	93.8
사회적기업	소계	100	65.0	35.0
	3년 미만	64	60.9	39.1
	3년~5년	32	81.3	18.8
	5년~10년	4	0.0	100.0
사회적협동조합	소계	100	89.0	11.0
	3년 미만	44	86.4	13.6
	3년~5년	29	93.1	6.9
	5년~10년	22	95.5	4.5
	10년 이상	5	60.0	40.0
사회복지법인	소계	100	100.0	0.0
	3년 미만	2	100.0	0.0
	3년~5년	4	100.0	0.0
	5년~10년	21	100.0	0.0
	10년 이상	73	100.0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청년창업기업에 필요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응답자에게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금융지원(22.8%)이었다. 세부기업 유형 중에서는 벤처기업(31.0%)과 사회적기업(32.0%)의 경우, 금융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22.0%)과 사회복지법인(14.0%)은 사무실 등 창업 인프라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조직 유형별 투자 우선순위(1순위)

(단위: 개, %)

구분		투자 우선순위 1순위 응답					
		시설 수	교육지원	금융	인프라	직원 인건비	조세감면
전체		400	5.8	22.8	10.3	56.3	5.0
벤처 기업	소계	100	1.0	31.0	2.0	64.0	2.0
	3년 미만	38	0.0	31.6	5.3	60.5	2.6
	3년~5년	46	2.2	32.6	0.0	63.0	2.2
	5년~10년	16	0.0	25.0	0.0	75.0	0.0
	10년 이상	0					
사회적 기업	소계	100	10.0	32.0	3.0	47.0	8.0
	3년 미만	64	15.6	34.4	4.7	34.4	10.9
	3년~5년	32	0.0	25.0	0.0	75.0	0.0
	5년~10년	4	0.0	50.0	0.0	25.0	25.0
	10년 이상	0					
사회적 협동 조합	소계	100	7.0	17.0	22.0	50.0	4.0
	3년 미만	44	4.5	18.2	18.2	52.3	6.8
	3년~5년	29	10.3	17.2	24.1	44.8	3.4
	5년~10년	22	9.1	13.6	31.8	45.5	0.0
	10년 이상	5	0.0	20.0	0.0	80.0	0.0
사회 복지 법인	소계	100	5.0	11.0	14.0	64.0	6.0
	3년 미만	2	0.0	0.0	0.0	100.0	0.0
	3년~5년	4	0.0	25.0	25.0	50.0	0.0
	5년~10년	21	0.0	19.0	4.8	71.4	4.8
	10년 이상	73	6.8	8.2	16.4	61.6	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원자료.

제2절 기업형태별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

1. 분석 개관

본 절에서는 제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기업형태에 따라 차별적일 것이라는 명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금융, 인프라, 세금감면, 직원 인건비 지원 정부 위탁사업 등 총 5가지로 세분화한 창업지원 정책이 사회적기업 등 4가지 기업형태와 영리 및 비영리법인 형태에 따라 기업규모 성장과 고용효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4-2〕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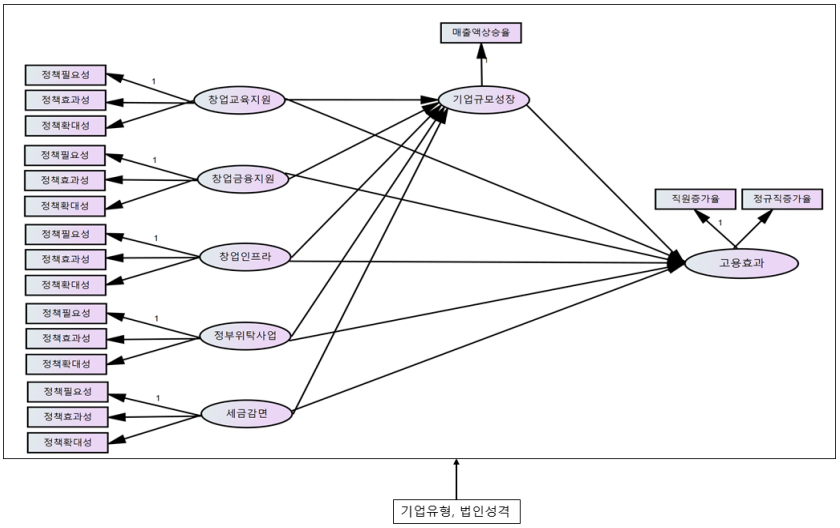

그리고 독립변수로 현재 창업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인 창업교육, 창업금융, 창업 인프라, 세금감면, 정부 위탁사업 참여, 5개를 설정하고, 각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 그리고 확대가능성을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매개변수인 기업규모 성장 정도는 연평균 순매출액 증감률[1](설립연도 대비 2020년 매출액 상승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응답자에게 설립연도 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응답받아 순매출액 증감액을 구한 다음, 설립 후 운영 기간으로 나누어 구한 연평균 순매출액 증감률에 대하여 설립연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변동 없다면 3점으로, 연평균 매출액 순증감률이 -20% 이상이면 1점으로, -1~-20% 미만이면 2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연평균 매출액 순증감률이 1~20% 미만이면 4점을, 20% 이상이면 5점을 부여하여 재설정하였다. 이때 증감률 기준을 20%로 잡은 이유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고성장기업인 가젤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감률이 전년 대비 20%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매개변수의 측정 도구로 설립연도 대비 2020년 연평균 순 증감률을 사용한 이유는 창업 지원정책이 부재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원정책들의 효과성을 직접 질문하고 그 응답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종속변수인 고용효과는 연평균 종자사 순증감률과 연평균 정규직 순증감률을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기업규모 성장과 동일하였다. 네 번째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절변수(통제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형태와 법인 성격, 2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도구로는 기술통계분석의 경우, SPSS 23.0을,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mos 21.0을 사용하였다.

1) ((2020년 매출액-설립연도매출액)/설립연도 매출액)/운영기간

〈표 4-18〉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위한 변수의 구성

구분	요인	변수 설명	비고
독립 변수	창업교육지원	1=전혀그렇지않다, 2=약간그렇지않다 3=그저그렇다, 4=약간그렇다 5=매우그렇다	○ 요인변수 - 정책필요성 - 정책효과성 - 정책확대가능성
	창업금융지원	1=전혀그렇지않다, 2=약간그렇지않다 3=그저그렇다, 4=약간그렇다 5=매우그렇다	○ 요인변수 - 정책필요성 - 정책효과성 - 정책확대가능성
	창업인프라	1=전혀그렇지않다, 2=약간그렇지않다 3=그저그렇다, 4=약간그렇다 5=매우그렇다	○ 요인변수 - 정책필요성 - 정책효과성 - 정책확대가능성
	세금감면	1=전혀그렇지않다, 2=약간그렇지않다 3=그저그렇다, 4=약간그렇다 5=매우그렇다	○ 요인변수 - 정책필요성 - 정책효과성 - 정책확대가능성
	정부위탁사업	1=전혀그렇지않다, 2=약간그렇지않다 3=그저그렇다, 4=약간그렇다 5=매우그렇다	○ 요인변수 - 정책필요성 - 정책효과성 - 정책확대가능성
종속 변수	고용효과	1=평균 20% 이상 감소 2=평균 1~20% 미만 감소 3=변동 없음 4=평균 1~20% 미만 증가 5=평균 20% 이상 증가	○ 요인변수 - 평균 순종사자 증감률 - 평균 순정규직 증감률
매개 변수	기업규모 성장	1=평균 20% 이상 감소 2=평균 1~20% 미만 감소 3=변동 없음 4=평균 1~20% 미만 증가 5=평균 20% 이상 증가	○ 요인변수 - 평균 순매출액 증감률
조절 변수	기업유형	1=벤처기업, 2=사회적기업 3=사회적협동조합 4=비영리법인	
	법인성격	1=영리법인 2=비영리법인	

2. 분석 결과

가.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잠재 상관분석

우선,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 4-19〉와 같이 연구대상의 조절변수로 사용된 기업 유형은 벤처기업 등 4개 기업 형태가 각각 25%씩 동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법인 성격 역시 비영리법인(51.8%), 영리법인(48.2%)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성격에서 주로 영리법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현재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인 반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이 주를 이룬 비영리법인은 현재 창업 지원정책은 부재하지만 정부 인허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2) 잠재요인으로 사용된 모든 변수의 왜도(skewness)는 절대값 3 미만이었고, 첨도(kurtosis) 역시 절대값 10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Kline, 20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이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모형에 잠재요인으로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4-19〉 조절변수의 기술통계

항목	구분	N(%)	항목	구분	N(%)
기업 유형	벤처 기업	100(25.0)	법인 성격	영리법인	189 (48.2)
	사회적 기업	100(25.0)		비영리법인	203 (51.8)
	사회적 협동조합	100(25.0)			
	사회복지법인	100(25.0)		계	392
	계	400(100.0)			

〈표 4-20〉 잠재요인들의 기술통계

잠재요인	항목	평균	왜도	첨도
창업교육지원	정책 필요성	3.62±1.37	-.780	-.606
	정책 효과성	3.41±1.29	-.624	-.723
	정책 확대성	3.545±1.34	-.702	-.734
창업금융지원	정책 필요성	3.77±1.33	-1.045	-0.72
	정책 효과성	3.56±1.25	-.823	-.291
	정책 확대성	3.69±1.32	-.946	-.276
창업인프라	정책 필요성	3.74±1.28	-1.057	.072
	정책 효과성	3.54±1.26	-.879	-.227
	정책 확대성	3.69±1.28	-1.035	-.013
세금감면	정책 필요성	3.50±1.31	-.801	-.438
	정책 효과성	3.34±1.21	-.765	-.409
	정책 확대성	3.49±1.29	-.765	-.465
정부위탁사업	정책 필요성	3.80±1.32	-1.096	.047
	정책 효과성	3.67±1.26	-1.069	.099
	정책 확대성	3.76±1.33	-1.110	.068
기업규모성장	매출액 순 증감률	4.12±1.37	-1.509	.808
고용효과	종사자 순 증감률	4.20±0.89	-.696	-.493
	정규직 순 증감률	4.08±0.94	-.498	-.859

(3)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을 통해 〔그림 4-3〕과 같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21〉과 같이 전체 기업의 경우, 창업교육지원은 창업금융지원, 정부 위탁사업, 세금감면, 기업규모 성장, 창업 인프라,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금융지원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창업 인프라, 세금감면, 고용효과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창업 인프라는 정부 위탁사업, 세금감면,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세금감면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 위탁사업은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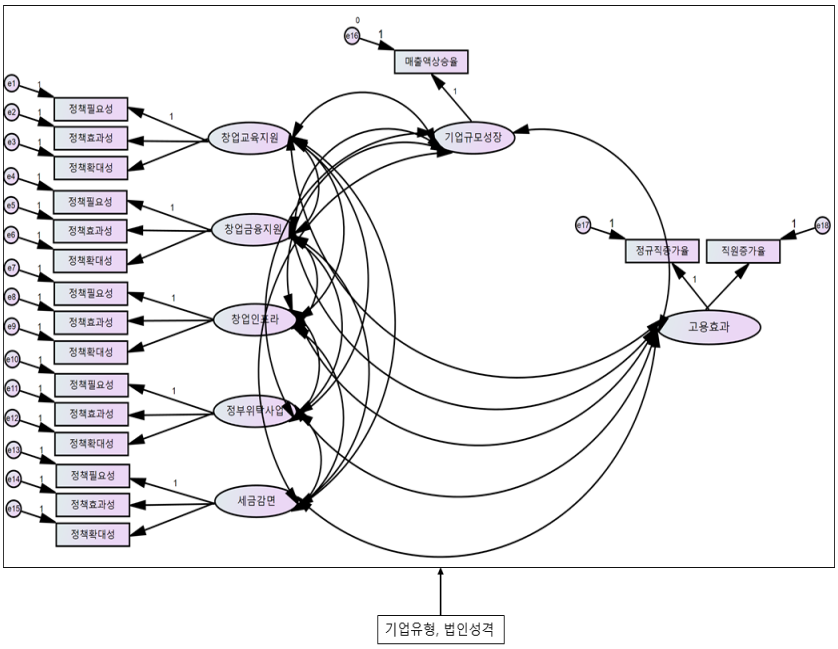

〈표 4-21〉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전체)

구분	창업교육 지원	창업금융 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 감면	정부위탁 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 효과
창업교육 지원	1						
창업금융 지원	.831***	1					
창업 인프라	.794***	.859***	1				
세금감면	.804***	.850***	.877***	1			
정부위탁 사업	.807***	.907***	.902***	.895***	1		
기업규모 성장	.800***	.870***	.855***	.830***	.924***	1	
고용효과	.278***	.340***	.286***	.305***	.383***	.441***	1

주: *** p〈.01, ** p〈.05, * p〈.1

두 번째로 조절변수 중 하나인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1) 〈표 4-22〉와 같이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교육지원은 창업금융지원, 기업규모 성장, 창업 인프라와 세금감면, 정부 위탁사업,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금융지원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창업 인프라, 세금감면, 고용효과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 인프라는 정부 위탁사업, 세금감면,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세금감면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정부 위탁사업은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4-22〉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벤처기업)

구분	창업교육 지원	창업금융 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 감면	정부위탁 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 효과
창업교육지원	1						
창업금융지원	.692***	1					
창업 인프라	.571***	.752***	1				
세금감면	.571***	.712***	.815***	1			
정부위탁사업	.569***	.878***	.824***	.761***	1		
기업규모성장	.680***	.868***	.766***	.734***	.863***	1	
고용효과	.223**	.274**	.227**	.211**	.328***	.421***	1

주: *** p〈 .01, ** p〈 .05, * p〈 .1

(2) 또 다른 정부의 청년정책 대상기업인 사회적기업의 창업교육지원은 창업금융지원, 세금감면, 창업 인프라,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금융지원은 창업 인프라,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세금감면, 고용효과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창업 인프라는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세금감면,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세금감면은 정부 위

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정부 위탁사업은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표 4-23〉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적기업)

구분	창업교육 지원	창업금융 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 감면	정부위탁 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 효과
창업교육지원	1						
창업금융지원	.941***	1					
창업 인프라	.904***	.942***	1				
세금감면	.906***	.905***	.930***	1			
정부위탁사업	.879***	.942***	.959***	.924***	1		
기업규모성장	.861***	.934***	.937***	.886***	.957***	1	
고용효과	.235**	.312***	.342***	.291***	.360***	.372***	1

주: *** p〈 .01, ** p〈 .05, * p〈 .1

(3)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표 4-24〉와 같이 창업교육지원이 창업금융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감면,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창업금융지원은 창업 인프라,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세금감면, 고용효과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창업 인프라는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세금감면,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세금감면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정부 위탁사업은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4) 비영리법인의 대표격인 사회복지법인에서는 〈표 4-27〉와 같이 창업교육지원은 정부 위탁사업, 창업금융지원, 세금감면, 창업 인프라, 기업규모 성장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금융지원은 정부 위탁

사업, 세금감면, 창업 인프라, 고용효과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 인프라는 정부 위탁사업, 세금감면, 기업규모 성장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금감면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정부 위탁사업은 기업규모 성장이,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창업교육 지원	창업금융 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 감면	정부위탁 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 효과
창업교육지원	1						
창업금융지원	.975***	1					
창업 인프라	.913***	.954***	1				
세금감면	.896***	.898***	.915***	1			
정부위탁사업	.871***	.950***	.943***	.916***	1		
기업규모성장	.861***	.920***	.933***	.883***	.954***	1	
고용효과	.191*	.284**	.277**	.302**	.337***	.389***	1

주: *** p〈 .01, ** p〈 .05, * p〈 .1

〈표 4-25〉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사회복지법인)

구분	창업교육 지원	창업금융 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 감면	정부위탁 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 효과
창업교육지원	1						
창업금융지원	.354***	1					
창업 인프라	.285**	.360***	1				
세금감면	.339***	.503***	.588***	1			
정부위탁사업	.420***	.504***	.634***	.759***	1		
기업규모성장	.267**	.153	.293***	.262**	.463***	1	
고용효과	.127	.166*	.076	.055	.208*	.361***	1

주: *** p〈 .01, ** p〈 .05, * p〈 .1

세 번째로 또 다른 조절변수 중 하나인 법인 성격에서 영리법인은 〈표 4-26〉과 같이 창업교육지원은 창업금융지원, 기업규모 성장, 창업 인프라, 정부 위탁사업, 세금감면,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금융지원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창업 인프라, 세금감면, 고용효과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 인프라는 정부 위탁사업, 세금감면,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세금감면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정부 위탁사업은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표 4-26〉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영리법인)

구분	창업교육 지원	창업금융 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 감면	정부위탁 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 효과
창업교육지원	1						
창업금융지원	.877***	1					
창업 인프라	.817***	.895***	1				
세금감면	.808***	.852***	.904***	1			
정부위탁사업	.813***	.932***	.928***	.883***	1		
기업규모성장	.827***	.926***	.896***	.845***	.938***	1	
고용효과	.316***	.380***	.372***	.331***	.417***	.449***	1

주: *** p〈 .01, ** p〈 .05, * p〈 .1

그리고, 비영리법인에서는 〈표 4-27〉과 같이 창업교육지원이 세금감면, 정부 위탁사업, 창업 인프라, 창업금융지원,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금융지원은 정부 위탁사업, 창업 인프라, 세금감면,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창업 인프라는 정부 위탁사업, 세금감면,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세금감면은 정부 위탁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정부 위탁사업은 기업규모 성장, 고용효과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표 4-27〉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비영리법인)

구분	창업교육 지원	창업금융 지원	창업 인프라	세금 감면	정부위탁 사업	기업규모 성장	고용 효과
창업교육지원	1						
창업금융지원	.770***	1					
창업 인프라	.784***	.839***	1				
세금감면	.786***	.830***	.858***	1			
정부위탁사업	.785***	.876***	.893***	.895***	1		
기업규모성장	.754***	.804***	.835***	.796***	.901***	1	
고용효과	.162**	.244***	.224***	.245***	.318***	.386***	1

주: *** p〈 .01, ** p〈 .05, * p〈 .1

나. 전체기업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고에서는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후 기업형태와 법인 성격에 따라 청년 창업지원 세부 정책 요인들이 기업규모 성장 요인을 매개하여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하였다. 우선,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를 χ^2(Chi-square)와 절대 적합지수인 GFI, RMR, 증분적합지수인 NFI, CFI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정지표별 판단기준은 GFI의 경우, 일반적으로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높다고 해석하며(Kline, 2005), RMSEA은 0.05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Bollen &

Long, 1993). 그리고 NFI, CFI는 일반적으로 0.9보다 크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표 4-28〉처럼, 분석 결과 기준을 고려할 때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과 실제 자료와의 적합도는 χ^2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합도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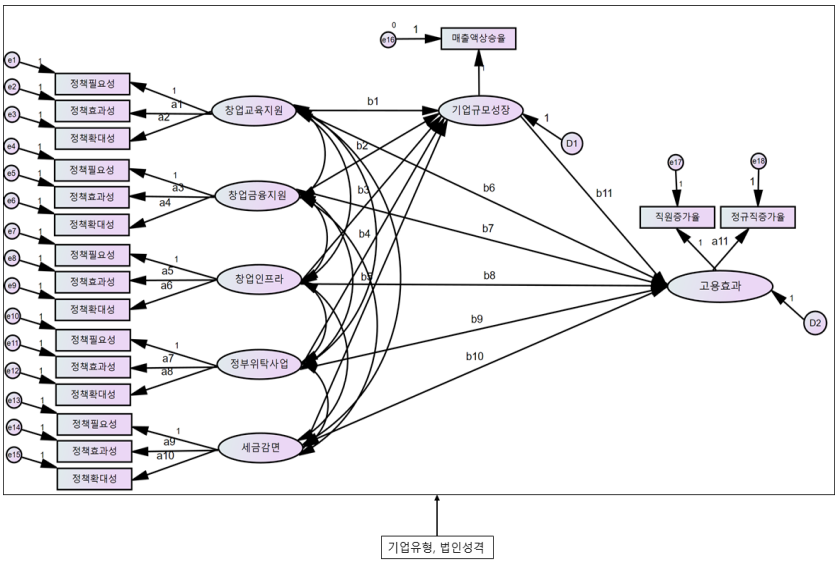

〈표 4-28〉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정

구분	χ^2	df	GFI	RMSEA	NFI	CFI
전체	384.99	115	.886b	.077b	.965a	.975a
기업유형	933.13	460	.787	.051b	.914a	.954a
법인성격	581.07	230	.840b	.063b	.947a	.967a

주: a는 좋음, b는 보통

두 번째로 전체 기업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등가제약을 실시하지 않은 전체 공분산 구조모형의 분석은 〈표 4-29〉와 같았다. 한 모델(전체 공분산 구조모형) 내에서의 경로 간 계수의 크기에 대한 비교는 비제약 모델(Unconstrained Model)과 비교대상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 모델(Equal Constrained Model)간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 성장,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 성장, 창업 인프라 → 기업규모 성장, 정부 위탁사업 → 기업규모 성장, 세금감면 → 기업규모 성장,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 창업교육지원 → 고용효과, 창업금융지원 → 고용효과, 창업 인프라 → 고용효과, 정부 위탁사업 → 고용효과, 세금감면 → 고용효과' 잠재요인 간에 등가제약을 실시하여 잠재요인 간 계수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4-29〉 다중집단 구조모형 전체 기업 분석 결과

경로	β[1]	S.E.	C.R.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130	.042	3.177a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111	.065	1.841c
창업인프라 → 기업규모성장	.076	.064	1.317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729	.084	9.499a
세금감면 → 기업규모성장	-.087	.062	-1.535
기업규모성장 → 고용효과	.695	.084	5.076a
창업교육지원 → 고용효과	-.122	.062	-1.252
창업금융지원 → 고용효과	-.013	.092	-.096
창업인프라 → 고용효과	-.344	.091	-2.565
정부위탁사업 → 고용효과	.187	.142	.875
세금감면 → 고용효과	-.027	.090	-.203

주 1: Standardized estimates
주 2: a는 $p<0.01$, b는 $p<0.05$, c는 $p<0.1$

그 결과, 세부 청년정책 지원사업 중 '정부 위탁사업 → 기업규모 성장' 경로(b=.729, p〈.01)와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 경로(b=.695, p〈.01), 그리고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 성장' 경로(b=.130, p〈.01)와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 성장'으로 가는 경로(b=.111, p〈.1)들은 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정부 위탁사업, 창업교육지원, 창업금융지원이 기업규모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업규모 성장이 고용효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절변수에 따른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업유형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고용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첫째 조절변수인 기업형태별로 공분산 구조모형이 기업 유형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유형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496)=995.131, p〈.000). 먼저,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 성장' 경로는 기업유형 집단 간의 차이가 5% 유의수준($\Delta\chi^2$=10.192, p〈.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창업금융지원 지원이 많을수록 벤처기업(b=.421, p〈.01)이 타 기업보다 기업규모 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 성장' 경로에서는 기업유형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Delta\chi^2$=3.605, p〉.1) 벤처기업(b=.094, p〈.1), 사회적기업(b=.070, p〈.1), 사회적협동조합(b=.064, p〈.1), 사회복지법인(b=.101, p〈.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창업교육지원이 많을수록 해당하는 기업 유형에서 기업규모 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정부 위탁사업 → 기업규모 성장' 경로에서는 기업 유형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Delta\chi^2$=4.395, p〉.1) 벤처기업(b=.313, p〈.05),

사회적기업(b=.709, p〈.01), 사회적협동조합(b=.740, p〈.01), 사회복지법인(b=.596, 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정부 위탁사업이 많을수록 해당하는 기업 유형에서 기업규모 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에 관한 경로에서는 기업 유형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Delta\chi^2$=3.63, p〉.1) 벤처기업(b=.816, p〈.01), 사회적기업(b=.381, p〉.1), 사회적협동조합(b=.509, p〈.01), 사회복지법인(b=.308, p〈.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기업규모 성장은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기업유형별 집단 간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경로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β[1)]	C.R.[2)]	β[1)]	C.R.[2)]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094	1.846c	.070	1.846c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421	3.253a	.178	1.581
창업인프라 → 기업규모성장	.067	.623	.148	1.076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313	2.277b	.709	5.244a
세금감면 → 기업규모성장	.091	1.011	-.133	-1.444
기업규모성장 → 고용효과	.816	3.659a	.381	1.039
창업교육지원 → 고용효과	-.022	-.156	-.427	-1.115
창업금융지원 → 고용효과	-.387	-1.292	.036	.071
창업인프라 → 고용효과	-.172	-.793	.237	.524
정부위탁사업 → 고용효과	.211	.729	.182	.318
세금감면 → 고용효과	-.119	-.651	-.077	-.222

경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Delta\chi^2$ 4)
	β1)	C.R.2)	β1)	C.R.2)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064	1.846c	.101	1.846c	3.605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060	-.419	-.086	-.703	10.192b
창업인프라 → 기업규모성장	.305	2.291b	.028	.191	3.478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740	5.543a	.596	2.617a	4.395
세금감면 → 기업규모성장	-.078	-.873	-.199	-.980	2.379
기업규모성장 → 고용효과	.509	3.065a	.308	2.563a	3.630
창업교육지원 → 고용효과	-.588	-1.991b	-.027	-.226	2.170
창업금융지원 → 고용효과	-.288	-.617	.055	.417	.834
창업인프라 → 고용효과	-.034	-.066	-.138	-.906	1.336
정부위탁사업 → 고용효과	-.370	-.629	.197	.747	2.991
세금감면 → 고용효과	.469	1.483	-.132	-.611	4.754

주 1: Standardized estimates
주 2: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주 3: a는 p〈0.01, b는 p〈0.05, c는 p〈0.1
주 4: χ^2 분포표에서 p=0.01, df=3일 때 χ^2=11.34, p=0.05, df=3일 때 χ^2=7.81, p=0.1, df=3일 때 χ^2=6.25로 $\Delta\chi^2$〉 χ^2 이면 통계적으로 해당경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봄.

한편, 또 다른 조절변수인 법인 성격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고용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공분산 구조모형이 법인 성격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지를 검정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 것으로 추정되었다(χ^2(242)=601.313, p〈.000). 세부적으로 경로 차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 성장' 경로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5% 유의수준($\Delta\chi^2$=5.357, p〈.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창업금융지원 지원이 많을수록 영리법인(b=.287, p〈.01)이 비영리법인(b=..025, p〉.1) 보다 기업규모 성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표 4-31〉 법인성격별 집단 간의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경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Delta\chi^2$ 4)
	β 1)	C.R. 2)	β 1)	C.R. 2)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093	2.122b	.086	2.122b	.420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287	3.174a	.025	.310	5.357b
창업인프라 → 기업규모성장	.104	1.202	.146	1.636	.024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529	5.280a	.815	6.682a	3.352c
세금감면 → 기업규모성장	-.035	-.533	-.147	-1.569	1.245
기업규모성장 → 고용효과	.638	2.878a	.671	3.732a	.473
창업교육지원 → 고용효과	-.060	-.372	-.235	-1.760c	.374
창업금융지원 → 고용효과	-.213	-.764	-.032	-.186	.218
창업인프라 → 고용효과	-.060	-.249	-.269	-1.406	.119
정부위탁사업 → 고용효과	.239	.774	.136	.432	.429
세금감면 → 고용효과	-.132	-.719	.036	.177	.213

주 1: Standardized estimates
주 2: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주 3: a는 p〈0.01, b는 p〈0.05, c는 p〈0.1
주 4: χ^2 분포표에서 p=0.01, df=1일 때 χ^2=6.63, p=0.05, df=1일 때 χ^2=3.84, p=0.1, df=1일 때 χ^2=2.71로 $\Delta\chi^2 \rangle \chi^2$ 이면 통계적으로 해당 경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봄.

두 번째로 '정부 위탁사업 → 기업규모 성장' 경로는 법인 성격 집단 간 차이가 10% 유의수준($\Delta\chi^2$=3.352, p〈.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지원이 많을수록 비영리법인(b=.815, p〈.01)이 영리법인(b=.529, p〉.01) 보다 기업규모 성장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 경로에서는 법인 성격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Delta\chi^2$=.473, p〉.1) 영리법인(b=.638, p〈.01), 비영리법인(b=.671, p〈.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 성장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고용효과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소결

본 연구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사회적기업 등 기업형태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일 것이라는 명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4가지 기업형태에 따라 창업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장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창업이나 운영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현재 정부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체 기업에서는 5가지 세부 창업지원 정책 중, 창업교육지원, 창업금융지원, 정부 위탁사업이 기업규모 성장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규모 성장은 고용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규모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창업 인프라 지원정책과 세금감면정책은 창업교육지원정책과 창업금융지원정책, 그리고 정부 위탁사업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각각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 2가지 세부 지원정책들은 창업교육지원정책과 창업금융지원정책, 정부 위탁사업과 상호작용해 기업규모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2〉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요약

경로		유의한 경로관계	경로 방향	집단간 차이
전체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
		창업교육지원 ↔ 세금감면, 창업인프라	+	-
		창업금융지원 ↔ 세금감면, 창업인프라	+	-
		정부위탁사업 ↔ 세금감면, 창업인프라	+	-
기업 형태	벤처기업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	無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	無
	사회적협동조합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인프라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교육지원 → 고용효과	-	無
	사회복지법인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법인 형태	영리법인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영리법인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창업교육지원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無
		정부위탁사업 → 기업규모성장→ 고용효과	+	비영리법인

두 번째로 유효경로에 대한 조절변수별 차이 분석을 위해 다중집단 공분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조절변수인 기업형태에서 벤처기업은 기업규모 성장에 미치는 원인변수로써 창업금융지원정책의 영향력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업 인프라 정책이 기업규모 성장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지만 기업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한편, 기업규모 성장이 고용효과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기업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기업 중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자리 제공형이거나 종사자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규모가 성장하여 자체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행 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정된다. 또한 두 번째 조절변수인 법인유형별 분석에서는 창업금융지원정책이 기업규모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 위탁사업이 기업규모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가지 기업형태 또는 법인성격별 창업 지원정책을 기업규모 성장을 통한 청년 고용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영리법인의 성격이 강한 기업의 경우에는 5가지 세부 정책 중 세금감면 및 창업 인프라와 관련된 창업교육과 매출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금 확보와 관련된 창업금융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이 창업 시에는 창업 인프라 등과 관련된 창업지원 정책과 더불어 세금감면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

결론

제1절 개관
제2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3절 정책적 제언

제 5 장 결론

제1절 개관

한국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에 대한 논의는 중요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15~29세, 10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는 통계 현황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실추를, 사회지도층인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갈등이라는 부담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률 감소방안의 대안으로서 현재 중앙부처가 추진 증인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지원정책 대상으로서 비영리법인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청년고용 창출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 한국 영리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이 약 31.2% 정도로 낮고, 특히 30대 미만 청년들이 경영자로 있는 기업들의 동일 기간 생존율이 21.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고용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 대안으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해외 주요국 간의 지원정책 차이 외에도 제도 및 행정, 통계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창업 용이성과 경영성과 및 고용효과, 그리고 정부 위탁사업 진입 현황 및 세금감면제도 등 정책적 지원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고용효과 증대에 미치는 세부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창업지원 정책의 대상인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연구내용을 크게 3장으로 나누어 2장에서는 기존 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병행하였고, 제3장에서는 청년고용 창출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고려된 비영리법인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법적 지원 근거, 창업 용이성 등 세부 기준별로 문헌조사와 관련 통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통계분석과정에서는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식 통계치가 부재한 관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데이터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업형태별 세부 창업지원 정책의 성공 요인 도출을 위해 벤처기업, 비영리법인 등 4개 기업형태별 최고경영자 100명씩 총 4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응답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다.

〈표 5-1〉 주요 연구내용별 방법

구분	연구내용	분석방법	관련 수집자료
제2장	청년 창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 문헌조사 - 통계분석	국조실 청년정책추진단 협조
	정부주도형 청년창업기업의 효과성	- 문헌조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기재부 협동조합과
제3장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	- 문헌조사	법제처 국가법제정보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 문헌조사	법제처 국가법제정보
	국내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경영성과 분석	- 통계분석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중기부 KED 데이터
	비영리법인의 정부위탁 사업 운영 현황	- 통계분석	중기부 SIMS 데이터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문헌조사	법제처 국가법제정보
제4장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	- 통계분석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제2절 연구 결과의 요약

1.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검토

우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파악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이 고용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보다는 청년 고용기업이나 직장인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유지정책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정책분야, 총 167개 과제에 약 8조 1,96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그중 창업지원 정책과제 수는 42개로 전체 일자리 과제의 25.1%, 예산은 1조 1,752억 원으로 약 14.3% 불과했다. 둘째는 42개 창업 지원정책 중 예비창업자가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공간 등을 지원하여 기업을 창업시키고 안착시키는 종합 창업보육 사업은 청년창업성공패키지 등 9개이며, 예산액은 1,517억 원 정도였다. 셋째는 9개 종합 창업보육 사업 중 사회서비스 등 비영리 영역에 대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은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외에 부재하였다.

〈표 5-2〉 청년정책기본계획상의 청년창업지원 관련 과제수 및 예산 현황

구분			과제수		예산	
			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366	100.0	23,813,069	100.0
일자리 분야	소계		167	45.6	8,196,158	34.4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105	28.7	6,331,701	26.6
	공정채용기반 구축 직장문화개선		10	2.7	686,724	2.9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10	2.7	2574	0.0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2	11.5	1,175,159	4.9
		청년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19	5.2	475,735	2.0
		- 전단계 안착화(기업창업)	5	1.4	35,523	0.1
		분야별 창업지원강화	23	6.3	699,424	2.9
		- 전단계 안착화(기업창업)	4	1.1	116,251	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한 종합 창업보육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평균 종사자 규모, 그리고 매출액 등에서 일반 영리기업보다 높아 창업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 성공률에서 중기부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이 99.7%로 가장 높고, 기재부 지원 협동조합이 64.0%로 낮았다. 하지만 연평균 창업기업 증가율에서는 사업이 초기인 협동조합이 47.5%로 가장 높았다. 둘째는 5년간 기업생존율 측면에서 정부의 창업지원 기업들은 최소 57.1%였지만 창업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31.2%로 약 25%p 높았다. 세 번째로 평균 종사자 규모에서도 일반 영리기업은 1.5명(2018년 기준)로 적지만 중기부 등 정부 창업지원 기업들은 최소 3.5명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균 매출액 규모에서는 중기부 지원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6.9억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기타 지원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는 1.1~1.5억 원으로 일반 영리기업(1.3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에서 창업지원 기업들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일반 영리기업들은 답보 내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일반 영리기업 대비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요약

구분	중기부 지원 창업기업	고용부 지원 사회적기업	기재부 지원 협동조합	일반 영리기업
지원기업 수(개)	46,719	4,259	114	-
창업 성공률(%)	99.7	91.6	64.0	-
연평균 창업기업 증가율(%)	8.4	18.5	47.5	5.2
5년 기업생존율(%)	57.1	57.3	75.3	31.2
평균 종사자 규모(18년 기준, 명)	5.4	3.5	3.8	1.5
평균 매출액 규모(18년 기준, 억 원)	6.9	1.5	1.1	1.35

2. 비영리법인의 창업지원 정책 도입 가능성

본 고에서는 청년실업률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년창업 지원정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가. 비영리법인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 방향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법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있다. 이들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정책 방향을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첫째, 해외 주요국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면 감독관청의 특별한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준칙주의에 따라 자유롭게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중앙 주무관청 소관의 허가주의로 설립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중앙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 모두를 담당하고 있으나, 타 국가의 경우, 주무관청이 감독을 담당하나, 실질적인 관리는 영국은 공익위원회가, 일본과 독일은 민관기관인 비영리조직 평가센터와 독일중앙사회 문제연구소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의 이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세 번째로 지원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면 세법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등에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세법상의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을 세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세금감면 이외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 행정 및 재정지원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원법률에서도 한국은 민법을 기반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특별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민법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과 유사하나 주법 중심의 미국과 독일, 그리고 회사법으로 비영리법인을 관리하는 영국에 비해 중앙집권적 관리 성격이 강하다.

〈표 5-4〉 해외 주요국간 비영리법인 관리정책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근거법	- 민법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연방세법 - 각 주법 등	- 민법 - 특정 비영리 활동촉진법 - 공익사단 및 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 등	- 공익법인법 - 회사법 등	- 민법. - 각 주법 등
NPO 형태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법인격 없는 단체 - 공익신탁 등	- 공익법인 -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등	- 공익신탁단체 - 회사법상 법인 - 공익법인 등	- 사단 - 재단 - 유한책임회사
관리	- 각 주무관청 - 허가주의	- 각 주장관 - 세무서가 관리 - 민간단체인 BBB Wisegiving Alliance가 비영리법인 인증 - 준칙주의	- 주무관청 비영리조직 평가센터(JCNE)가 관리 - 관할청 인증 준칙주의	- 영국 공익위원회 - 준칙주의	- 세무서 - 독일중앙 사회문제연구소(DZI) - 준칙주의
감독	-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연차보고서 작성 - 정보공개 의무	- 민법상 법인과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은 매년 사업보고서, 결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 - 관할청 및 법인은 정보공개 의무 존재	- 공익위원회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 및 정보공개 의무	- 주법에서 규정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지원 정책	- 조세감면 - 보조금 지원 - 기부금 세제혜택 - 행정·재정 지원 등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나.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

앞서 제시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이 비영리법인 관리에 대한 주요 해외국가 대비 비교분석 결과라면,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인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의미한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전요건 충족과 정부 인가제, 신고제 설립과 다양한 창업 및 운영지원 정책을 지원받는 기타 기업형태 대비 창업 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세제 감면 정책과 정부 사업위탁 등을 통한 보조금 사업들을 고려 시, 진입 후 성장 가능성은 타 기업형태 대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격 설립과 인허가 절차 및 내용에서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4개 유형 중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조건 충족 후 지방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존 창업지원 정책 사업에 포함된 벤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법인 또는 사업체 등록 후 심의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사업체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두 번째, 비영리법인은 인허가 전 특정 설립요건이 기존 청년창업 지원기업보다 충족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 및 재단법인은 3인의 발기인과 사업예산을 포함한 정관 작성, 창업총회라는 사전요건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전 자산출연 및 평가와 수익 조서 증서 및 예산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의 발기인과 조합원 등 설립동의자 확보 및 창립총회 등에 관한 조건이 사전에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최근 1년 이상의 비영리공익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비영리법인 등록 시, 10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이어야 한다는 사전조건이 부여되며,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5인 이상의 발기인과 조합원 등 설립동의자, 그리고 창립총회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설립된 이후에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정 사전 설립요건이 비영리법인 대비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원정책관점에서 기존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들은 기업설립에 따른 창업지원과 기업육성 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융자받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보다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비경쟁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과 비용지출 차원에서의 세제지원을 고려할 때 비영리법인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지원정책 외 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증으로 인한 지원정책을 제공받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매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와 비용지출 차원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임대, 일부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보조 지원, 그리고 인증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법인세 감면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부 사업으로 정부 위탁사업 등 정부 보조금 수입과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및 비영리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수익사업으로 인

한 이익의 손금산입 등을 고려할 때, 약 20% 이상의 기업세 지출이 매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표 5-5〉 기업형태별 창업절차와 주요 지원정책

구분		설립 방식	인증기관	설립조건	주요 지원정책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인허가	중앙 주무관청	- 3인 이상 발기인 - 창립총회·정관 등 - 회비와 기부금 등 검토	-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이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 이자소득,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비영리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 증여세 일부 감면
	재단법인	인허가	중앙 주무관청	- 기본재산(소) - 출연자 - 출연재산 수입 등 검토	
	사회복지 법인	인허가	광역/기초 지자체	- 기본재산(대) - 출연자	- 세금감면 상동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교육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인허가	중앙 주무관청	- 5인 이상 발기인 - 창립총회·정관 등	- 세금감면 상동 - 제품 우선 구매 지원 - 기타 지방세 면제 -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제	중앙/광역 지자체	- 회원 100인 이상 - 창립총회 - 최근 1년간 비영리 공익사업 활동 증빙서류 등 - 사무공간 증명서류	- 세금감면 상동 - 보조금 지원 - 행정지원 - 우편요금 지원 -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청년 창업 지원 대상	벤처기업	신고제	벤처기업 확인기관	- 1명 이상 - 벤처투자유형 등 4개 유형 중 1개	- 중기부 지원대상 선정 등 - 일반 금융지원 한도 확대 - 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 - 코스닥 상장기준 완화 -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감면 - 인력지원
	협동조합	신고제	기초 지자체	- 5인 이상 발기인 - 창립총회	- 중소기업지원제도 적용 - 기재부 창업보육 사업 지원
	사회적 기업	신고제	주무관청 (인증제)	- 1명 이상 - 법인 자격 보유	- 고용부 창업보육사업 - 부지구입비 등 시설비 지원 및 국공유지 임대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다. 국내 비영리법인의 운영현황과 경영성과

한편, 새로운 고용 창출 수단으로 비영리법인 창업지원 도입에 관한 가능성 타진을 위해 본 고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회사법인(51.1%)과 회사이외법인 중 기타법인(52.8%) 대비 비영리법인(21.8%)은 적었지만, 전체 종사자 수 3년 연평균 증가율(3.4%)과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규모(평균 26.0명), 그리고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83.4%)에서 〈표 5-6〉과 같이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그리고 회사이외법인 중 기타법인과 비법인 단체에 비해 비영리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6〉 일반 영리기업 대비 청년창업 지원기업의 효과성 분석 요약

구분		전체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 단체
					비영리 법인	기타법인	
사업체	수(개)	4,103,172	3,245,411	594,173	41,296	88,976	133,316
	3년 연평균 증가율	1.9	1.5	4.3	5.6	2.2	1.7
전체 종사자	수(명)	2,2234,776	8,272,436	9,934,168	1,072,951	2,293,705	661,516
	3년 연평균 증가율	2.1	1.7	1.9	3.4	2.5	6.8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명)	5.4	2.5	16.7	26.0	25.8	5.0
	3년 연평균 증가율	0.2	0.2	-2.2	-2.1	0.3	5.0
상용근로자 비율		64.6	32.7	82.6	83.4	90.0	76.1
매출액 규모	1억 원 미만	53.5	61.7	12.6	46.0	11.5	68.3
	1~10억 미만	34.7	34.4	37.2	32.3	35.6	28.2
	10~100억 미만	10.1	3.8	40.6	18.2	44.8	3.4
	100억 이상	1.7	0.0	9.5	3.6	8.0	0.0

주: 회사이외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개 법인의 총합, 기타법인에는 공공 및 정부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
자료: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또한 비영리법인의 고용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고에서는 4가지 기업형태별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3가지 차원에서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영리법인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기존 창업지원 기업 대비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성장성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은 19년 기준 총자산증가율(1.6%)이 4개 기업형태 중 4위로 평가되었지만, 자산규모가 절대적으로 커 경쟁적 우위를 점한다. 둘째, 수익성 측면에서도 비영리법인은 매출액 영업이익률(-3.3%)과 매출액 순이익률(0.4%)에서 4개 기업형태 중 각각 1위, 2위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비영리법인은 부채비율(157.5%)에서 4개 기업형태 중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7〉 4개 기업형태별 경영성과 분석결과

구분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전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전체	기업 수		37,360	2,953	4,192	4,189	1336	864	831	184	914
성장성	총자산	'15	30.4	4.8	1.9	264.0	12.8	179.9	3672.8	64.1	129.2
		'19	34.0	7.9	2.1	280.3	11.3	211.3	4000.2	75.6	160.1
	총자산 증가율	'15	2.1	-0.8	26.2	11.9	14.5	3.2	422.5	-11.9	3.0
		'19	6.8	29.9	5.9	1.6	8.4	8.5	-7.6	12.3	3.9
	매출액	'15	34.7	8.2	3.1	160.1	15.2	131.1	1882.5	66.3	94.1
		'19	34.3	11.0	3.9	165.8	15.3	163.0	1898.5	83.0	117.9
	매출액 증가율	'15	-0.9	-2.4	25.3	37.0	-9.0	-6.5	636.9	3.6	1.5
		'19	2.1	19.3	4.9	5.6	13.0	12.4	-3.4	-2.8	5.3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15	2.9	-10.8	-29.9	-2.2	-12.3	-0.7	7.0	-7.0	5.0
		'19	-4.0	-3.5	-21.8	-3.3	-12.0	-0.2	-5.0	-10.4	3.5
	매출액 순이익률	'15	3.4	0.9	-12.1	1.1	0.4	0.9	0.5	2.7	1.8
		'19	-0.9	2.3	-2.8	0.4	-0.7	1.1	0.8	0.5	1.0
안정성	부채비율	'15	208.4	202.8	273.4	157.0	161.6	112.5	37.1	149.6	191.8
		'19	206.4	259.4	248.5	157.5	164.6	101.5	40.1	147.0	200.4
	유동비율	'15	267.2	230.9	261.4	398.5	434.2	788.8	189.0	958.9	121.5
		'19	324.6	320.3	268.5	296.4	375.5	492.8	244.9	250.1	107.8

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이용하여 분석

라. 국내 비영리법인의 정부지원시장 진출 현황

본 고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창업 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들의 중소기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15~'19) 비영리법인 중 2개 의료법인이 인력지원을 4건(약 4.5천만 원) 받았을 뿐, 기타 지원이력은 전무하였다. 반면에 벤처기업은 5년간 약 54조 6,795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기업(7,705억 원), 협동조합(485억 원)의 순이었다. 이는 정부의 창업·성장지원사업에서 사실상 비영리법인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들도 부 사업으로 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가 가능하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5-8〉 4개 기업형태별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이력 결과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전체 기업 수		37,360	2,953	4,192	4,189
중앙정부	지원기업수	32,368	1808	527	2
	지원건수	272,781	8,956	1,339	4
	지원액	54,679,514	770,574	48,524	45
	지원 비율	86.6	61.2	12.6	0.05
	평균지원 건수	8.4	5.0	2.5	2.0
	평균지원 금액	1,689.3	426.2	92.1	22.3
지원분야	경영	278,358	5,081	30,869	-
	금융	47,965,254	721,309	95,172	-
	기술	5,275,474	20,686	2,040	-
	내수	12,016	1,009	397	-
	수출	278,172	3,867	655	-
	인력	442,461	13,000	2,385	45
	창업	422,591	5,621	615	-
	기타	5,187	-	-	-

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이용하여 분석

한편, 정부 위탁시장 중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창업 시, 사회복지시설위탁사업의 진출 가능성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주체 비중이나 서비스 신뢰성 측면 등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수는 59,122개로 파악되며, 이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는 10.7%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서비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인 개인이 운영하는 비중은 68.0%로 약 7배에 달한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매출 차원에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민간 후원금을 포함할 경우, 약 5조 3천억 원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표 5-9〉 2019년 기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사업 현황 요약

구분		전체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결핵 및 한센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전체시설수(개)		59,122	11,346	5,363	3,744	427	148	6	249	468	37,371
종사자수(명)		587,031	181,785	19,785	37,740	3,532	1,861	103	2,023	8,758	331,444
평균 종사자 수(명)		9.9	16.0	3.7	10.1	8.3	12.6	17.2	8.1	18.7	4.1
운영주체%	지자체	11.9	1.8	0.6	1.1		0.1		0.4	0.6	7.3
	사회복지법인	10.7	3.9	1.1	2.8	0.3	0.1	0.0		0.2	2.3
	기타법인	8.3	2.0	1.2	1.7	0.2	0.1	0.0		0.0	3.1
	단체(법인외)	1.1	0.2	0.5	0.1	0.1	0.0				0.3
	개인	68.0	58.5	62.2	10.9	23.7	14.2	0.0	0.0	0.0	79.4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5-10〉 20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현황

구분	전체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결핵·한센	기타
전체 시설(개)	15,340	6,397	4,478	3,045	298	95	5	1,022
보조금액(억 원)	50,142	11,443	8,216	16,520	1,703	988	73	11,199
후원금액(억 원)	3,204	518	932	702	68	55	2	927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21),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마. 비영리법인의 조세감면 제도 검토

본 고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창업 시, 타 기업형태 대비 비용지출의 경쟁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영리법인은 조세특례법상 고유목적 이외의 부 사업에 대한 이익에 관한 비용지출 등에 있어서도 타 기업형태 대비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영리법인이 타 기업형태 대비 우위를 점하는 조세감면 제도 중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 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등 영리기업 등과 비교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뿐만 아니라 부 사업으로 영리사업을 추진 할 경우,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활용 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가 100%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또한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자산 양도 등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에서 창출된 부가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조세특례제한법 74조).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대상으로서 일반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조세특례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제외가 존재한다. 즉 창업 또는 운영 시, 출연자에

의한 상속이나 공익신탁으로 인한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설비 등이 출연된다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이외에도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서도 제외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3. 비영리법인 창업 지원정책의 성공요인 도출

비영리법인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지원정책에 대하여 본 고에서는 벤처기업 등 기존 창업지원 정책대상 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형태 경영자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창업교육, 금융지원, 시설 등 인프라, 정부 위탁 사업 참여, 조세감면 제도 등 5개 세부 정책 요인이 창업기업의 규모 성장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4개 기업형태와 2개 법인 성격별로 차별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조절변수인 기업형태별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3개 기업형태에서 '창업교육지원 또는 정부 위탁사업 →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사회적기업도 '창업교육지원 또는 정부 위탁사업 → 기업규모 성장'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형태별 영향력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창업 인프라지원 →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에 미치는 경로와 벤처기업의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기업형태와의 집단간 영향력 차이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조절변수인 법인 형태에서는 영리법인의 경우, '창업금융지원 →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에 미치는 경로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부 위탁사업 → 기업규모 성장 → 고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에 대한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기업형태 중 벤처기업과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창업금융지원 정책이 기업규모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기업형태보다 크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인건비 조달을 위한 정부 위탁사업의 효과성이 기업규모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영리법인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제3절 정책적 제언

본 고에서는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에 비영리법인의 포함 가능성과 세부 지원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영리법인은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 영리기업과 현재 청년창업 지원정책 대상인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비 고용 창출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정부는 중장년 등 일반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창업지원 기반 마련 정책과 청년 창업에 특화된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정책 등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중장년 등 일반인을 포함한 창업 정책 추진 시, 첫째로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민간 창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허가주의의 현 설립제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예비창업자가 법인형태를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창업할 경우, 주무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주무관청의 장으로부터 설립을 허락받는 허가주의를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창업 여부가 주무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개시 전 설립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은 커다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감독관청의 특별한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준칙주의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이 자유롭다.

둘째로, 비영리법인 현황에 대한 통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적 목적하에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단 및 재단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법인 설립과정에는 관련 법에 따라 31개 중앙부처가 각각 소속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계 현황을 수집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비영리법인의 경영성과나 고용현황 등의 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례로 본 고에서도 기업형태별 청년 기업의 통계치가 부재하여 경쟁력 분석 등에서 전체 기업의 통계치로 청년 기업의 현황을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의 청년 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일반 협동조합의 생존율 등에 관한 실적치나, 제3장의 기업형태별 정부 지원시장 이력 분석에서 청년 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4장의 비영리법인의 창업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온라인 조사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의 설문 대상자를 청년 경영자로 한정하지 못하였다. 제2장 청년 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일반 협동조합의 생존율 등에 관한 실적치를 사용한 이유는 협동조합 창업 이력 사업에 관한 보고서 수집이 어려워서였고, 제3장의 기업형태별 정부 지원사업 이력 분석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ED 및 SIMS 데이터와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경영자 연령 정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대상 온라인 조사과정에서도 경영공시자료 등에

경영자 연령 정보가 누락 되어 청년 기업 추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법인의 대표격으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도 전체 비영리법인의 현황 자료 수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셋째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기관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에 설립과 감독은 31개 중앙부처가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들은 각각 소관 부처에 자신의 법인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처별 감독기준이 차별적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의 공공성에 대한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실례로 21대 국회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자나 법인 관계자에 의한 불법·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재무·회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를 주무관청이 아닌 세무서나 영국의 공익위원회 등 민간협력 기관을 통해 공익성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기능을 민간협력 기관에 위탁·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넷째는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3장 3절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인이 인력지원에 대해 총 4천5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한 유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는 점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상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다섯째는 비영리법인이 정부 위탁사업 등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전파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부 사업으로 영리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의 부 사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예로서 비영리법인의 한 유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사업 비중을 40%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2항). 즉, 기타 영리목적의 부 사업 비중을 60% 미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비영리법인 설립에 있어 청년에 특화된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인 창업을 자연스럽게 고려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청년들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식과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된 청년 창업보육 프로그램 마련과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세금감면, 정부 위탁시장을 통한 종사자 인건비 확보,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조세 특례 적용 등 영리법인 대비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세금감면 차원에서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의 정부 보조금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등 영리법인이 진출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공공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조세특례 등 다양한 세금감면 정책들이 존재한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부 사업으로써 수익사업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익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환 시, 세제 감면 혜택을 가진다. 즉,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부 사업으로서의 수익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모두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리법인 대비 비용지출이 대폭 감소 된다.

둘째로, 청년들의 초기 창업자금 확보 능력을 고려하여 청년창업 시, 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영리법인 격을 이용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은 설립과정이 민법상의 재단이나 사단,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대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설립인허가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본재산의 규모를 지자체별로 제각기 설정하고 있어. 기본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지, 자체를 꺾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에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에 과한 권고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설립자에게 요구하는 기본재산 규모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의 경우, 20억 원 이상이며, 경북은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인 반면,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유무만을 판단하지, 금액 규모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또한 기본재산 중 임대시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대전시는 일반사회복지분야와 노인 분야에서 임대시설을 기본재산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5-11〉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지자체별 분야별 기본재산 기준

구분	일반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서울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부산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대구	- 금액기준 없음	- 금액기준 없음	- 금액기준 없음
인천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20억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대전	- 금액기준 없음 - 임대시설 인정	- 금액기준 없음 - 임대시설 미인정	- 금액기준 없음 - 임대시장 인정
세종	- 금액기준 없음 - 허가사례 없음	- 금액기준 없음 - 허가사례 없음	- 금액기준 없음 - 허가사례 없음
경기	- 금액기준 없음	- 금액기준 없음	- 금액기준 없음
경북	-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 - 임대시설 미인정

주: 시설법인 기준, 별도 금액 기준이 없는 경우, 기본재산 유무만 판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의결안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지설의)설치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2017)'에서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비영리법인 격을 허가받을 경우,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지자체 중 최대금액을 요구하는 인천시는 사단법인의 경우, 5천만 원, 재단법인의 경우, 5억 원으로 동일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인가 때, 필요한 재산의 각각 2.5%,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년들이 주 사업 목적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설정하고 비영리법인 창업을 고려한다면 굳이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큰 자본금이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본금 규모가 정해

지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최대 5억 원이 소요되는 재단법인 등이 경영의 안전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표 5-12〉 지자체별 비영리법인 허가 시, 재산규모 기준

구분	비영리법인 허가 시 재산 기준
서울	- 500 ~2,500만 원(부서별 기준 상이)
인천	- 사단법인 5,000만 원, - 재단법인 5억 원
경기	- 종교분야 3억 원 -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 등 5,000만 원 - 일반분야 2.500만 원
경북	- 5,000만 원(단 50%는 회비로 모집)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의결안

셋째로, 청년들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고려한 비영리법인 창업 시, 필요한 시설장 자격을 정확히 인지 가능하게 하는 홍보방안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하여 높은 경력과 자격 등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비영리법인의 창업 용이성에서 검토한 것처럼 다양한 비영리법인 설립상에 설립자 연령이나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 5-13〉과 같이 각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시설장의 자격을 특정 자격증 보유와 경력 기간으로 한정한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사회복지사 1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비영리법인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예비창업자가 비영리법인을 설립 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시, 시설장 조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시설장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학교에서 취

득하거나, 사회복지시설 5년 근무경력을 갖추면 된다. 특히 5년의 근무경력은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대상 연령(19~39세)과 비교해볼 때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 5-13〉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시설장	아동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면허,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보육교사 1급 등도 가능
	장애인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역 자활센터	- (1급)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고문헌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Procedure.do?m_cd=E003에서 2021. 10. 25. 인출

곽동철·주영혁·조봉현. (2016). 창업기업 생존율 영향요인 고찰: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38권. 제4호. pp.74-94.

관계부처합동. (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가기록원. (1965.12.20.). 조세감면규제법(법률1723호).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1050469&dsid=000000000005&gubun=search 에서 2021.10.25. 인출

국무조정실.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련 세부과제 재분석

국민권익위원회. (2021.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의결안

국세청.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21).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Z2B1T0J7T3C0M1R3U4C7O0V2A9O2B7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D0E0E6Y1Y6I1N8S2Z8F3J8L0E8E4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K0H0A6Z1E0N1G0T4M9D2J8G6Y6K8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X0Z0S9

B2K1W1U3E4I2A5X6F6I8G1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J1Z0D7S2A7I1D1B4O3F4E0J1U6I0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C0U0Y6A1P6S1W8J3L8M3F0P6X4W6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A0Q0Q6X0W5Q1R7C5B0V1G5R5D0V3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H0X0P6C2O9H1D4K3H8T0I3K7V6X5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0X0W6B2V9Y1P3C5W1X0N6P8H9C7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1P0E2G2S5T1W0F1Y7C2K6P2O8R9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1W0A2R0V1Y1D0Q1G5X0D2A7K6O6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W0D0S6K2W9J1V4B3M0U0I1T7O2E2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I1W0D1I2R6O1O7J5G2Y1K8C8A2G3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C0F0D6W2W6Y1C1A2U2H5L6U3K8T8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1K0V2O2T6T1R5R4K9Y3A5Y4B6L0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C0Z0O6O0U5I1O8H1I4Z0T6Z6H5X6에서 2021.10.25. 인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R1S0R6P0A1J1F3A5N5I4J0T4F5K1에서 2021.10.25. 인출.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020). 협동조합 육성사업 이력 자료.

기획재정부. (1998). 98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2017).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재정부. (2021).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김태선. (2017.12.). 미국의 단체에 관한 법제도. 중앙법학회. 제66호. p. 158-159

김학수·송은주·이형민·조승수. (2017.12.). 주요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 114-115.

네모토마사쯔구·박영화. (2012).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 -일본의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6(1), pp.391-415.

박준. (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박희석. (2018). 서울시 비영리 스타트업 실태와 청년 일자리.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pp.1-24.

박성환·이호영·강선아·채수준. (2014), 비영리공익법인의 모니터링시스템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와 정책연구. 19(5). 한국회계정책학회, pp.2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504&lsiSeq=232025#0000에서 2021.10.2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417&ancYd=20200526&ancNo=30718&efYd=202005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1.10.2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950&ancYd=20000112&ancNo=06118&efYd=2000041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1.10.25. 인출.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ocessGuide에서 2021. 10. 25. 인출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자활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1). 2021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각 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사업유형 및 분야별 예시. https://npas.mois.go.kr/nsbms/hmp/bsnsInfo/sotBsnsTyRamEx/sotBsnsTyRamExR.do?srchBizYear=2021에서 2021.10.25. 인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OPAS). 지원사업통계. https://npas.mois.go.kr/nsbms/hmp/infoPblntf/sbsidySportYearTrnsitn/sbsidySportYearTrnsitnChart.do에서 2021.10.25. 인출.

사회보장정보원. (2021).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보조금 및 후원금 이용내역 현황 자료.

신상화·정창호. (2017). 청년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상설시장 재생방안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5(4). pp.137-150.

안태욱·강태원. (2016).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2호. (통권 68호). pp.67-80,

양영석·양수희·황보윤. (2012). '질 좋은 청년 창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3). pp.167-179.

이윤숙·문성욱. (2016).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성장에 대한 고찰: 1994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시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연구. 제20권. 제2호. pp.121-142.

이철선·김진희·이연희·김성기·조혜경·백필호. (2017).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2AC0000000026. 2022.1.10.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0AC0000000034. 2022.1.10.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5AC0000000073. 2022.1.10.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2AC0000000026. 2022.1.10.

일본 e-Gov法令検索,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8AC0000000049_20160401_426AC0000000069. 2022.1.10.

임채윤·이윤준·이광호·김존선·배영임·김성진. (2008). 벤처기업의 생존 영향요인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종익. (2019).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노동정책연구 19(1). pp.29-58.

조상미·정선희·김재신. (2017). 사회적기업의 폐업 경험: 과정은 어떠하고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1). pp.29-61.

조영복·손진현·정기범·이나영. (2018).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pp.89-104.

조윤숙. (202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협력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연구. 14(1). pp.57-74.

중소기업벤처부. (각 년도).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SIMS[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2020.10.).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

중소벤처기업부. (2018).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

중소벤처24.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에서 2021. 10.25. 인출.

지원림. (2019). 민법강의. 서울: 홍문사.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2020), 2020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통계청. (2021). 인구총조사.

통계청. (각 년도).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각 년도). 전국사업체조사.

한국기업데이터. (각 년도).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조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이력·성과조사.

한세억. (2017).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친환경 사회적 기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pp.115-154.,

한국은행. (2019). 2019년 기업경영분석결과(해설 및 통계편).

행정안전부. (202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p. 1면.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none. 2021.10.25. 인출.

협동조합 포털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COOP/manage/establishGuild_normal.do에서 2021.10.25. 인출.

홍연민·강철희·이문석. (2021).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생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례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 pp.305-339.

고용보험법, 법률 제17859호 (2021).

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18175호 (202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28호 (20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법인세법, 법률 제18590호 (202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104호 (20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8577호 (20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7374호 (2020).

사립학교법, 법률 제18372호 (202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8618호 (202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2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우편법, 법률 제18476호 (2021).

의료법, 법률 제17787호 (20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2021).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7799호 (20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2020).
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202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56호 (2021).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2020).
협동조합기본법, 법률 제17818호 (2021).

BBB Wise Givaing Alliance. BBB Standards for Charity Accountability. https://www.give.org/charity-landing-page/bbb-standards-for-charity-accountability#. 2021.10.25.

Bollen, K. A.,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s. Newbury Park, Sage.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Abgabenordnun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o_1977. 2022.1.10.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Körperschaftsteuer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kstg_1977/BJNR025990976.html. 2022.1.10.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Einkommensteuer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BJNR010050934.html. 2022.1.10.

Council on Foundations. Nonprofit Law in Germany. https://www.cof.org/country-notes/nonprofit-law-germany#_ftn2. 2021.10.25.

DZI. https://www.dzi.de/. 2021.10.25.

GOV.UK. Charities and Tax.https://www.gov.uk/charities-and-tax/get-recognition 2021.10.25.

Guidestar. https://www.guidestar.org. 2021.10.25.

Hu, L. T.,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IRS. Exempt Organization Type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exempt-organization-types. 2021.10.25.

Japan NPO Center. https://www.jnpoc.ne.jp/?page_id=10146. 2021. 10. 25.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ford Press.

非営利組織評価センター. 概要. https://jcne.or.jp/about/jcne/에서 2021. 10.25.

[부록 1] 조사표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기업의 창업이나 운영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현재 정부사업을 위탁운영하고 계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온 기존 청년 창업지원 정책들의 개선점을 파악하여 '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마련'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2조(성실 응답의무)와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조사기관): _____(Tel:)
담당자(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성운 연구원(Tel:)

※ 본 조사는 기업 · 시설의 최고경영자 · 경영관련 임원 · 정부사업 담당자만이 응답 가능합니다.

SQ1.기업 명			
SQ2. 기업 유형	① 벤처기업 ② 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④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SQ3. 응답자 성명		SQ4. 응답자지위	① 최고 경영자 ② 경영관련 임원 ③ 정부사업 담당자
SQ5. 지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강원 ⑤ 대구 ⑥ 경북 ⑦ 부산 ⑧ 울산 ⑨ 경남 ⑩ 광주 ⑪ 전북 ⑫ 전남 ⑬ 제주 ⑭ 대전 ⑮ 충북 ⑯ 충남 ⑰ 세종		
SQ9.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 응답자분들에게 응답 답례품으로 소정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송부할 예정이오니 꼭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 기업의 사업 현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입니다.

A1 우선 귀 기업 · 법인이 설립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현재 최고경영자의 연령과 나이,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A1.1 설립시기	A1.2 최고경영자 연령	A1.3 최고경영자 성별	A1.4 최고경영자 학력
_____년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① 남 ② 여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졸 이상

A2 귀 기업 · 시설은 정부로부터 어떤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법인 여부와 성격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A2.1 기업인증 형태	A2.2 법인 여부	A2.3 법인 성격	A2.4 영리법인 성격(→ A3.1)
① 벤처기업 ② 사회적 기업 ③ 사회적 협동조합 ④ 사회복지법인	① 법인(→ A2.3) ② 비법인(→ A2.4)	① 영리법인(→ A2.4) ② 비영리법인(→ A3.1)	① 주식회사 ② 개인사업자 ③ 유한회사 등 기타

A3 현재 귀 기업·시설은 주로 어떤 사업 업종에 주력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설립 당시에 비해 매출액은 어느 정도 상승했나요? 그리고 설립 당시와 현재 매출액 향상을 위해 어떤 시장에 주력하고 계시나요?

A3.1 주요 사업 업종	A3.2 매출액	A3.3 매출 주력 시장
① 제조업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④ 정보통신업 ⑤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임대서비스업 ⑥ 교육 서비스업 ⑦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⑧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⑨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⑩ 건설업 ⑪ 기타( )	A3.2.1 설립 년도 매출액 _____억 원 A3.2.2 2020년도 매출액 _____억 원	A3.3.1 설립 년도 주력시장 ① 민간 소비자 시장 ② 민간 기업 시장 ③ 정부 위탁 시장 ④ 해외 시장 ⑤ 기타( ) A3.3.2 2020년도 주력시장 ① 민간 소비자 시장 ② 민간 기업 시장 ③ 정부 위탁 시장 ④ 해외 시장 ⑤ 기타( )

A4 그렇다면 설립 당시와 지금의 종사자 수는 각각 몇 명으로 변화되었나요? 그리고 설립 당시와 지금의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은 각각 몇 % 정도 변화가 있었나요?

A4.1 종사자 수	A4.2 종사자 직위
A4.1.1 설립년도 당시 종사자 총 _____명 A4.1.2 2020년 말 종사사 총 _____명	A4.1.1 설립년도 당시 종사자 정규직 비율_____% A4.1.2 2020년 말 종사사 정규직 비율_____%

A5 귀 기업·시설은 설립 당시와 지금의 자본금은 각각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리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A5.1 자본금	A5.2 설립당시 주 자본금 마련 방법(1개만 응답)
A5.1.1 설립년도 당시 자본금 _____ 억 원 (5천만 원 일 경우 0.5억 원으로 기입해 주세요) A5.1.2 2020년 말 기준 자본금 _____ 억 원 (2억5천만 원 일 경우 2.5억 원으로 기입해 주세요)	① 설립자 개인 자금 투자 ② 투자가 모집 투자 ③ 개인 금융 대출 ④ 정부 금융 지원 ⑤ 모기업 지원 투자 ⑥ 기타( )

다음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창업기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우선, 창업기업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업기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란 기업 설립 시 필요한 법적 설립과정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 그리고 회계 등 경영관련 지식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창업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전국 각 거점 대학 및 지자체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A6.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업 · 시설의 창업과정과 운영상에 정부의 창업기업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여도, 그리고 향후 정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6 창업기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A6.1 정부의 창업교육지원 정책은 창업과정에 꼭 필요하다					
A6.2 창업교육지원 정책은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6.3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A6.4~A6.5 혹시 귀 기업 · 시설에서는 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A6.4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A6.5 교육프로그램 지원 주체
① 참여 경험이 있다.(→ A6.5) ② 참여 경험이 없다 (→ A7)	① 중앙부처 산하기관 ② 대학 창업보육센터 ③ 지자체 창업복육센터

[창업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는, 창업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업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란 기업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 또는 창업자금 및 운용자금의 저리 융자 등을 시중은행이나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A7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업 · 시설의 창업과정과 운영상에 정부의 창업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여도, 그리고 향후 정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7 창업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A7.1 정부의 창업금융 지원 정책은 창업과정에 꼭 필요하다					
A7.2 창업금융 지원 정책은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7.3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A7.4~A7.5 혹시 귀 기업·시설에서는 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A7.4 창업금융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A7.5 창업금융 프로그램 지원 주체
① 이용 경험이 있다.(→ A7.5) ② 이용 경험이 없다 (→ A8)	① 중앙부처 산하기관 창업 펀드 ② 시중 은행 융자 ③ 기타(　　)

[창업기업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세 번째는, 창업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이란 기업 설립 시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이나 장비/설비 등을 정부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책들입니다.

A8.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업·시설의 창업과정과 운영상에 정부의 창업기업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여도, 그리고 향후 정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8 창업기업 인프라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A8.1 정부의 창업인프라 지원 정책은 창업과정에 꼭 필요하다					
A8.2 창업인프라 지원 정책은 창업기업의 사업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8.3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A8.4~A8.5 혹시 귀 기업·시설에서는 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A8.4 창업인프라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A8.5 창업금융 프로그램 지원 주체
① 이용 경험이 있다.(→ A8.5) ② 이용 경험이 없다 (→ A9)	① 중앙부처 산하기관 창업보육센터 ② 대학 창업보육센터 ③ 기타(　　)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네 번째는,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이란 창업기업에 고용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들로써 청년 인턴쉽 인건비 보조 사업과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A9.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업·시설의 창업과정과 운영상에 정부의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여도, 그리고 향후 정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9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A9.1 정부의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정책은 창업과정에 꼭 필요하다					
A9.2 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 정책은 사업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9.3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A9.4~A9.5 혹시 귀 기업 · 시설에서는 기업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직원 인건비 지원 정책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A9.4 창업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A9.5 이용 중인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명
① 이용하고 있다.(→ A9.5) ② 이용하지 않고 있다 (→ A10)	

[세금 감면 지원 프로그램]

다섯 번째는, 기업이나 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금 감면 지원 프로그램'이란 창업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사업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기업운영으로 인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일정기간 또는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해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A10.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업 · 시설의 창업과정과 운영상에 정부의 '세금 감면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여도, 그리고 향후 정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10 세금감면정책에 대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약간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A10.1 정부의 세금감면 지원 정책은 창업과정에 꼭 필요하다					
A10.2 정부의 세금감면 지원 정책은 사업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10.3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감면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A10.4 혹시 귀 기업 · 시설에서는 기업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감면 정책으로 혜택을 보고 계시는 지요?

A10.4 창업기업 세금감면 지원 정책 혜택 여부
①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②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A11. 귀하께서는 지금 까지 정부가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창업교육 지원프로그램 등 5가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필요성 등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만약 정부가 예산 규모의 한계 때문에 창업기업 지원정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정책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시겠습니까. 1~5순위를 평가해 주세요

지원정책	교육지원	금융	인프라	직원 인건비	세금 면세
투자 우선순위(1~5위)	위	위	위	위	위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 구독안내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